

제 1 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서울중재부

제 1 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 서울중재부

2014서울조정1·2	(정정·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환경일보
조 정 대 상	『GS칼텍스, 토양오염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환경공사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대표가 ‘회장 아들’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해 모 회사 공사를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주)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2면)
2014서울조정3, 6, 30, 100	(각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JTBC ⁽³⁾ , 인터넷 일요신문 ⁽⁶⁾ , JTBC ⁽³⁰⁾ , e머니투데이 ⁽¹⁰⁰⁾
조 정 대 상	• JTBC : 아침뉴스 프로그램 『파혼 선언에 곳곳 낙서...‘CEO 귀족녀’ 황당 복수극』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8일자, 인터넷 JTBC 11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신문 : 『단독보도 - 파혼남 괴롭혀 피소 ‘화성인 귀족녀’ 이력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화성인” 귀족녀, 파혼자에 복수하다 형사처벌』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전 남자친구간 진행중인 소송사건에서 신청인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JTBC, JTBC) • 각 취하 (인터넷 일요신문, e머니투데이/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4	(정정청구) ○○회사법인 ○○○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녹차를 먹인 돼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취급하는 녹돈에 녹차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5	(정정청구) 주식회사 ○○○○○○ 외 1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논란 부른 신공법』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부산 해안도로의 붕괴사고 원인이 신청인 업체의 특허공법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8일자 iMBC 다시보기 뉴스면)
2014서울조정7~10	(각 정정·반론청구) 임○○ 외 1인 對 문화일보 ^(7·8) , 인터넷 문화일보 ^(9·10)
조 정 대 상	(1) 『‘법사위 책임론’ 급부상』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2월 2일자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일자 정치면) (2) 『‘유령법’까지 만든 ‘황당한 국회’』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2월 2일자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일자 정치면) (3) 『여야 합의한 법안 ‘슬쩍’ 수정...전대미문의 ‘입법 왜곡’』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2월 2일자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일자 정치면) (4) 『국회, ‘황당한 改惡’ 私學法 신속히 바로잡아야』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3년 12월 2일자 31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법제사법위원회가 ‘묻지마’식 입법절차를 거쳐 사립학교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학법 개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2월 14일자 8면, 인터넷 문화일보 2월 14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1, 37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YTN ⁽¹¹⁾ , YTN ⁽³⁷⁾
조 정 대 상	(1)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내가 쓰고 있는 ○○○톡도 스미싱에 뚫릴 수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2) 뉴스EYE 프로그램 『스미싱 “쓰나미”... ○톡 계정도 뚫렸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3) 뉴스Q 프로그램 『스미싱 진화 ... ○톡 계정도 뚫렸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4) 뉴스출발 프로그램 『스미싱 진화 ... ○톡 계정도 뚫렸다』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5) YTN24 프로그램 『친구 ○톡 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 눌렀다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12일자, 인터넷 YTN 11월 12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특정 메신저에서 스미싱 사기가 발생한 원인이 신청인 회사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YTN에 반론보도 게재 및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톡 스미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4년 1월 24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2·13 (정정·손배청구) 정○○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주차장 경사면 출입구 사고 과실 비율』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경사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이 신청인에게 더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주차장 경사면 출입구 사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8일자)
2014서울조정14 (정정청구) 경찰청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성매매, 권력비리, 토착비리 ‘7대 사회악’ 추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경찰이 금년도 핵심치안과제로 4대 사회악에 성매매 등 3개 범죄를 추가한 7대 사회악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16 (정정·손배청구) 사단법인 ○○○○○○○○○○ 對 e그린경제	
조 정 대 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돈 받고 한국대표선발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준비생 모집설명회에서 유료 교육시 대표선발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포털에도 관련 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한국○○○○협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9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7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1) 『반성 없는 ○○○』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7일자 건강면) (2) 『결국...○○○, 비만·당뇨 원인 초코○○ GH인증 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7일자 건강면) (3) 『식약처, ○○○ 초코○○ 허위과대광고 검토』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7일자 건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인기 제품의 보건제품 품질인증(GH인증)을 스스로 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초코○○ GH인증 취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7일자 건강면)
2014서울조정18	(정정청구) 서○○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정부 ‘2016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시설기준이 까다로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뉴스7 프로그램 『정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준비 본격화』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2일자)
2014서울조정19	(정정청구) 김○○ 對 장애인의 주홍글씨
조 정 대 상	『농아여성 가슴만지고 “늙은 여자라 괜찮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성 농아인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농아인 성추행 사건, “사실과 다르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20~22	(각 추후청구) ○○○○ 주식회사 對 투데이코리아 ⁽²⁰⁾ , 뉴스1코리아 ⁽²¹⁾ , 메디컬투데이 ⁽²²⁾
조 정 대 상	• 투데이코리아 : 『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가공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부산식약청, 유통기한 허위표시한 고등어가공품 적발회수』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0일자 전국면) • 메디컬투데이 : 『유통기한 경과한 간고등어, 알고도 재포장 판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1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허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 가공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투데이코리아, 뉴스1코리아/사유 : 기사삭제) • 취하 (메디컬투데이/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메디컬투데이 : 『○○○○, 유통기한 지난 고등어 식품판매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0일자 사건사고면)
2014서울조정23 · 24	(정정·손배청구) 정○○ 對 세이프투데이
조 정 대 상	(1) 『무고와 명예 훼손 ‘위기관리경영’』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뉴스면) (2) 『명예훼손 남발 ‘위기관리경영’』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일자 뉴스면) (3) 『강병화 회장 ‘위기관리경영’에 KO 승』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협회 차기회장에 입후보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25, 26	(각 손배청구) 최○○ 對 연합뉴스TV ⁽²⁵⁾ , 인터넷 연합뉴스TV ⁽²⁶⁾
조 정 대 상	뉴스워치 프로그램 『황영조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서울시 관리 허술』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TV 2014년 1월 13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1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서울시의 잠실주경기장 임대사업 관리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서울시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직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없이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7~29, 93, 105, 113~115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27~29) , 각 손해청구 ^(93,105) , 손해 · 반론 · 손해청구 ^(113~115)) 이○○ 對 프레스바이플
조 정 대 상	(1) 『체불된 임금은 꼭 갚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메인면) (2)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0일자 시사면) (3) 『떡국 안 먹으면 나이도 안 먹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일자 시사면) (4) 『‘을지로위원회’는 모르고 ‘프레스바이플’은 아는 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시사면) (5) 『근로자와 경영자가 손잡고 노동부에 간 날』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시사면) (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당하고...』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편집위원간의 통화내역을 동의없이 공개하고 대화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 피신청인 신문의 기자로 재직했던 신청인을 지칭하며 사적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신청인 관련 언론조정신청 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임금 체불 등 법적 분쟁을 동의없이 보도하고, 신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4. 신청인이 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을 보도하며 개인적인 전화통화 및 전자우편 내용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7~29)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 조정성립 ^(93,105,113~115)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2014서울조정27~29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도 삭제 - 피신청인이 2014서울조정27~29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할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소송 취하 - 피신청인이 기사를 삭제할 경우 신청인이 위키트리에 게재한 피신청인 관련 기사를 수정하고, 트위터 게시물 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93,105,113~115)

2014서울조정31·32	(정정·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상조, 계열사 ‘○○’이 극장식 영업으로 또 망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2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고 상조가입을 권유하는 신청인 회사의 영업방식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상조 계열사 ‘○○’ 극장식 영업’ 보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9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33~36	(각 정정·손배청구) 지○○ 對 기독교신문 ^(33·34) , 인터넷 기독교신문 ^(35·36)
조 정 대 상	『○○○교회문제를 외부세력에 제공한 것은 현 담임목사 측』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일자 7면, 인터넷 기독교신문 11월 23일자 교계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언론사가 ○○○○○교회의 갈등을 부추긴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기독교신문 2014년 2월 24일자 7면, 인터넷 기독교신문 2월 24자 교계종합면)
2014서울조정38	(손배청구) 박○ 對 시사1
조 정 대 상	『강남의 ○○○ 치과의원 의료법 위반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명을 적시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39~42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머니투데이 ^(39·40) , e머니투데이 ^(41·42)
조 정 대 상	『코레일 평균연봉은 6500만원...KBS는』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4년 1월 11일자 종합뉴스면, e머니투데이 1월 11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KBS가 비공개로 국회감사를 받으며 결산보고서에는 인건비 항목이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4년 2월 14일자 2면, e머니투데이 2월 14일자 미디어뉴스면)

2014서울조정43~46	(각 정정청구) ○○유치원 對 MBC-TV ⁽⁴³⁾ , iMBC ⁽⁴⁴⁾ , 네이버 ⁽⁴⁵⁾ , 다음 ⁽⁴⁶⁾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불만 있으면 나가세요” 갑 중의 갑, 유치원』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1월 4일자, iMBC·네이버·다음 1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유치원이 불만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MBC, iMBC, 네이버/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다음/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47~5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향신문 ^(47·48) , 인터넷 경향신문 ^(49·50) (각 정정청구) 네이버 ⁽⁵¹⁾ , 다음 ⁽⁵²⁾
조 정 대 상	『대부업체 가장 많은 서울 강남구 합동점검 비협조, 단속실적 저조, 명단 늦게 주고 대리조사 거절』 (경향신문 2014년 1월 17일자 경제면, 인터넷 경향신문·네이버·다음 1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2013년 서울시와의 대부관련 업체 합동점검시 업체명단을 늦게 전달하거나 중복 명단을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네이버/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다음/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강남구청 대부업체 단속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2월 12일자 20면, 인터넷 경향신문·네이버·다음 2월 12일자)
2014서울조정53~57, 63	(각 정정청구) 전○○ 對 한겨레 ⁽⁵³⁾ , TV조선 ⁽⁵⁴⁾ , 조선일보 ⁽⁵⁵⁾ , 조선닷컴 ⁽⁵⁶⁾ , 인터넷 한국일보 ⁽⁵⁷⁾ , 인터넷 한겨레 ⁽⁶³⁾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장남 미술품 중개인은 해외출국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4일자 3면, 인터넷 한겨레 7월 24일자 사회면) • TV조선 : 뉴스7 프로그램 『비자금 관리인 의혹, 전○○은 누구?』 제하의 보도 (2013년 7월 23일자) • 조선일보 : 『전씨 비자금 관리인 압수수색날 출국』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1면, 조선닷컴 7월 23일자 정치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전두환 아들 딸과 남다른 관계... 사라진 전○○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으로 압수된 미술품 매입을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TV조선, 조선일보, 조선닷컴/사유 : 추후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한국일보 : 『“전재국씨 비자금 관리 의혹 전○○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58	(손배청구) 노○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신생아실 드나드는 낯선 사람의 정체는?』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몰래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59~62	(각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MBN ^(59·60) , 인터넷 MBN ^(61·62)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수력 발전소 막아버린 3m보』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1월 8일자, 인터넷 MBN 1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력발전소 앞에 보를 설치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64~66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한겨레21 ⁽⁶⁴⁾ , 인터넷 한겨레21 ⁽⁶⁵⁾ , 인터넷 한겨레 ⁽⁶⁶⁾
조 정 대 상	• 한겨레21 : (1) 『“독재정부도 마다 않는 한국투자자들 변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1일자 28면~29면, 인터넷 한겨레21 1월 20일자 표지이야기면) (2) 『기업의 양탈에 총알이 발사되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1일자 20면~26면, 인터넷 한겨레21 1월 20일자 표지이야기면) • 인터넷 한겨레 : 『“이명박 전 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경제 자문’ 그만둬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0일자 국제면)
신청인 주장	해외에서 의류수출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인근 군부대 사령관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 지분을 나누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별도의 반론보도 외에 조정사건 대상 동영상(인터넷 한겨레21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6252.html 기사 중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르포 [21의 생각])의 말미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동영상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
이 행 결 과	한겨레21 : 『○○ 캄보디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4일자 64면, 인터넷 한겨레21 · 인터넷 한겨레 2월 24일자)
2014서울조정67·68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업코리아
조 정 대 상	『국회 보좌관 윤리,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기타면)
신청인 주장	모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했던 신청인이 보좌관과 사제관계이며, 부적절한 관계라고 보도했으나 사실무근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69	(정정청구) 신학용 외 1인 對 업코리아
조 정 대 상	『국회 보좌관 윤리,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기타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보좌관이 인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도 해당 국회의원보좌관에게 약점이 잡혀 보좌관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0	(정정청구) 친구범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19년간 19번 ‘철새지사’』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전 제주지사인 신청인이 당적을 8번 변경한 철새 정치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71~80, 83·8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서울신문 ^(71·72) , 인터넷 서울신문 ^(73·74) , 인터넷 한겨레 ^(75·76) , 인터넷 한국일보 ^(77·78) , 온라인중앙일보 ^(79·80) , 한국일보 ^(83·84)
조 정 대 상	• 서울신문 : (1) 『남극부터 아프리카까지...한국 리더가 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일자 27면, 인터넷 서울신문 1월 1일자 연예면) (2) 『올 3월 완공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총괄 김○○ ○○연구소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23면, 인터넷 서울신문 1월 22일자 기획면) • 인터넷 한겨레 : 『제4대 ○○연구소장에 김○○ 박사 선임』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글로벌 리더의 선택·라이프 오브 펡컨』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1일자 문화생활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31일자 문화생활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연구소장 김○○ 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인 최초로 남극 땅을 밟은 사람이 김예동 박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한국일보, 한국일보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한겨레/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서울신문 : 『한국인 최초 남극 방문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20면, 인터넷 서울신문 2월 21일자 문화면) • 한국일보 : 『한국인 최초 남극 방문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20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21일자 문화생활면) •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3일자 2면)
2014서울조정81, 82	(각 정정청구) 이명박 對 주간한국 ⁽⁸¹⁾ , 인터넷 주간한국 ⁽⁸²⁾
조 정 대 상	(1)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4년 1월 13일자 1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11일자 초기화면) (2)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4년 1월 13일자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1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후 보도)
이 행 결 과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4년 1월 13일자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11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85, 86	(각 정정청구) 신○○ 對 조선일보 ⁽⁸⁵⁾ , 조선닷컴 ⁽⁸⁶⁾
조 정 대 상	『한국 과학자 저명 논문 2편 조작 파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11월 8일자 사회면, 조선닷컴 11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007년 외국 저명 잡지에 발표한 논문이 조작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신○○ 교수 논문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4년 2월 15일자 A10면, 조선닷컴 2월 1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7~89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철도공단·철도대·업체 비리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25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한국○○○○공단이 발주한 CCTV 사업을 독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철도시설공단-업체 비리 유착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건설면)
2014서울조정90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NSP통신
조 정 대 상	『○○○○ 보톡스, 미서 ‘험난한 장정’ 예고... FDA승인 오래 걸릴 듯』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의학건강)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제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받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보톡스, 미국 판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2014서울조정91, 92	(각 정정청구) 서울시관악구의회 對 아시아경제 ⁽⁹¹⁾ , 아시아경제닷컴 ⁽⁹²⁾
조 정 대 상	『운전기사 데리고 외유나간 기초의원님들』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4년 1월 27일자 8면, 아시아경제닷컴 1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관악구 의회 의원들이 임기말 남은 예산 쓰기식 외유를 한 것처럼 보도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관악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18면)

2014서울조정94~9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최○○ 對 온라인 중앙일보 ^(94·95·96) , 중앙일보 ^(97·98·99)
조 정 대 상	『통진당 강령에 공산주의 말만 안 했지 다 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1월 28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011년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개정 강령에 공산주의 강령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아니다” 최○○, 법무부 주장 반박』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014년 2월 20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01	(손배청구) 홍○○ 對 EBS-TV
조 정 대 상	다큐프라임 프로그램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 5부 말문을 터라』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대학생 수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3백만원)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02	(손배청구) 정○○ 對 세이프투데이
조 정 대 상	『무고와 명예 훼손 ‘위기관리경영’』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협회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03·104	(정정·반론청구) 박○○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음대 유명교수 ‘학력위조’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학력을 위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정정보도 이외에는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 중 신청인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06, 107	(각 정정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對 건설경제 ⁽¹⁰⁶⁾ , CNEWS ⁽¹⁰⁷⁾
조 정 대 상	• 건설경제 : (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찰 재공고 결정』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4일자 1면) (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행정미숙』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6일자 5면, CNEWS 12월 26일자 오피니언면) (3) 『행정미숙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어불성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5면, CNEWS 1월 9일자 오피니언면) • CNEWS : 『5000억원대 제2여객터미널 외장 · 골조공사 재공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4일자 공사/계약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입찰이 재공고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공사입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건설경제 2014년 3월 7일자 2면, CNEWS 3월 7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08, 109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경향신문 ⁽¹⁰⁸⁾ , 인터넷 경향신문 ⁽¹⁰⁹⁾
조 정 대 상	『SBS프리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하자 다시 해고』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1월 20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프리랜서로 일했던 전 직원에게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10	(정정청구) 윤진숙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1) 『원유 유출 피해마을 ‘시프린스호 악몽’ 재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일자 속보면) (2) 『윤진숙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품격’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4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 장관인 신청인이 여수 앞바다에서 일어난 원유유출사고 피해마을 방문당시 기름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11, 112	(각 정정청구) ○○○○노조 ○○○○지역지부 對 한국경제 ⁽¹¹¹⁾ , 한경닷컴 ⁽¹¹²⁾
조 정 대 상	『학생들에게 쫓겨나는 민주노총의 중앙대 개입 투쟁』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4년 1월18일자 사설면, 한경닷컴 1월 18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와 무관한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에 가세했다가 대학생들에게 쫓겨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민주노총 중앙대 개입 투쟁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4년 3월 1일자 26면, 한경닷컴 2월 28일자 오피니언면)
2014서울조정116·117	(정정·손배청구) 조○○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현직 의사가 전라도 섬노예 관해 폐북에 올린 글 보니... 네티즌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사인 신청인이 페이스북에 섬노예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전라도 섬노예 논란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18~123	(각 정정·손배청구) 허○○외 1인 對 한국경제 ^(118·119) , 한경닷컴 ^(120·121) (각 정정청구) 네이버 ⁽¹²²⁾ , 다음 ⁽¹²³⁾
조 정 대 상	(1) 『기업 위의 ‘또 다른 甲’,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11월 9일자 1면, 한경닷컴·네이버·다음 11월 9일자 정치면) (2) 『법적 다툼 끝난 것도 “재협상하라” ... 을지로위원회의 ‘기업정치’』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3년 11월 9일자 7면, 한경닷컴·네이버·다음 11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매장철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대형마트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한국경제, 한경닷컴)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24~127	(정정청구) ○○훈련단 對 채널A ⁽¹²⁴⁾ , 인터넷 채널A ⁽¹²⁵⁾ , KBS-1TV ⁽¹²⁶⁾ , KBS미디어 ⁽¹²⁷⁾
조 정 대 상	• 채널 A : 캐도난마 프로그램 『초등생 화생방 훈련... 캠프 업체 강력 비판』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6일자, 인터넷 채널A 2월 6일자 홈페이지)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인터넷 광장] 초등학생에게 ‘화생방 훈련’...논란 가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KBS미디어 2월 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초등학생들에게 군대식 화생방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채널A, 인터넷 채널A/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강제이행금) • 취하 (KBS-1TV, KBS미디어/사유 : 피신청인 사과)
이 행 결 과	인터넷 채널A : 『초등생 화생방 훈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홈페이지 게시판)
2014서울조정128	(추후청구) 조○○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불법 도축한 돼지 유통시킨 육가공업체 대표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도축한 병든 돼지를 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법 도축 돼지 유통」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2014서울조정129 · 130	(정정 · 손해청구) ○○○○○○○○○○○ 주식회사 對 세이프코리아뉴스
조 정 대 상	『할로겐화합물 가압식시스템과 IG-○○○ 200bar 시스템이 폭발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포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청정소화설비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 외에 별도의 기고문 게재
이 행 결 과	『「IG-○○○ 200bar 시스템」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31 · 132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데일리팝
조 정 대 상	(1) 『약국판매 금지하는 ‘의사건기식’ 실태보니』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4일자 약사약국면) (2) 『“건기식 포장 ‘약국판매금지’ 문구 시정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2일자 약사약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여성건강제품의 병원납품가를 고가로 책정해 납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약국판매금지 건기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약사약국면)
2014서울조정133 · 134	(정정 · 반론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코레일관광개발 “KTX 승무원 근로조건 열악?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 산하 모 지부가 정규직 고용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과장하는 등 근로조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코레일관광개발 “KTX 승무원 근로조건 열악? 사실과 달라”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7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135~142	(각 정정청구) 정○○ 對 MBC-TV ⁽¹³⁵⁾ , iMBC ⁽¹³⁶⁾ , 네이버 ⁽¹³⁷⁾ , 다음 ⁽¹³⁸⁾ , 한국일보 ⁽¹³⁹⁾ , 인터넷 한국일보 ⁽¹⁴⁰⁾ , 네이버 ⁽¹⁴¹⁾ , 다음 ⁽¹⁴²⁾
조 정 대 상	• MBC-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엄마가 두려워요』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2일자) • MBC-TV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엄마가 두려워요』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3일자, iMBC · 네이버 · 다음 12월 23일자 뉴스면) • 한국일보 『“아이 안 돌려주면 기흉수술 동의서 못 써준다” 학대 엄마 친권 앞에선 보호기관도 정부도 무기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3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 네이버 · 다음 12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MBC-TV, iMBC,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중재합의)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43, 144	(각 정정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통일신문 ⁽¹⁴³⁾ , 인터넷 통일신문 ⁽¹⁴⁴⁾
조 정 대 상	『탈북 단체장들 북한이탈주민과 불편한 간담회』 제하의 기사 (통일신문 2014년 2월 17일자 6면, 인터넷 통일신문 2월 17일자 탈북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최한 탈북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재단 이사장이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고, 탈북 단체장들의 요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간담회’ 기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통일신문 2014년 3월 10일자 6면, 인터넷 통일신문 3월 10일자 탈북민면)
2014서울조정145~148	(각 정정·반론청구) ○○○○○조합원자치회 對 서울교육방송 ^(145·146) , 주택뉴스 ^(147·148)
조 정 대 상	- 서울교육방송 : 『○○뉴타운 3구역의 범죄예방 대책까지 반대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취재수첩면) - 주택뉴스 : 『○○뉴타운 3구역 비대위들, 범죄예방까지 불법규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주택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구역에 책정된 ‘범죄예방’ 예비비 신설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 철거비용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의 조정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49·150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와이비씨연합방송
조 정 대 상	『용역비리에 강서署 ‘뒷집’, 감금폭행도 ‘외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6일자 핫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폭력배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모 건물을 강제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자 퇴거 후 퇴거에 불응한 세입자를 감금·폭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51~154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불교신문 ^(151·152) , 인터넷 불교신문 ^(153·154)
조 정 대 상	『‘땡중’ ‘빠순이’...불교 스님 매도 뉴시스 ‘하○○ 칼럼’ 도 넘다』 제하의 기사 (불교신문 2014년 1월 25일자 2면, 인터넷 불교신문 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칼럼니스트인 신청인이 도가 넘는 표현으로 불교를 비하하고,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 불교계와 스님을 매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반론보도외에 별도의 기고문 게재
이 행 결 과	『하○○ 칼럼 불교계 비하 의도 없어』 제하의 기사 (불교신문 2014년 3월 19일자 2면, 인터넷 불교신문 3월 1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55~159	(각 정정청구) 이○○ 對 경향신문 ⁽¹⁵⁵⁾ , 인터넷 경향신문 ⁽¹⁵⁶⁾ , 네이버 ⁽¹⁵⁷⁾ , 네이트 ⁽¹⁵⁸⁾ , 다음 ⁽¹⁵⁹⁾
조 정 대 상	『코치의 폭행 피해자인데 소치 출전자격 뺏다니요』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2월 3일자 12면, 인터넷 경향신문·네이버·네이트·다음 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동계스포츠 종목 국가대표 코치인 신청인이 전지훈련 중 선수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네이트, 다음/사유 : 중재합의)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14년 2월 3일자 12면... ○○ 국가대표 이 모 코치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0·161	(각 손배청구) 정○○ 對 EBS-TV ⁽¹⁶⁰⁾ , EBS뉴스 ⁽¹⁶¹⁾
조 정 대 상	다큐프라임 프로그램 『말문을 터라』 제하의 보도 (EBS-TV 2014년 1월 28일자, EBS뉴스 1월 28일자 지식e 다큐프라임면)
신청인 주장	대학생 관련 방송에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62~167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협회 對 노컷뉴스 ^(162·163) , 네이버 ^(164·165) , 다음 ^(166·167)
조 정 대 상	『인천 왕길동 쓰레기 산, 원상복구는커녕 불법 매립』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4년 2월 12일자 사회면, 네이버·다음 2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골재 폐기물 원상복구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작물 설치 후 추가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 서구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4년 3월 10일자 사회면, 네이버·다음 3월 1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8·169	(정정·손배청구) ○○○○○○연합회 외 1인 對 기독교뉴스
조 정 대 상	『○○○교회 원로목사, 절차 없이 교회 돈 평평』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5일자 헤드라인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설립자인 ○○○씨가 ○○○○연합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자 ○○○○○○연합회를 세운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연합회”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70, 171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YTN ⁽¹⁷⁰⁾ , 인터넷 YTN ⁽¹⁷¹⁾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현장 24 프로그램 『두 주머니 챙기는 ‘개조 화물차’』 제하의 보도 (YTN 2013년 10월 28일자, 인터넷 YTN 10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일반 화물차가 골재를 싣는 것은 불법이며, 화물차가 구조변경을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 YTN : 뉴스출발 현장 24 프로그램 『청소용 화물차, 오락가락 처분 왜?』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21일자) • 인터넷 YTN : 『‘청소용 화물차’...경찰은 단속 검찰은 무혐의,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2·173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석유공사 발주도 유령회사 낙찰』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령회사를 동원해 ○○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을 낙찰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74·175	(정정·손배청구) 최○○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현대판 사도세자 뒤주? 스티디룸 가구 인권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6일자 A1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작·판매하는 학생용 제품이 학부모가 자녀들의 공부를 강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76, 177	(각 반론청구) 임○○ 외 2인 對 경향신문 ⁽¹⁷⁶⁾ , 인터넷 경향신문 ⁽¹⁷⁷⁾
조 정 대 상	『의협 임원 “협상단, ‘수가인상’ 위해 의료 영리화 정부입장 수용”“폭로”』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2월 21일자 16면, 인터넷 경향신문 2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의료수가 인상을 위해 의료민영화 등 정부측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후 보도)
이 행 결 과	『의협협상단 정부협상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3월 28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2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8	(반론청구) 재단법인 한국○○○○○○○○○ 對 라포르시안
조 정 대 상	『[The 만나다] 유전질환 분야 경제성 낮다? 전세계 4천여명 대상 LSD 치료제 조단위 매출』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0일자 인터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대한○○○○학회 인증 검사원의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The 만나다 : 이○○ 교수 인터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5일자 인터뷰면)

2014서울조정179~181		(각 추후청구) 한○○ 對 연합뉴스 ⁽¹⁷⁹⁾ , 네이버 ⁽¹⁸⁰⁾ , 다음 ⁽¹⁸¹⁾
조 정 대 상	『공공연구노조, 전 한국○○○○연구원장 형사 고발』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직장의 거액 자금손실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한국○○○○연구원장 자금관리 소홀 ‘무혐의’』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4년 3월 7일자 속보면, 네이버·다음 3월 7일자 속보면)	
2014서울조정182, 183		(각 손해청구) 이○○ 對 MBC-TV ⁽¹⁸²⁾ , iMBC ⁽¹⁸³⁾
조 정 대 상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형외과 ‘부작용 설명’ 불충분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6일자, iMBC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취재의도와 다르게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84~187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C-TV ^(184·185) , iMBC ^(186·187)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新신가족기획』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2월 10일자, iMBC 2월 10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가족간의 갈등문제를 다루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손해배상외에 신청인이 전문 상담가를 통해 5회의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이 행 결 과	『2월 10일자 〈新가족기획〉 외도 남편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iMBC 2014년 3월 26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88, 189	(각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동두천신문 ⁽¹⁸⁸⁾ , 양주·동두천 닷컴 ⁽¹⁸⁹⁾
조 정 대 상	• 동두천신문 : 『송내○○ 1단지 관리부실 실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2면) • 양주·동두천 닷컴 : 『송내○○ 1단지 관리부실 실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신청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송내○○ 1단지 관리부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두천신문 2014년 4월 18일자 2면, 양주·동두천 닷컴 4월 1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90, 191	(각 정정청구) 서○○ 對 미디어스 ⁽¹⁹⁰⁾ , 유니온프레스업뉴스 ⁽¹⁹¹⁾
조 정 대 상	• 미디어스 : 『“예술가에게 빵과 장미가 함께 필요하다”, ‘미술제’라는 이상한 나라의 예술공장』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5일자 오피니언면) • 유니온프레스업뉴스 : 『공장미술제 작가 지원금 ‘0원’ 논란 “전시 참여에 의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0일자 문화예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청년작가를 착취·동원하는 등 미술계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92, 196	(각 반론청구) 이○○ 對 MBC-TV ⁽¹⁹²⁾ , iMBC ⁽¹⁹⁶⁾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고액 굿’ 피는 인간문화재 제자』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2월 19일자, iMBC 2월 1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무속인인 신청인이 굿을 해주고 지나치게 고액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93	(손배청구) 강○○ 對 인터넷 메트로
조 정 대 상	『[쇼핑]W물, “세뱃돈 신권으로 교환하세요”』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1월 25일자 라이프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내게시용으로 촬영했던 행사사진을 신청인의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94, 195	(각 정정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對 중앙일보 ⁽¹⁹⁴⁾ , 온라인 중앙일보 ⁽¹⁹⁵⁾
조 정 대 상	(1) 『부동산 계약서 595만건 뚫렸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2월 17일자 1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7일자 사회면) (2) 『주민증-인감만 위조하면 주인 몰래 집 팔 수 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2월 17일자 5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7일자 사회면) (3) 『“내 재산정보 뺐나” 불안감 확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2월 18일자 8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8일자 사회면) (4) 『협회 이익에 눈멀어 고객 피해 입힌 중개사협회』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2월 18일자 29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8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해킹당해 부동산계약서를 비롯한 595만건의 부동산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보도문] 중개사협 홈페이지 해킹됐지만 부동산계약서 유출은 없어』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3월 22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2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97~200	(각 정정 · 손해청구) 한○○ 對 SBS-TV ^(197 · 198) , SBS콘텐츠허브 ^(199 · 200)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두 얼굴의 사나이 ‘가락시장의 거지목사’』 제하의 보도 (SBS-TV 2013년 9월 14일자, SBS콘텐츠허브 9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목사 사칭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201	(손배청구) 임○○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사태 점입가경...노조탄압에 여직원 유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기업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노조원인 신청인이 유산했다고 보도해 신청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02~205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항공공사 對 민주신문 ^(202·203) , 인터넷 민주신문 ^(204·205)
조 정 대 상	『씩을대로 썩은 한국항공공사 - 5년동안 임직원들 뇌물 비위행위 전혀 몰랐을까?』 제하의 기사 (민주신문 2014년 2월 9일자 14면, 인터넷 민주신문 2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일부 직원의 개인 비위행위를 보도하면서 공사 내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씩을 대로 썩은 한국항공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14면)
2014서울조정206·207	(정정·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1) 『(단독) ‘○○○’, 세무조사로 20억 추징』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일자 산업면) (2) 『국세청, ○○○ 세무조사..20억 추징금 부과 통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208~211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EBS-TV ^(208·209) , EBS뉴스 ^(210·211)
조 정 대 상	하나뿐인 지구 프로그램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제하의 보도 (EBS-TV 2014년 2월 14일자, EBS뉴스 2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반려견을 키우는 목적 등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212~215	(각 정정·손배청구) 백○○ 對 채널A ^(212·213) , 인터넷 채널A ^(214·215)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족발의 위상상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1월 31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31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위생적으로 족발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216~219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월요신문 ^(216·217) , 인터넷 월요신문 ^(218·219)
조 정 대 상	『“엄살이 심한것 같다”』 제하의 기사 (월요신문 2014년 3월 10일자 사회면, 인터넷 월요신문 3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20~235	(각 정정·손배청구) 권○○ 對 인터넷 YTN ^(220·221) , 조선닷컴 ^(222·223) , 인터뷰 365 ^(224·225) , 아주뉴스 ^(226·227) , 이데일리 ^(228·229) , 쿠키뉴스 ^(230·231) , 세계닷컴 ^(232·233) , YTN ^(234·235)
조 정 대 상	- 인터넷 YTN : 『[단독]강남 한복판서 女상대 ‘묻지마 폭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강남 한복판 ‘묻지마 폭행’...30대 여성 고소장 제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뷰 365 :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강남서 ‘묻지마 폭행’이?...30대女 고소장 제출 “성추행도 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이데일리 : 『강남 한복판서 ‘묻지마 폭행’, 30女 뇌진탕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사회면) 외 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유없이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YTN, YTN) - 각 취하 (조선닷컴, 인터뷰365, 아주뉴스, 이데일리, 쿠키뉴스, 세계닷컴/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36~239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TV조선 ^(236·237) , 인터넷 TV조선 ^(238·239)
조 정 대 상	뉴스쇼 판 프로그램 『김여인, 에이미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 고발』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4년 3월 17일자, 인터넷 TV조선 3월 17일자 문화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전 직원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240~243	(각 정정·손배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사 對 헤럴드경제 ^(240·241) , 인터넷 헤럴드경제 ^(242·243)
조 정 대 상	『대구 ○○사 국제관광선원 국비 수십억 빼돌려』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4년 3월 11일자 11-A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찰이 경내에 ○○○○○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비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구 동화사 국비 횡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4년 3월 28일자 지역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3월 2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244·245	(정정·반론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국민대 평생교육원 신입입생 모집, “나도 이제 경영학 학사”…혜택 ‘눈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의 졸업생들이 모교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관련 부분 내용 수정
2014서울조정246	(정정청구) 동작구 對 인터넷 환경일보
조 정 대 상	(1) 『동작구,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사건사고면) (2)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동작구가 토양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은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을 건축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바꾸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동작구,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일자 사건사고면)

2014서울조정247, 248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연합회 對 MBC-TV ⁽²⁴⁷⁾ , iMBC ⁽²⁴⁸⁾
조 정 대 상	불만제로UP 프로그램 『어린이집』 이대로 괜찮나?』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3월 12일자, iMBC 3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이 지나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을 요구해 학부모에게 보육료 부담을 부당하게 지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불만제로UP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론보도문 게시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이대로 괜찮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불만제로UP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 2014년 4월 8일자)
2014서울조정249~252	(각 정정·손배청구) 황○○ 對 MBC-TV ^(249·250) , iMBC ^(251·252)
조 정 대 상	(1)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황○○의 위대한 유산』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3월 3일자, iMBC 3월 3일자) (2)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황○○의 위대한 유산Ⅱ. 세 명의 상속자』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3월 10일자, iMBC 3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작고한 유명 영화배우의 양녀인 신청인이 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재산을 탐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253~256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KBS-1TV ^(253·254) , KBS미디어 ^(255·256)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컴퓨터 수리사기』 제하의 보도 (KBS-1TV 2014년 3월 7일자, KBS미디어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컴퓨터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수리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보도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다시보기 화면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이 행 결 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방송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KBS-1TV 2014년 5월 2일자, KBS미디어 5월 2일자)

2014서울조정257·258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사이오랩
조 정 대 상	『세계 1위 소셜커머스 그루폰, ○○ 약재 넘을 수 있을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실적부진과 고객정보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신청인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수정
2014서울조정259	(정정청구) 이○○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종합] ‘십알단 시즌 2 시작되나?’… 박원순 작심 대응 배경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시장에게 아들 병역 관련 우편물을 보낸 신청인이 일간베스트같은 우익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십알단 시즌 2 시작되나?’…박원순 작심 대응 배경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7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260~265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미디어 ^(260·261) , 세계닷컴 ^(262·263) , 뉴스1코리아 ^(264·265)
조 정 대 상	• KBS미디어 : 『“보직 불만” 술 취해 난동 부린 스님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네가 내 보직을 바꿔?”… 총무승려 폭행한 스님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왜 보직을 바꿔?” 사찰서 술 취해 난동 부린 승려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사 총무승려인 신청인이 같은 사찰 승려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66 · 267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 對 Kjtimes.com
조 정 대 상	『○○○○ 중국산 저가 블랙박스 소비자 불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KJ특종퍼레이드면)
신청인 주장	블랙박스를 수입 판매하는 신청인 회사의 A/S에 문제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68, 269	(각 손해청구) 표○○ 對 KBS-2TV ⁽²⁶⁸⁾ , KBS미디어 ⁽²⁶⁹⁾
조 정 대 상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연예가 HOT 클릭』 제하의 보도 (KBS-2TV 2014년 3월 22일자, KBS미디어 3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관련 보도에서 병원 ○○○○○○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70~273	(각 정정 · 손해청구) 사단법인 한국○○○○○연합회 ○○○지회 외 3인 對 서대문신문 ^(270 · 271) , 인터넷 서대문신문 ^(272 · 273)
조 정 대 상	『장애인 올린 협회와 공무원, 경찰 봐주기 수사』 제하의 기사 (서대문신문 2014년 2월 28일자 8면, 인터넷 서대문신문 3월 4일자 기자수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자가 기증받은 차량을 몰래 되팔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274~279	(각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동두천경찰서 외 1인 對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274~276) , 인터넷 일간투데이 ^(277~279)
조 정 대 상	-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 『동두천경찰서, “보안 이유로 기자 출입제한 강화”』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인사논란 동두천경찰서, 언론 출입 통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서장의 독단적인 지시로 소속 경관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렸으며, 보안을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5백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익신청/사유 : 공익적인 보도이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280, 281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머니투데이 ⁽²⁸⁰⁾ , e머니투데이 ⁽²⁸¹⁾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 『폭행·노조탄압 논란 ○○ 마트서 쫓겨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1일자 산업면) - e머니투데이 : 『“끝없는 오너 주문” ○○, 대형마트서 퇴출될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1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영활동으로 인해 대형마트로부터 퇴출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머니투데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e머니투데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머니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2일자 2면) - e머니투데이 : 『“○○, ○○○○ 거래중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산업면)
2014서울조정282~306	(각 정정청구) 조○○ 對 연합뉴스 ⁽²⁸²⁾ , 네이버 ⁽²⁸³⁾ , 다음 ⁽²⁸⁴⁾ , 네이트 ⁽²⁸⁵⁾ , 인터넷 경향신문 ⁽²⁸⁶⁾ , 네이버 ⁽²⁸⁷⁾ , 다음 ⁽²⁸⁸⁾ , 네이트 ⁽²⁸⁹⁾ , 위키트리 ⁽²⁹⁰⁾ , 서울경제 ⁽²⁹¹⁾ , 인터넷 서울경제 ⁽²⁹²⁾ , 네이버 ⁽²⁹³⁾ , 다음 ⁽²⁹⁴⁾ , 네이트 ⁽²⁹⁵⁾ , 쿠팡뉴스 ⁽²⁹⁶⁾ , 네이버 ⁽²⁹⁷⁾ , 다음 ⁽²⁹⁸⁾ , 네이트 ⁽²⁹⁹⁾ , 인터넷 메트로 ⁽³⁰⁰⁾ , 인터넷 민주신문 ⁽³⁰¹⁾ , 인터넷 서울신문 ⁽³⁰²⁾ , 이타임즈 ⁽³⁰³⁾ , SBS콘텐츠허브 ⁽³⁰⁴⁾ , MK뉴스 ⁽³⁰⁵⁾ , 인터넷 한국일보 ⁽³⁰⁶⁾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속보면, 네이버·다음·네이트 3월 23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회면, 네이버·다음·네이트 3월 23일자) - 위키트리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건사고면) - 서울경제 : 『“김○○ 주치의” 의료과실 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30면, 인터넷 서울경제·네이버·다음·네이트 3월 23일자 사회면) - 쿠팡뉴스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허리디스크 주사 잘못”』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속보면, 네이버·다음·네이트 3월 23일자) 외 7건
신청인 주장	유명 선수의 주치의인 신청인이 의료기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연합뉴스, 네이버^(283, 293), 다음^(284, 294), 네이트^(285, 295), 위키트리,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경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인터넷 메트로, SBS콘텐츠 허브 /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인터넷 경향신문 /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네이버⁽²⁸⁷⁾, 다음⁽²⁸⁸⁾, 네이트⁽²⁸⁹⁾ /사유 : 중재합의) - 각 취하 (쿠팡뉴스, 네이버⁽²⁹⁷⁾, 다음⁽²⁹⁸⁾, 네이트⁽²⁹⁹⁾, 인터넷 민주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이타임즈, MK뉴스,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3일자 속보면, 네이버·다음·네이트 4월 3일자) • 위키트리 : 『‘김○○ 선수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2일자 사건사고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디스크수술 유명병원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2일자 사회면, 네이버·다음·네이트 4월 2일자) • 인터넷 메트로 :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3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김○○ 선수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제하 수정 (2014년 4월 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307·308, 310~328, 549~572, 583~585, 613, 644·645, 648·649, 754~759, 765~768	(각 정정·손배청구) 윤○○ 對 KBS미디어^(307·308), 동아닷컴^(310·311), 인터넷 채널A^(312·313), 연합뉴스^(314·315), 조선닷컴^(318·319, 754·755), TBS-R^(551·552), 뉴시스^(553·554), 뉴데일리^(561·562), 뉴시스강원^(644·645), 인터넷 TBS^(648·649), 조선닷컴^(754·755), NK조선^(767·768), (각 손배청구) 뉴스토마토⁽³¹⁶⁾, 세계닷컴⁽³¹⁷⁾, 뉴스1코리아⁽³²⁰⁾, 노컷뉴스⁽³²¹⁾, e머니투데이⁽³²²⁾, 쿠키뉴스⁽³²³⁾, 아시아투데이 닷컴⁽³²⁴⁾, 이코노믹리뷰⁽³²⁵⁾, 데일리안⁽³²⁶⁾, 블루투데이⁽³²⁷⁾, 프론티어타임스⁽³²⁸⁾ (각 정정청구) TV조선⁽⁵⁴⁹⁾, 인터넷 TV조선⁽⁵⁵⁰⁾, 조선일보⁽⁵⁵⁵⁾, 동아일보⁽⁵⁵⁶⁾, 위키트리⁽⁵⁵⁷⁾, 데일리엔케이⁽⁵⁵⁸⁾, YTN⁽⁵⁵⁹⁾, 인터넷 YTN⁽⁵⁶⁰⁾, 세계일보⁽⁵⁶³⁾, 데일리 노컷뉴스⁽⁵⁶⁴⁾, 머니투데이⁽⁵⁶⁵⁾, 인터넷 서울경제⁽⁵⁶⁶⁾, 한경닷컴⁽⁵⁶⁷⁾, 국민일보⁽⁵⁶⁸⁾, 아시아투데이⁽⁵⁶⁹⁾, 매일경제⁽⁵⁷⁰⁾, IPF국제방송⁽⁵⁷¹⁾, 뉴스천지⁽⁵⁷²⁾, 인터넷 경제풍월⁽⁵⁸³⁾, VOA Korea⁽⁵⁸⁴⁾, 코나스⁽⁵⁸⁵⁾, MK뉴스⁽⁶¹³⁾, 뉴포커스⁽⁷⁵⁶⁾, 인터넷 한국일보⁽⁷⁵⁷⁾, 뉴스1코리아⁽⁷⁵⁸⁾, 노컷뉴스⁽⁷⁵⁹⁾, SBS콘텐츠허브⁽⁷⁶⁵⁾, 인터넷 서울신문⁽⁷⁶⁶⁾
조 정 대 상	• KBS 미디어 : 『‘사립대 교수가 “탈북자 전원 사형시켜야”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흑세무민, 또 그런 세상이 온 건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30일자 오피니언면) • 인터넷 채널A : 『“탈북자 전원 사형” 주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아침뉴스면) • 연합뉴스 : 『‘대학교수 ‘탈북자 처형’ 발언…검고발할 것』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뉴스토마토 : 『‘조명철 의원, ‘탈북자 사형’ 발언 ○○대 교수 고소』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외 5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SNS 대화방에서 탈북자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동아닷컴⁽³¹⁰⁾/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조선닷컴^(318, 754 · 755), 아시아투데이 닷컴, SBS콘텐츠허브, 뉴포커스, 뉴스1코리아⁽⁷⁵⁸⁾/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조정성립 (데일리엔케이/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뉴데일리/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NK조선/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취하 (동아닷컴, 세계닷컴, 쿠키뉴스, 이코노믹리뷰, 데일리안, 블루투데이, 프리티어타임스, 조선일보, 위키트리, 인터넷 서울경제, 한경닷컴, 아시아투데이, IPF국제방송, 뉴스천지, 인터넷 경제풍월, VOA Korea, 코나스, 인터넷 서울신문 /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각 취하 (인터넷 채널A, 조선닷컴, YTN, 인터넷 YTN, MK뉴스, 노컷뉴스/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TBS-R, 동아일보, 세계일보, 데일리노컷뉴스, 머니 투데이, 국민일보, 매일경제,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자진취하) • 각 조정불성립성립 (KBS미디어,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뉴스1 코리아⁽³²⁰⁾, 노컷뉴스⁽³²¹⁾, e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시스강원, 인터넷 TBS)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피신청인 상대로 형사소송 진행)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윤○○ 교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 데일리NK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이슈면) • 뉴데일리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이슈면) • NK조선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5일자 이슈면) • 세계닷컴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사회면) • 이코노믹리뷰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TODAY 뉴스면) • 데일리안 : 『[정정보도]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사회면) 외 13건

2014서울조정309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조 정 대 상	(1) 『현장 뒤흔든 조선일보 오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교육뉴스면) (2) 『서울대 실적 오보 논란의 진실...19일 등록자, 최종합격자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5일자 교육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문기자인 신청인이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현장 뒤흔든 조선일보 오보 논란”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베리타스알파 2014년 5월 9일자 2면,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5월 9일자 교육면)
2014서울조정329 · 330	(추후 · 손배청구) 이○○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환각상태서 AIDS감염 숨기고 성관계 동성애자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0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동성애자 관련 부정적인 기사로 신청인의 명예가 침해되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331~334	(각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 ^(331·332) , 인터넷 채널A ^(333·334)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충격 가짜 마블링의 실체』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3월 7일자, 인터넷 채널A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가짜 마블링 소고기 제조과정 및 표시위반 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건물 외관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이 행 결 과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결과는 보도하지 않음
2014서울조정335, 336	(각 손배청구) 김○○ 對 MBC-TV ⁽³³⁵⁾ , iMBC ⁽³³⁶⁾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추악한 ‘해외 미성년 성매매’』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1월 12일자, iMBC 1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몰래 촬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다시보기 서비스 중 신청인 영상 모자이크 수정

2014서울조정337~342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은행노동조합 對 한국경제 ^(337~339) , 한경닷컴 ^(340~342)
조 정 대 상	『이주열 총재는 ‘한은 중립’ 제대로 이해했기를』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4년 3월 31일자 A43면, 한경닷컴 3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노조가 있는 중앙은행은 전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국은행 노조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4년 4월 11일자 35면, 한경닷컴 4월 11일자)
2014서울조정343	(정정청구) 중소기업청 對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규제는 놔둔채 입 틀어막는 중기청』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6일자 A02면)
신청인 주장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언론에 제보한 중소기업 찾기에 혈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중소기업청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15면)
2014서울조정344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fn아이포커스
조 정 대 상	『후쿠이 장인의 기술 녹아있는 정식제품』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입 판매하는 안경테 브랜드가 폐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KOREA의 TART OPTICAL 수입·판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0일자 15면)
2014서울조정345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대머리 농락, TS탈모샴푸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이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346, 347	(각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한국일보 ⁽³⁴⁶⁾ , 뉴스타파 ⁽³⁴⁷⁾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5. 16자 3면 「자살 시도 12시간 전 언론과 인터뷰 왜?...」의문의 행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5일자 3면) • 뉴스타파 : (1) 『국정원 ‘합신센터’는 간첩제조공장?』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초기화면) (2) 『한국의 판타나모, 합동신문센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1. 국가정보원이 소속 권 모 과장 자살시도 전 특정언론사와 인터뷰를 주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폭행, 협박, 욕설 등 가혹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뉴스타파/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7일자 9면) • 뉴스타파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2014서울조정348~357	(각 정정·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YTN ^(348·349) , 인터넷 YTN ^(350·351) , JTBC ^(352·353) , 인터넷 JTBC ^(354·355) , 뉴스1코리아 ^(356·357)
조 정 대 상	• YTN :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4년간 발암물질 수입해도 나몰라라』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7일자, 인터넷 YTN 2월 27일자) • JTBC : 21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중국에서조차 금지된 발암물질 든 닭꼬치 유통』 제하의 보도 (2013년 10월 13일자, 인터넷 JTBC 10월 13일자) • 뉴스1코리아 : 『“행정당국, 4년간 발암물질 함유 닭꼬치 수입 방치”』 제하의 기사 (2013년 10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발암물질이 든 식품을 수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YTN, 인터넷 YTN, 뉴스1코리아/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JTBC, 인터넷 JTBC/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YTN :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4년간 발암물질 닭꼬치 수입’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8일자, 인터넷 YTN 4월 17일자) • 인터넷 JTBC : 『중국에서조차 금지된 발암물질 든 닭꼬치 유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수정 (2014년 4월 15일자) • 뉴스1코리아 : 『4년간 발암물질 닭꼬치 수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358~361	(각 정정·손배청구) ○○○○○○공제조합 對 넥스트이코노미 ^(358·359) , 인터넷 넥스트이코노미 ^(360·361)
조 정 대 상	『자의적 판단으로 기업 피해배선 안돼』 제하의 기사 (넥스트이코노미 2014년 3월 25일자 24면, 인터넷 넥스트이코노미 3월 26일자 직접판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객관적 기준 없이 공제계약 체결이나 해지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 포기 불가)
2014서울조정362	(정정청구) 사단법인○○○○○○○○○협회 對 인터넷 아이러브PC방
조 정 대 상	『불법복제 노하드 피해 발생, 인문협 임원 대거 연루』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PC방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주요 임원진이 불법복제 노하드 시스템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법복제 노하드 피해 발생, 인문협 임원 대거 연루]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PC방뉴스면)
2014서울조정363, 364	(각 정정청구) 경찰청 對 세계일보 ⁽³⁶³⁾ , 세계닷컴 ⁽³⁶⁴⁾
조 정 대 상	『잊혀진 오원춘 사건... 잡음뿐인 112공청』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4월 1일자 사회면, 세계닷컴 4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의 무선망 공청시스템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잡음이 많으며, 내비 공청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음관리팀’ 발대식』 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2014년 4월 15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365~368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YTN ^(365·366) , 인터넷 YTN ^(367·368)
조 정 대 상	뉴스오늘 프로그램 『현장 24 : LED무료 교체 - 폭리에 과장까지』 제하의 보도 (YTN 2014년 1월 13일자, 인터넷 YTN 1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LED 교체를 미끼로 상인들로부터 돈을 착복했다는 등의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369 · 370	(정정 · 손해청구) 박○○ 對 e중앙뉴스
조 정 대 상	(1) 『밀양 봉이 손선달 땅절취 사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사회면) (2) 『밀양 비리공무원을 질타하는 황당한 현수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일자 사회면) (3) 『봉우리가 사라지고 울창한 소나무가 사라진 밀양 ○○면 ○○리 남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건강면) (4) 『봉이 손선달 땅절취사건 관련 비리공무원과 수상한 현수막진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나무숲을 난개발하고,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갈등관계에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371~375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71·372) (각 정정) 김○○ 對 네이버 ⁽³⁷³⁾ , 네이트 ⁽³⁷⁴⁾ , 다음 ⁽³⁷⁵⁾
조 정 대 상	『안녕하세요』 정동하 팬 아내, 정동화 등장에 ‘실신지경’ 제하의 기사 (인터넷 파이낸셜 뉴스 2014년 3월 18일자 TV · 방송면,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3월 18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모 오락프로그램에 가수팬으로 출연한 적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376~380, 680	(각 손해청구) 이○○ 對 한겨레 ⁽³⁷⁶⁾ , 인터넷 한겨레 ⁽³⁷⁷⁾ , 조선일보 ⁽³⁷⁸⁾ , 조선닷컴 ⁽³⁷⁹⁾ , 연합뉴스 ⁽³⁸⁰⁾ , 서울신문 ⁽⁶⁸⁰⁾
조 정 대 상	- 한겨레 : 『경주 리조트 붕괴 대학생 100여명 깔려…9명 사망』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2월 18일자 지역면) - 조선일보 : 『대학 신입생 행사장 붕괴, 8명 사망』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8일자 1면, 조선닷컴 2월 1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살려주세요』 제하의 사진 (2014년 2월 17일자 속보면) - 서울신문 : 『살려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모 리조트 붕괴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내용 : 손해배상 200만원, 사과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연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250만원, 서울신문/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200만원,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선일보, 조선닷컴/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동의후 금액지급) ※ 이행방법 : 조선일보, 조선닷컴 연대하여 손해배상 300만원 지급
이 행 결 과	한겨레 : 『경주 리조트 붕괴 사진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4월 24일자)

2014서울조정381 · 382, 426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 ^(381·382) (정정청구) 인터넷 채널A ⁽⁴²⁶⁾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충격 가짜 마블링의 실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3월 7일자, 인터넷 채널A 3월 7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비위생적인 기름을 주입한 불량 고기를 음식점에 납품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이 행 결 과	※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하지 않음
2014서울조정383~386	(각 정정·손배청구) 박○○ 외 1인 對 MBC-TV ^(383·384) , iMBC ^(385·386)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네 번 결혼하는 여자』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3월 19일자, iMBC 3월 19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유부녀의 결혼사기와 관련한 보도에서 웨딩홀 직원인 신청인들의 인터뷰를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387~416	(각 정정·손배청구) 석○○ 對 연합뉴스 ^(387·388) , 네이버 ^(389·390) , 네이트 ^(391·392) , 다음 ^(393·394) , 줌 ^(395·396) , 세계닷컴 ^(397·398) , 네이버 ^(399·400) , 네이트 ^(401·402) , 다음 ^(403·404) , 줌 ^(405·406) , MK뉴스 ^(407·408) , 네이버 ^(409·410) , 네이트 ^(411·412) , 다음 ^(413·414) , 줌 ^(415·416)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제주감사위, ○○○○○○ 여직원 술시중 조사중』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속보면, 네이버·네이트·다음·줌 11월 21일자) • 세계닷컴 : 『제주○○○○○ 직원 20여명 줄퇴사 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2일자 사회면, 네이버·네이트·다음·줌 11월 22일자) • MK뉴스 : 『제주감사위, ○○○○○○ 여직원 술시중 조사중』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사회면, 네이버·네이트·다음·줌 11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시키고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케 했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 술시중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속보면, 네이버·네이트·다음·줌 4월 29일자) • 세계닷컴 : 『제주 ○○ 모센터장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전국면, 네이버·네이트·다음·줌 4월 21일자) • MK뉴스 : 『[정정보도] 제주 ○○ 모센터장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사회면, 네이버·네이트·다음·줌 4월 21일자)

2014서울조정417	(손배청구) 박○○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통계청 장애인 출입을 막아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모 기관의 장애인 주차 실태와 관련해 직원인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418	(정정청구) 정○○ 對 CNBNEWS
조 정 대 상	『[단독]○○투자증권 사모펀드 CEO, 금융범죄 전력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모 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대표인 신청인에게 금융범죄 전력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검찰, ○○투자증권 PE 대표 무혐의 결정』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1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419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라이프, ○○○ 웨딩홀 정전 결혼식 망쳐 “날벼락”』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상조/장례 섹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실제 오너는 따로 있으며, 웨딩상품이 비싸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라이프, ○○○ 웨딩홀 정전 결혼식 망쳐 ‘날벼락’」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2014서울조정420~423	(각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 ^(420·421) , 인터넷 채널A ^(422·423)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방송 프로그램 『충격 가짜 마블링의 실체』 제하의 기사 (채널A 2014년 3월 7일자, 인터넷채널A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량 가공육을 사용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공익적인 보도이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424, 425	(각 정정청구) 진○○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황당한 연애 기술 학원...연애하는 법 가르쳐 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2월 17일자, iMBC 2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연애컨설팅회사에서 황당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홈페이지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다시보기 동영상 뉴스화면 중 신청인 관련 부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삭제
2014서울조정427, 428	(각 손해청구) 이○○ 對 MBC-TV ⁽⁴²⁷⁾ , iMBC ⁽⁴²⁸⁾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보험왕에서 사기왕까지』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4월 2일자, iMBC 4월 2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병원에 근무 중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429	(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이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부산 ○○○ 사학문제 부산교육청이 해결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8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사학비리문제와 관련해 신청인이 운영하는 고교의 실명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부산 A고 사학문제 부산교육청이 해결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전국면)
2014서울조정430~432	(손배청구) 전 ○○ 對 일간 시사뉴스투데이 ⁽⁴³⁰⁾ (정정·손배청구) 데일리 코스메틱뉴스 ^(431·432)
조 정 대 상	- 일간 시사뉴스투데이 : 『“여기도 세일, 저기도 세일, 멤버십데이, 빅 세일, 1+1 행사” 연쇄할인마 로드샵 화장품 할인의 진실을 파헤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5일자 경제면) - 데일리 코스메틱뉴스 : (1) 『다우니 아로마쥬얼, 방방곡곡에 ‘향기’ 무차별 살포』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하우스홀드면) (2) 『코스메틱 어플리케이션 시대...진동 파운데이션, 클렌저 등 다양』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트렌드툴스면) (3) 『애경 2080, 진지발리스군 박멸 치약 국내 첫 개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하우스홀드면) (4) 『SK II 블루밍 에센스... 뷰티 피플들의 뒷담화』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스킨케어면) 외 33건

신청인 주장	퇴사한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사를 작성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일간 시사뉴스투데이/내용 : 사과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데일리 코스메틱뉴스/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월간 시사뉴스투데이 : 『사과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호 46면)
2014서울조정433 (정정청구) 보건복지부 對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1) 『“병원 영리 자회사 법 고쳐야 가능” 복지부, 기재부와 엇박자 보고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1면) (2) 『복지부, ‘법개정 필요’ 기존 입장으로 ‘유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434 · 435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 對 전기신문	
조 정 대 상	『공공기관에 위조제품 납품 ‘여전’』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1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위조된 시험인증서를 제출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전기신문에도 반론보도 동시 게재
이 행 결 과	『○○○○○ 낙뢰보호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2면)
2014서울조정436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경제지 기자, 홍보실 직원 폭행 후 욕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0일자 미디어오늘)
신청인 주장	언론인의 출입처 홍보실 직원 폭행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신청인의 실명을 거론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 중 신청인 성명 익명 처리

2014서울조정437, 438	(각 정정청구) 성남시 對 월간조선 ⁽⁴³⁷⁾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⁴³⁸⁾
조 정 대 상	『경기 성남시 모라토리엄 공방의 진실』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4년 4월호 102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4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불필요하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기 성남시 모라토리엄 공방의 진실 관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4년 6월호 145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4월 29일자)
2014서울조정439, 440	(각 손해청구) 손○○ 對 MBC-TV ⁽⁴³⁹⁾ , iMBC ⁽⁴⁴⁰⁾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살배기 친아들 방치해 사망 이르게 한 ‘게임중독’ 20대 아빠』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4월 16일자, iMBC 4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게임중독 아버지의 영아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PC방 업주인 신청인의 초상과 업소를 동의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441~484	(각 정정·손배청구) 윤○○ 對 뉴시스 ^(441·442) , 네이버 ^(443·444) , 네이트 ^(445·446) , 다음 ^(447·448) , 뉴스1코리아 ^(449·450) , 네이버 ^(451·452) , 네이트 ^(453·454) , 조선닷컴 ^(455·456) , 네이버 ^(457·458) , 네이트 ^(459·460) , 다음 ^(461·462) , 조인스닷컴 ^(463·464) , 온라인중앙일보 ^(465·466) , 인터넷 문화일보 ^(467·468) , 세계닷컴 ^(469·470) , 인터넷 JTBC ^(471·472) , e머니투데이 ^(473·474) , 네이버 ^(475·476) , 네이트 ^(477·478) , 다음 ^(479·480)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81·482) , 민중의소리 ^(483·484)
조 정 대 상	• 뉴시스 : 『남자가 남자를 … “면접男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사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네이트·다음 1월 17일자) • 뉴스1코리아 : 『20대 면접남 ‘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사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네이트 1월 17일자) • 조선닷컴 : 『30대 게스트하우스 사장, 입대 앞두고 알바 면접 온 20대男 강제로 벗기더니…』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네이트·다음 1월 17일자) • 조인스닷컴 : 『남자가 남자를…면접男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사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뉴스면) • 온라인 중앙일보 : 『20대 면접남 ‘성추행’ 게스트하우스 사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건사고면) 외 18건
신청인 주장	숙박업을 하는 신청인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찾아온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뉴시스, 네이버^(443·444), 네이트^(445·446), 다음^(447·448), 뉴스1코리아, 네이버^(451·452), 네이트^(453·454),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e머니투데이, 네이버^(475·476), 네이트^(477·478), 다음^(479·480), 민중의소리/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네이버^(457·458), 네이트^(459·460), 다음^(461·462),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세계닷컴, 인터넷 JTBC,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뉴시스 : 『면접男 성추행한 숙박시설 男사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네이트·다음 5월 27일자) • 뉴스1코리아 : 『성추행 혐의 게스트하우스 업주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건사고면, 네이버·네이트 1월 17일자) • 조선닷컴 : 『성추행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업주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2일자 사건사고면) • 조인스닷컴 : 『면접남 성추행한 숙박시설 남사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뉴스면) • e머니투데이 : 『[단독]면접 온 20대 알바男 성추행 사장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건면) • 민중의소리 : 『게스트하우스 업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485~496	(각 추후청구) 박○○ 對 e머니투데이 ⁽⁴⁸⁵⁾ , M이코노미NEWS ⁽⁴⁸⁶⁾ , 경제투데이 ⁽⁴⁸⁷⁾ , 뉴스엔 ⁽⁴⁸⁸⁾ , 뉴스핌 ⁽⁴⁸⁹⁾ , 엑스포츠뉴스 ⁽⁴⁹⁰⁾ , 이타뉴스 ⁽⁴⁹¹⁾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⁴⁹²⁾ , 지디넷코리아 ⁽⁴⁹³⁾ , 컨슈머타임스 ⁽⁴⁹⁴⁾ , 쿠키뉴스 ⁽⁴⁹⁵⁾ , 티브이데일리 ⁽⁴⁹⁶⁾
조 정 대 상	• e머니투데이 : 『전 프로게이머 박○○, 아내 폭행 혐의로 조사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사건면) • M이코노미NEWS : 『전직 프로게이머 박○○ “아내 폭행하고 염산으로 위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커버스토리면) • 경제투데이 : 『전직 유명 프로게이머 박○○, 아내 폭행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기획면) • 뉴스엔 : 『前프로게이머 박○○ 아내폭행 및 염산테러 협박혐의 조사중 ‘혐의 강력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사회면) • 뉴스핌 : 『박○○ 검색어 1위, 알고보니…아내 폭행 혐의로 조사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스포츠/연예면) 외 7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e머니투데이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뉴스면) • M이코노미NEWS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초기화면) • 경제투데이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초기화면) • 뉴스엔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기획면) • 뉴스핌 : 『“전 프로게이머 박○○ 전 부인 김씨 상해 및 폭력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스포츠/연예면) 외 7건

2014서울조정497~500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497·498) , 뉴스한국 닷컴 ^(499·500)
조 정 대 상	• 뉴시스 : 『온라인 증오단체 피해자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27일자 사회면) • 뉴스한국 닷컴 : (1) 『○○○○○○ 김○○감독 아내 때려 조사받던 중 또 아내 때려 폭행 피소 중』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5일자 사회면) (2) 『폭행 혐의 피소 영화감독 김○○, “법원이 아내와 아들 정신감정 명령” ‘거짓’ 주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내의 종교를 증오해 아내를 폭행하고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뉴시스/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한국 닷컴/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진실보도이므로 수용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501·502	(정정·손배청구) 한국○○○대학 전국교수협의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저소득 취약층 무료 교육, 국립직업훈련원 돌아온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한국○○○대학의 대학 기능을 분리하고, 국립직업훈련원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503·504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일간뉴스경남 對 투데이코리아
조 정 대 상	『홍준표 - 박완수, 여론조사 두고 신경전 ‘후끈’』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505, 506	(각 손배청구) 정○○ 對 MBC-TV ⁽⁵⁰⁵⁾ , iMBC-TV ⁽⁵⁰⁶⁾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재산다툼에 문닫는 장애인학교...전국 유일 개인소유 ‘개입 못해’』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4월 14일자, iMBC 4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발달장애 학생을 학대한 것처럼 편집·보도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507, 508	(각 정정청구) 임○○ 외 1인○ 對 문화일보 ⁽⁵⁰⁷⁾ , 인터넷 문화일보 ⁽⁵⁰⁸⁾
조 정 대 상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4월 10일자 사회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백년전쟁’ 국보법혐의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5월 2일자 14면, 인터넷 문화일보 5월 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509	(정정청구) ○○○○대학교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학교 예산 없다며 연구실 없애… 교수15명 한방에 밀어 넣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예산부족으로 연구실을 없앴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510 · 511	(반론 · 손배청구) 이○○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 침몰] 실종자가족들 가슴 할퀴는 ‘루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0일자 IT. 과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직접 취재해 SNS에 올린 세월호 관련 내용이 과담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세월호 침몰] 실종자가족들 가슴 할퀴는 ‘루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IT.과학면)
2014서울조정512, 513	(각 정정청구) 대통령비서실 對 일요신문 ⁽⁵¹²⁾ , 인터넷 일요신문 ⁽⁵¹³⁾
조 정 대 상	『[단독추적] 여권 실세가 벌인 ‘뒷조사’ 작업』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4년 4월 6일자 2면, 인터넷 일요신문 3월 3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여권의 한 실세가 주도하는 비선라인이 청와대에 파견나온 사정기관 공직자를 동원해 대기업 임원 뒷조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및 소취하,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여권 실세가 벌인 뒷조사 작업’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4년 5월 11일자 3면, 인터넷 일요신문 5월 7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514~517	(각 정정·손배청구) 김기춘 외 3인 對 시사저널 ^(514·515) , 인터넷 시사저널 ^(516·517)
조 정 대 상	(1) 『박지만, “정윤화가 나를 미행했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4년 3월 25일자 18면~ 22면, 인터넷 시사저널 3월 25일자 정치면) (2) 『이정현 수석이 김기춘 실장 사퇴 극구 말렸다더라』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4년 3월 25일자 26면~28면, 인터넷 시사저널 3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 측근이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과 연루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박지만 회장 미행 및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4년 6월 3일자 27면, 인터넷 시사저널 5월 31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518, 527, 528, 533~542, 573~576, 581, 582, 591, 607~609, 616~618, 619, 620, 630, 633, 634, 643, 681, 684·685, 702, 705, 706, 785, 857, 992, 1041, 1055, 1058, 1416, 1576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교회 對 인터넷 일요신문 ^(518, 581) , 동아일보 ⁽⁵²⁷⁾ , 뉴데일리경제 ⁽⁵²⁸⁾ , 노컷뉴스 ⁽⁵³³⁾ , 인터넷 문화일보 ⁽⁵³⁴⁾ , 티브이데일리 ⁽⁵³⁵⁾ , 위키트리 ⁽⁵³⁶⁾ , 뉴스1코리아 ⁽⁵³⁷⁾ , 쿠키뉴스 ⁽⁵⁴⁰⁾ , 인터넷 시사저널 ⁽⁵⁸²⁾ , 아시아투데이닷컴 ⁽⁶¹⁹⁾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교회 외 1인 對 아주뉴스 ⁽⁵³⁸⁾ , 조선닷컴 ⁽⁵³⁹⁾ , 뉴스앤조이 ⁽⁵⁴¹⁾ , 인터넷 일요서울 ⁽⁵⁴²⁾ , 인터넷 TV조선 ⁽⁵⁷³⁾ , 서울신문 ⁽⁵⁷⁴⁾ , 인터넷 서울신문 ⁽⁵⁷⁵⁾ , 노컷뉴스 ⁽⁵⁷⁶⁾ , 뉴데일리 ⁽⁵⁹¹⁾ , 뉴스1코리아 ⁽⁶⁰⁷⁾ , 뉴시스 ⁽⁶⁰⁸⁾ , 인터넷 스포셜경제 ⁽⁶⁰⁹⁾ , 인터넷 한국일보 ⁽⁶¹⁶⁾ , 인터넷 스포츠한국 ⁽⁶¹⁷⁾ , 인터넷 일요신문 ⁽⁶¹⁸⁾ , 인터넷 일요시사 ⁽⁶²⁰⁾ , 이데일리 ⁽⁶³⁰⁾ , 뉴스파워 ^(633·634) , 뉴스앤조이 ⁽⁶⁴³⁾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⁶⁸¹⁾ , TV조선 ⁽⁷⁰²⁾ , 노컷뉴스 ⁽⁷⁰⁵⁾ , 업코리아 ⁽⁷⁰⁶⁾ , 인터넷 신동아 ⁽⁷⁸⁵⁾ , 인터넷 국민일보 ^(857, 1416) , 인터넷 경제풍월 ⁽⁹⁹²⁾ , 뉴스파워 ⁽¹⁰⁴¹⁾ , 노컷뉴스 ^(1055, 1576) , 뉴스1코리아 ⁽¹⁰⁵⁸⁾ (정정·반론청구) 사단법인 ○○○○선교회 외 1인 對 MBN ^(684·685)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요신문 : (1) 『연예계 구원파 신도 누구? “각계서 전도활동” 과거 보도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연예 화제면) (2) 인터넷 일요신문 : 『이준석 선장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 눈길,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도 구원파』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사회면) (3) 인터넷 일요신문 : 『[단독] 구원파 연예인, 스타급도 다수? 영화 주인공에서 아이돌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사회면) - 동아일보 : 『“청해진” 직원들 다수가 신자라는 구원파, 유병언-장인이 설립』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4면, 동아닷컴 4월 24일자 사회면) - 뉴데일리경제 : 『“한번 구원 받으면 수백명 희생시켜도 천국간다고?”』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세월호 참사] ooo는 구원파 연예인? 마녀사냥 우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문화일보 : 『李 선장 ‘구원파’ 신도… 해운사 직원 상당수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사회면) 외 4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및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스앤조이⁽⁵⁴¹⁾, 인터넷 국민일보^(857, 1416), 노컷뉴스^(1055, 1576)/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인터넷 일요신문⁽⁵¹⁸⁾, 뉴스앤조이⁽⁶⁴³⁾,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노컷뉴스⁽⁷⁰⁵⁾, 인터넷 신동아/사유 : 반론보도 게재) • 각 취하 (동아일보, 뉴데일리경제, 노컷뉴스⁽⁵³³⁾, 인터넷 문화일보, 티브이데일리, 위키트리, 뉴스1코리아^(537, 607), 아주뉴스, 조선닷컴, 인터넷 일요서울, 인터넷 TV조선,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노컷뉴스⁽⁵⁷⁶⁾, 쿠키뉴스, 인터넷 시사저널, 뉴데일리, 뉴시스, 아시아투데이닷컴, 인터넷 스포셜경제, 인터넷 한국일보, 인터넷 스포츠한국, 인터넷 일요신문⁽⁶¹⁸⁾, 인터넷 일요시사, 이데일리, 뉴스파워^(633, 634), 업코리아, 인터넷 경제풍월, 뉴스1코리아⁽¹⁰⁵⁸⁾/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TV조선, MBN/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일요신문⁽⁵¹⁸⁾ : 『‘구원파 연예인’ 실명 거론 해프닝 전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 뉴스앤조이⁽⁵⁴¹⁾ : 『‘○○○○선교회’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6일자 초기화면) • 일요신문⁽⁵⁸¹⁾ : 『○○○○선교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3면) • 뉴스앤조이⁽⁶⁴³⁾ : 『‘○○○○선교회’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7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반론] ○○○○선교회(설립자 박○○ 목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초기화면) • 노컷뉴스⁽¹⁰⁵⁵⁾ : 『[반론보도문] ○○○○선교회(설립자 박○○ 목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신동아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6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선교회”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교계뉴스면) 외 4건
2014서울조정519·520	(각 조정청구)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對 머니투데이 ⁽⁵¹⁹⁾ , e머니투데이 ⁽⁵²⁰⁾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 『“27.1㎡ 지목변경이 2000억 챙겨줬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19면) • e머니투데이 : 『남의 땅 ‘27.1㎡’덕분에 ○○○4차 2000억 ‘대박’』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4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인근아파트 대지 지목 변경으로 재건축시 2천억원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머니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19면) • e머니투데이 : 『‘○○○4차, 2000억 대박’ 관련 정정 및 반론』(2014년 5월 12일자 부동산면)

2014서울조정521~524	(각 정정·손배청구) 사단법인 한국○○○협회 對 경제투데이
조 정 대 상	『회원사 입방아 오른 김○○ ○○○협회장, 연임 ‘빨간불’』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3일자 산업면) 『주유소 업계, 전·폐업 지원 공제조합 설립 ‘글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원들이 협회장에 대한 불만이 많아 조기퇴진을 바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협회장 및 공제조합설립”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산업면)
2014서울조정525·526	(정정·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네이버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웹 다이어트 광고기사?』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4일자 경제IT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다이어트 광고기사가 의도적으로 특정 포털의 많이 읽은 기사 순위에 올라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디○○○’ 다이어트 광고기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경제IT면)
2014서울조정529~532	(각 정정·반론청구) ○○○○ 주식회사 對 신동아 ^(529·530) , 인터넷 신동아 ^(531·532)
조 정 대 상	『납품업체와 장비회사가 이면계약을 맺어 부당이익을 취했다』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4년 4월 17일자 198면~207면, 인터넷 신동아 4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프랑스 장비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고 장비 대금을 부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기상장비 ○○○ 비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4년 8월 1일자 293면, 인터넷 신동아 8월 1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543~548, 594~60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한○○ 對 KBS-1TV ^(543~545) , KBS미디어 ^(546~548) (각 정정·손배청구) 조선일보 ^(594·595) , 조선비즈닷컴 ^(596·597) , 조선닷컴 ^(598·599) , 시민일보 ^(600·601) , 인터넷 시민일보 ^(602·603) , 뉴데일리 ^(604·605)
조 정 대 상	• KBS-1TV : (1) 뉴스7 프로그램 『인선회 후원금 주며 입법로비 의혹』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6일자, KBS미디어 4월 26일자 뉴스속보면) (2) 뉴스9 프로그램 『인선회 후원금 주며 입법로비 의혹』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7일자, KBS미디어 4월 27일자 뉴스속보면) • 조선일보 : (1) 『海運조합, 해수부·국회 등에 전방위 로비 정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A6면, 조선비즈닷컴 4월 28일자 뉴스면) (2) 『한국선급, 해수부 공무원에 상품권 수백만원어치 돌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일자 A5면, 조선닷컴 5월 1일자 정치면) • 시민일보 : 『세월호 참사 후폭풍, 새민련으로 확산?』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1면, 인터넷 시민일보 4월 29일자 정치면) • 뉴데일리 : 『새민련 소속 A, 해운조합 ‘로비’ 받고 입법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전 국회의원의 신청인이 2007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인천 여객선 선주들의 단체인 인선회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조선일보, 조선비즈닷컴, 조선닷컴/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뉴데일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KBS-1TV, KBS미디어, 시민일보, 인터넷 시민일보)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한○○ 전 국회의원 “인선회 후원금 로비 받고 입법화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A5면, 조선비즈닷컴·조선닷컴 5월 27일자 정치면) • 뉴데일리 : 『“새민련 소속 A, 해운조합 ‘로비’ 받고 입법까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577	(정정·손배청구) 재○○ 對 인터넷 JTBC
조 정 대 상	『지폐 말리고 신분 숨기고 ... 탈출 선장의 황당한 기행』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선장을 응급치료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초상 모자이크 처리

2014서울조정578 · 579, 580	(정정 · 손해, 정정청구) 사단법인 대한○○○○○○협회 對 건치
조 정 대 상	(1) 『지정기준 · 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1일자 초기화면) (2)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인단에 의한 협회장선거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의 입장만을 담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586	(정정청구) ○○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對 인터넷 한국농어민신문
조 정 대 상	(1) 『○○도매시장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요구 ‘눈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농산물유통면) (2) 『○○도매시장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요구 ‘비난 빗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농산물유통면)
신청인 주장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판매장려금 인상 요구가 농민을 상대로 한 잇속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587~590	(각 정정 · 반론청구) 이○○ 對 의협신문 ^(587 · 588) , 인터넷 의협신문 ^(589 · 590)
조 정 대 상	『○○대학교 K전공의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하의 기사 (의협신문 2014년 2월 3일자 기획면, 인터넷 의협신문 1월 29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대 의대 교수인 신청인이 전공의에게 폭언 및 인격모독 등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A교수’ 추가 반론』 제하의 기사 (의협신문 2014년 5월 20일자 15면, 인터넷 의협신문 5월 20일자 기획면)

2014서울조정592, 593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협회 對 스포츠서울 ⁽⁵⁹²⁾ , 스포츠서울닷컴 ⁽⁵⁹³⁾
조 정 대 상	- 스포츠서울 : 『○○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 편파판정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10면) - 스포츠서울닷컴 : 『AIBA도 접수한 ○○ 국가대표 선발 편파판정 논란, 정부 체육개혁 찬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아시안게임 출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협회장의 영향으로 판정이 반복되고, 심판위원장이 판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시안게임 ○○ 대표선발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스포츠서울 2014년 5월 21일자 10면, 스포츠서울닷컴 5월 21일자)
2014서울조정606	(정정청구) 거제시청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거제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자체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거제시의 대체인력 채용 하자없다고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전국면)
2014서울조정610, 638	(각 정정청구) 사단법인 ○○○○○○○○○협회 對 세계일보 ⁽⁶¹⁰⁾ , 시사저널 ⁽⁶³⁸⁾
조 정 대 상	- 세계일보 : 『셀프 감독 · 일감 나눠먹기...지하철 추돌 뒤엔 ‘철피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9일자 3면) - 시사저널 : 『지하철 사고 뒤엔 ‘철피아<철도마피아>’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자 16면~20면)
신청인 주장	- 신청인 회사의 감사가 지하철 신호기 관리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등 일명 철피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⁶¹⁰⁾ - 상왕십리역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지하철 안전검사 부실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⁶³⁸⁾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13면) - 시사저널 : 『‘철피아’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7일자 18면)

2014서울조정611·612	(정정·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사학모리배 구 재단 이사장의 임시이사추천권 배제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 설립자인 신청인이 횡령과 부정입학 등의 비리가 적발되어 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현 재단측에 학교 운영권을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 교수평의회, 동창회 주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614·615	(정정·손배청구) 예○○ 對 인터넷 대한뉴스
조 정 대 상	『예○○ ○○시장 예비후보 도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시장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경기도 소유 자산을 무단 유출하는 등 시장 후보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이 행 결 과	『예○○ ○○시장 예비후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621	(정정청구) 해양경찰청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희망은 왜 가라 앉았나?...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해양경찰이 진도 VTS 교신 녹음파일을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622~629, 803~838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YTN ^(622·623) , 인터넷 YTN ^(624·625) , 네이버 ^(626·627) , 다음 ^(628·629) , 국민일보 ^(803·804) , 쿠키뉴스 ^(805·806) , 뉴스앤조이 ^(807·808) , 불만닷컴 ^(809·810) , e중앙뉴스 ^(811·812) , 뉴스천지 ^(813·814) , 인터넷 기독교일보 ^(815·816) , 인터넷 한국기독교공보 ^(817·818) , 인터넷 기독교연합신문 ^(819·820)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821·822)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823·824) , kidok.com ^(825·826) ,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827·828) , 기독교인뉴스 ^(829·830) , 뉴스쉐어 ^(831·832) , 뉴스미션 ^(833·834) , 인터넷 뉴스신문고 ^(835·836) , 큐프레스 ^(837·838)
조 정 대 상	• YTN : 뉴스출발 1부/뉴스출발 2부/뉴스앤이슈/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선교단체 간부 회삿돈 빼돌려 “호화생활”』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3일자, 인터넷 YTN·네이버·다음 3월 3일자 사회면) • 국민일보 : 『○○전도단, 출판부 ‘7억대 횡령 의혹’ 대부분 확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30면, 쿠키뉴스 3월 6일자 사회면) • 뉴스앤조이 : 『○○전도단, 공금횡령 사건에 늦장 대응』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뉴스교계면) • 불만닷컴 : 『유명 선교단체, 7억여원 횡령해도 자비?... 종교단체 감시기관 필요』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일자 뉴스종합면) • e중앙뉴스 : 『공금 빼돌려 호화생활한 간부 적발에도 선교단체는 쉬쉬』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일자 사회면) 외 2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선교단체의 공금이나 성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YTN, 인터넷 YTN,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터넷 한국기독교공보, 인터넷 기독교연합신문,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kidok.com,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기독교인뉴스, 뉴스미션, 큐프레스/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각 취하 (네이버, 다음, 불만닷컴, e중앙뉴스, 뉴스천지, 인터넷 기독교일보, 뉴스쉐어, 인터넷 뉴스신문고/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631, 632	(각 반론청구) 대한○○○○○○회 對 한겨레 ⁽⁶³¹⁾ , 인터넷 한겨레 ⁽⁶³²⁾
조 정 대 상	『고래를 잡아야 남자가 된다는 신화』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포경수술의 의학적 효과는 근거가 부족하며, 비뇨기과 의사들의 주수입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서울조정635, 636 · 637	(정정청구) 대통령비서실 對 노컷뉴스 ⁽⁶³⁵⁾ (정정 · 손해청구) 대통령비서실 외 4인 對 인터넷 한겨레 ^(636 · 637)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1) 『[세월호 참사] “靑, 조문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2) 『현장에서 할머니 섭외’ 靑 조문 연출 사실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3) 『靑, 조문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당시 청와대 측이 노인을 대상으로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⁶³⁵⁾ 2.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현장 방문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가 구출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로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636, 637)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639, 640	(각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협회 對 아이러브PC방 ⁽⁶³⁹⁾ , 인터넷 아이러브PC방 ⁽⁶⁴⁰⁾
조 정 대 상	『[사설]환골탈태 없는 사단법인의 추락』 제하의 기사 (아이러브 PC방 2014년 4월 1일자 2면, 인터넷 아이러브 PC방 4월 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상업적 활동에만 치중하여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환골탈태 없는 사단법인의 추락]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이러브 PC방 2014년 6월 2일자 2면, 인터넷 아이러브 PC방 6월 2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641, 642	(각 정정청구) ○○○○○○대학교 對 채널A ⁽⁶⁴¹⁾ , 인터넷 채널A ⁽⁶⁴²⁾
조 정 대 상	직언직설 프로그램 (채널A 2014년 5월 9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9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허술하게 학사관리를 하는 것처럼 비유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646·647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외 6인 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파주 ○○학원 이사장 복귀 추진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지방자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한 혐의로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위법적인 신청인 학교법인이 법인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파주 ○○학원 이사장 복귀 추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650, 651	(각 정정청구) 해양경찰청 對 JTBC ⁽⁶⁵⁰⁾ , 인터넷 JTBC ⁽⁶⁵¹⁾
조 정 대 상	• JTBC : 뉴스9 프로그램 『일부 해경 “죽을 것 같아 안 들어갔다”』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4일자) • 인터넷 JTBC : 『헬기 구조대원 “죽을 것 같아 안 들어갔다” 진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해경 구조대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았으며,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일부 대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일부 해경 “죽을 것 같아 안 들어갔다”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7월 3일자, 인터넷 JTBC 7월 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652~673	(각 정정·반론청구) ○○은행 주식회사 對 브레이크뉴스 ^(652·653) , 스포츠서울닷컴 ^(654·655) , 시사코리아닷컴 ^(656·657) , 아시아헤럴드 ^(658·659) , 아주뉴스 ^(660·661) , 에브리뉴스 ^(662·663) , 인터넷 메트로 ^(664·665) , 인터넷 위클리오늘 ^(666·667) , 인터넷 월요신문 ^(668·669) , 일간NTN ^(670·671) , 프라임경제 ^(672·673)
조 정 대 상	• 브레이크뉴스 :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분양율 92% 불구 공매처분 위기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경제일반면) • 스포츠서울닷컴 : 『드림리츠 “동아파밀리에, 고의 파산시켰다” vs 신동아건설 “억측 주장”』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경제면) • 시사코리아닷컴 : 『고양시 신동아파밀리에 공매처분 공방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2일자 경제일반면) • 아시아헤럴드 : 『“신동아파밀리에 공매처분” 원흉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부동산면) • 아주뉴스 : 『“덕이지구 신동아파밀리에 공매처분에 시행사·입주민 반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9일자 부동산면) 외 1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모하여 ○○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를 파산시키고, 아파트를 헐값에 공매처분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브레이크뉴스 : 『[반론보도] ○○은행, 덕이지구 신동아패밀리에 공매처분 대주로서 적법한 담보권 행사 및 수분양자 경제적 이익도 부합』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경제면) • 스포츠서울닷컴 : 『[반론보도] ○○은행,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공매처분은 대주로서의 적법한 담보권 행사이며 수분양자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경제면) • 시사코리아닷컴 : 『[반론보도] ○○은행은 일산 덕이지구 신도아파밀리에 아파트 공매처분관련, 대주로서의 적법한 담보권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 밝혔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경제면) • 아시아헤럴드 : 『[반론보도] ○○은행,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공매처분은 대주로서의 적법한 담보권 행사이며 수분양자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부동산면) • 아주뉴스 『○○은행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공매처분, 적법한 담보권행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부동산면) 외 12건
2014서울조정674~676, 686~697, 743~748, 839~844, 882~88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선교협회 對 CBS-TV ^(674~676) , CBS ^(686~688, 692~694) , 크리스천노컷뉴스 ^(689~691, 695~697, 743~745, 746~748) , 국민일보 ^(839~841, 882~884) , 쿠키뉴스 ^(842~844, 885~887)
조 정 대 상	• CBS-TV : 교계뉴스 프로그램 『○○○○ 교회에 대한 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6일자, CBSi 2월 26일자 교계뉴스면) • 크리스천 노컷뉴스 : 『○○○○ 교회 빠지면 평생 종의 굴레』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교계뉴스면, CBSi 2월 28일자 교계뉴스면) • 크리스천 노컷뉴스 : 『○○○○ 교회에 대한 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 국민일보 : 『“시한부종말론 주창... 20-40대 여성이 타깃”...○○○○ 교회 ○○○○선교협회 실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1일자 30면, 쿠키뉴스 4월 11일자 기독교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이단, 사이비 단체이며, 대학가에 종말론을 유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CBS-TV, CBSi^(686~688), 크리스천노컷뉴스^(689~691, 743~745), 국민일보, 쿠키뉴스) • 각 취하 (CBSi^(692~694), 크리스천노컷뉴스^(695~697, 746~748)/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677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메○○○, 광고 대행사 악성코드 대량 유포』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IT/과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이벤트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악성코드 감염사고를 과장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678, 679	(각 정정청구) 이○○ 對 MBC-TV ⁽⁶⁷⁸⁾ , iMBC ⁽⁶⁷⁹⁾
조 정 대 상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미성년자 가학 행위까지… 막 가는 인터넷방송 도 넘었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4월 15일자, iMBC-TV 4월 1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신청인이 방송중에 미성년자들에게 강제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682	(정정청구) 사단법인 ○○○○○○○협회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1) 『불량 정제유 논란 ① “헛발 지원” 제2의 세녹스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경제면) (2) 『불량 정제유 논란 ② 낮은 규격이 저품질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경제면) (3) 『불량 정제유 논란 ③ 유명무실 식별제 가짜 석유제품 원흉』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자 경제면) (4) 『불량 정제유 논란 ④ 줄줄 새는 세금 유사석유 연간 최소 1조 증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경제면) (5) 『불량 정제유 논란 ⑤ 양두구육, “신(新)” 빼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원이 생산, 공급하는 감압정제유와 관련하여 저품질 가짜 제품 등의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량 정제유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683	(손배청구) 이○○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오마이포토] “김일성 3부자 향해 개새* 안하면 종북(?)”』 제하의 사진 (2013년 8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시위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서울조정698~701	(각 정정·반론청구) ○○○○○○노동조합 對 동아일보 ^(698·699) , 동아닷컴 ^(700·701)
조 정 대 상	『“비리 노조원 감싸기, 더 이상은 안된다” 칼 빼든 ○○협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4월 16일자 A27면, 동아닷컴 4월 16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징계사유 예외 규정을 들어 비리를 저지른 노조원을 감싸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축구협회 비리노조원 감싸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4일자 25면, 동아닷컴 6월 4일자 스포츠면)
2014서울조정703·704	(정정·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경찰관 부인 수억 사기 캐나다 도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기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여학원 건물 임대 보증금을 받고 사라진 배후에 신청인이 관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보도/내용 : 반론보도) • 취하 (손해배상/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경찰관 부인 수억 사기 캐나다 도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8일자 기타면)
2014서울조정707, 708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EBS-TV ⁽⁷⁰⁷⁾ , EBS뉴스 ⁽⁷⁰⁸⁾
조 정 대 상	정오뉴스 프로그램 『〈난독증 집중취재〉 수억 원 들여 도입한 난독증 프로그램 “효과 없어”』 제하의 보도 (EBS-TV 2014년 4월 29일자, EBS뉴스 4월 29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서울시교육청에 제공한 난독증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오뉴스 프로그램 『난독증 프로그램 “효과없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EBS-TV 2014년 6월 3일자, EBS뉴스 6월 3일자 교육면)

2014서울조정709~716	(각 손해청구) 김○○외 1인 對 연합뉴스 ⁽⁷⁰⁹⁾ , 뉴시스 ⁽⁷¹⁰⁾ , 세계닷컴 ⁽⁷¹¹⁾ , 인터넷 엠티엔 ⁽⁷¹²⁾ , 노컷뉴스 ⁽⁷¹³⁾ , KBS미디어 ⁽⁷¹⁴⁾ , 인터넷 메트로 ⁽⁷¹⁵⁾ , SBS 콘텐츠허브 ⁽⁷¹⁶⁾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부서관이 육상부 여고생 기숙사 들어가 성추행 · 절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속보면) • 뉴시스 : 『현역 부서관이 고교 기숙사 들어가 여학생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육상부’ 성추행 후 도망친 부서관, 결국...』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일반면) • 인터넷 엠티엔 : 『현역 부서관이 여고생 기숙사 침입해 성추행...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현역 부서관, 여고생 기숙사 침입해 성추행 · 절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고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포털 및 카페, 블로그, 웹문서 기사 삭제 • 각 조정성립 (뉴시스, 세계닷컴, 인터넷 엠티엔, 노컷뉴스, KBS미디어, 인터넷 메트로, SBS콘텐츠허브/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포털 및 카페, 블로그, 웹문서 기사 삭제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17	(손배청구) 오○○ 對 SBS-TV
조 정 대 상	현장21 프로그램 『147회』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전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400만원, 부제소 - 동의후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718, 719	(각 정정청구) ○○○○협동조합 對 MBC-TV ⁽⁷¹⁸⁾ , iMBC ⁽⁷¹⁹⁾
조 정 대 상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유병언 압류부동산 사실상 ‘강통’...』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5월 22일자, iMBC 5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유병언 회장 측의 청담동 초콜렛 가게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20, 721	(각 반론청구) 한국가스안전공사 對 SBS CNBC-TV ⁽⁷²⁰⁾ , 인터넷 SBS CNBC-TV ⁽⁷²¹⁾
조 정 대 상	(1)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 『수상한 가스안전공사, 7년째 중소기업 ‘딴지’』 제하의 보도 (SBS CNBC-TV 2014년 5월 9일자, 인터넷 SBS CNBC-TV 5월 9일자 뉴스면) (2) SBS CNBC 뉴스 프로그램 『가스안전공사, 6개국 특허제품 7년째 ‘불합격’...왜?』 제하의 보도 (SBS CNBC-TV 2014년 5월 9일자, 인터넷 SBS CNBC-TV 5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특허로 때문에 특정업체 제품의 시장출시를 막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SBS CNBC 뉴스 프로그램 『가스안전공사, 특허중기제품 ‘딴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일자)
2014서울조정722~736	(각 정정청구) 변희재 對 동아닷컴 ⁽⁷²²⁾ , 인터넷 서울경제 ⁽⁷²³⁾ , 세계닷컴 ⁽⁷²⁴⁾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⁷²⁵⁾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⁷²⁶⁾ , 인터넷 스포츠한국 ⁽⁷²⁷⁾ , 아시아경제닷컴 ⁽⁷²⁸⁾ , 인터넷 SBS CNBC ⁽⁷²⁹⁾ , 인터넷 일요신문 ⁽⁷³⁰⁾ , 조선닷컴 ⁽⁷³¹⁾ , 인터넷 파인애플뉴스 ⁽⁷³²⁾ , wow한국경제TV ⁽⁷³³⁾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⁷³⁴⁾ , 엑스포츠뉴스 ⁽⁷³⁵⁾ , 인터넷 여성신문 ⁽⁷³⁶⁾
조 정 대 상	• 동아닷컴 : 『변희재 대표의 이같은 반응을 본 진중권 교수는 “자기는 ‘듣보잡’ 소리 듣고서 고소하면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정몽준 아들 피소, 변희재 “해도 너무해”에 진중권은 “자기는 ‘듣보잡’ 소리에 고소하더니” ‘핀잔’』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진중권, 정몽준 아들 고소 소식에 “초등생도 아니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츠월드 : (1) 『진중권, 정예선 두둔 변희재에... “듣보잡 소리에 고소 하면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9일자 이슈면) (2) 『진중권, ‘정몽준 아들 정예선 고소’ 언급한 변희재에 일침』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9일자 이슈면)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 『진중권, 정몽준 아들 감싼 변희재에게 “자기는 ‘듣보잡’ 소리에 고소하면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0일자 라이프면) 외 10건
신청인 주장	진중권 교수가 형사처벌 받은 사유가 신청인에 대한 모욕죄 외에도 타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때문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사실보도로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음)

2014서울조정737·738 (정정·손배청구) 포천시 對 인터넷 대한투데이	
조 정 대 상	(1)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재앙 부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0일자 기자수첩면) (2) 『포천시, 이제 진실만 말해도 시간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3일자 기자수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석탄발전소를 건립사실을 숨겼으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39~742 (각 정정·손배청구) 의료법인○○의료재단 對 MBN ^(739·740) , 인터넷 MBN ^(741·742)	
조 정 대 상	아침의 창 매일경제 프로그램 『현장출동 ‘병원내 성추행, 성폭행 논란’』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5월 16일자, 인터넷 MBN 5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환자가 자살하였고, 병원 측이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경찰과 보호자에 알리지 않은 채 합의를 중용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아침의 창 매일경제 프로그램 『‘병원 내 성추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6월 13일자, 인터넷 MBN 6월 13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749 (정정청구) 김○○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1) 『새정치, ○○구청장 후보 선정 갈등 고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지역면) (2) 『선관위, 김○○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불법침의 조사 중』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구청장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후보 선정과정에서 컷 오프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및 선관위에서 신청인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50, 751	(각 정정청구) OBS경인TV(주) 對 미디어오늘 ⁽⁷⁵⁰⁾ , 인터넷 미디어오늘 ⁽⁷⁵¹⁾
조 정 대 상	『‘MB맨’ 유인촌, OBS 교양프로 사회자 ‘낙점’ 논란』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4년 5월 21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 경영진의 지시로 대담프로그램 사회자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를 매개한 포털사이트에도 관련 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OBS 교양프로 사회자 ‘낙점’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4년 6월 11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6월 12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752, 753	(각 정정청구) 한국○○○○협회 對 오마이건설뉴스 ⁽⁷⁵²⁾ ,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⁷⁵³⁾
조 정 대 상	• 오마이건설뉴스 : (1) 『재난관리 전담기관 ‘소방방재청’의 꿈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1면) (2)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알박기 관료타워(?)』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6면~7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5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소방방재청의 자리보존을 위해 존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협회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4년 6월 25일자 2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6월 2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760 · 761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우체국 택배원들의 눈물...우체국 위탁업체 ‘횡포’ 공정위에 신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우체국 위탁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62, 763	(각 정정청구) ○○면사무소 對 신아일보 ⁽⁷⁶²⁾ , 인터넷 신아일보 ⁽⁷⁶³⁾
조 정 대 상	『○○군수선거 과열 혼탁 우려』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4년 5월 26일자 13면, 인터넷 신아일보 5월 26일자 광주/전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면사무소가 부녀회장 모임을 소집해 ○○군수 후보자 부인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돈봉투를 지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면사무소 모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13면, 인터넷 신아일보 6월 13일자 광주/전남면)
2014서울조정764	(정정청구) ○○○○○교회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예수 사라진 기독교, 교인 쫓아내는 목회자』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1980년대 한국의 대표적 이단 교단이었으며 교세 확장을 통해 정통교단으로 탈바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769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경제지 기자, 홍보실 직원 폭행 후 욕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0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전직 언론사 기자인 신청인이 첨부 파일을 누락한채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유통업체 홍보실 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후 보도)
이 행 결 과	『기자, 홍보실 직원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770	(정정청구) 박○○ 외 1인 對 CBS-TV
조 정 대 상	교계뉴스 프로그램 『이단 구원파를 파헤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교회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을 이용해 사업을 벌여 신도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교계뉴스 프로그램 『박○○ 목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8일자)

2014서울조정771·772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메뉴 빼기기 논란...소상공인 등치는 프랜차이즈 횡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9일자 헬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상공인이 개발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메뉴를 빼긴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73~775	(각 정정청구) 김용익 對 주간조선 ⁽⁷⁷³⁾ , 인터넷 주간조선 ⁽⁷⁷⁴⁾ , 조선닷컴 ⁽⁷⁷⁵⁾
조 정 대 상	- 주간조선 : 『검찰, 치협 입법 로비 의혹 내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10면, 인터넷 주간조선 6월 2일자 커버스토리면) - 조선닷컴 : 『검찰, 치협 입법 로비 의혹 내사...의원 4명 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후원금 집중적으로 받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개정과 관련해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주간조선 : 『입법마피아 김용익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13면, 인터넷 주간조선 6월 23일자 커버스토리면) - 조선닷컴 : 『입법마피아 김용익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776~779	(각 정정·손배청구) 성○○ 對 MBC-TV ^(776·777) , iMBC ^(778·779)
조 정 대 상	(1) 8시뉴스 프로그램 『돌아오는 성추행 교수들』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5월 27일자, iMBC 5월 27일자 사회면)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성추행 의혹 교수” 복직되나』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5월 28일자, iMBC 5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성추행의혹 사건때문에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780~783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동아일보 ^(780·781) , 동아닷컴 ^(782·783)
조 정 대 상	『창문 작아 정작 사람은 못 빠져나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6월 2일자 A14면, 동아닷컴 6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피난시설이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84	(정정청구) ○○○촬영기자협회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KBS는 과연 필요한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35면)
신청인 주장	모 방송국 카메라기자 특파원들이 높은 연봉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786~788	(각 정정청구) 유○○ 對 인터넷 기독교일보 ⁽⁷⁸⁶⁾ , 시사1 ⁽⁷⁸⁷⁾ , 엔디엔뉴스 ⁽⁷⁸⁸⁾
조 정 대 상	- 인터넷 기독교일보 : 『[6.4지방선거] 유○○ ○○구청장 예비후보, 무소속 장○ 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정치면) - 시사1 : 『유○○, ○○구청장 무소속 장○ 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정치면) - 엔디엔뉴스 : 『유○○ 前 예비후 보, 무소속 ○○구청장 장 ○ 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창조정치면)
신청인 주장	○○구청장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선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89	(정정청구) 이○○ 외 2인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KBS는 과연 필요한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35면)
신청인 주장	모 방송국 과학재난부 소속인 신청인들이 전 보도본부장의 세월호 관련 발언 내용을 노조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790 · 791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SBS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취재파일] 29살에 ○○연맹 이사, 문제는?』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9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업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모 스포츠연맹 이사 및 기술위원에 임명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한○○경기연맹 이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스포츠면)

2014서울조정792	(손배청구) 최○○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S그룹 임원들 왜 이러나...이번엔 주력 계열사 퇴임 임원이 강간미수로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뉴스기업면)
신청인 주장	대기업 임원의 사내 여학강사 성폭행 미수 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4서울조정793 · 794	(정정 · 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조 정 대 상	『서산시 D초등학교 교감, 학생폭행으로 충남경찰청에 고발 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유산 사유가 사실확인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했음에도 청구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795, 796	(각 정정청구) 국방부 對 내일신문 ⁽⁷⁹⁵⁾ , 인터넷 내일신문 ⁽⁷⁹⁶⁾
조 정 대 상	『김관진, ‘건설브로커 조사’ 건의 묵살, 보고한 기무사령관 두 달 뒤 전격경질』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6월 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공사지체상금 면제와 관련된 기무사의 조사건의를 묵살하고 오히려 기무사 수뇌부를 경질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6월 27일자 6면, 인터넷 내일신문 6월 27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797~800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덴탈포커스 ^(797 · 798) , 인터넷 덴탈포커스 ^(799 · 800)
조 정 대 상	『스텝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서 홍보글 게재 대가 금품수수 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8면, 인터넷 덴탈포커스 5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모 포털사이트에서 치과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홍보성 글을 게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4서울조정801·802		(정정·손배청구) 정○○외 2인 對 MBC -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아파트 하자는 나 몰라라』 수상한 관리사무소』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아파트 하자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845~850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MBN ^(845·846) , MK뉴스 ^(847·848) , 인터넷 YTN ^(849·850)
조 정 대 상		- 인터넷 MBN : 『[유병언] CCTV에 찍힌 스타렉스·이삿짐 트럭』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회면) - MK뉴스 : 『(1) 검찰, 유병언 추적 해남·목포에 배수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회면) (2) 『유병언, 100억 밀항 시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1명 긴급체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수배중인 금수원 상무의 아들인 신청인이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의 소유주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각 50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 인터넷MBN : 『유병언 도피 관련 스타렉스 소유주에 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사회면) - MK뉴스 : 『“스타렉스 소유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사회면) - 인터넷YTN : 『‘유병언 도피 도운 차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51·852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약사공론
조 정 대 상		『약사교육서 특정기업 옹호한 소비자원 강사 퇴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기관 소속 강사인 신청인이 강의중 특정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해 퇴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약사공론 기사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입장』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 853, 854, 889	(정정, 정정, 손해청구) 박○○ 對 채널A ^(853, 889) , 인터넷 채널A ⁽⁸⁵⁴⁾
조 정 대 상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채널A 2014년 5월 18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8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귀순자인 신청인이 일부 탈북자들처럼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귀순한 딸에게서 돈 받는 어머니”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7일자)
2014서울조정855, 856	(각 정정청구) 여○○ 외 1인 對 한국일보 ⁽⁸⁵⁵⁾ , 인터넷 한국일보 ⁽⁸⁵⁶⁾
조 정 대 상	『시민단체들, 독단적 대표와의 전쟁』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3월 28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네도서관 지원 시민단체 대표로 재직당시 해외도서관 지원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조직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민단체들, 독단적 대표와의 전쟁]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7월 4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4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58~861	(각 정정·반론청구) ㈜에스비에스 對 전자신문 ^(858·859) , 인터넷 전자신문 ^(860·861)
조 정 대 상	- 전자신문 :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 부당하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30면, 인터넷 전자신문 5월 26일자 사설면) - 전자신문 : 『지상파 3사 월드컵 재송신료 100억 육박』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5일자 1면) - 인터넷 전자신문 : 『지상파, 월드컵 재송신료 별도 요구 ‘일파만파’...‘월드컵 블랙아웃’ 가능성 제기』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4일자 통신방송면)
신청인 주장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업계에 스포츠 이벤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별도 재전송료를 요구한 것은 브라질 월드컵이 처음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지상파 3사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2면, 인터넷 전자신문 6월 27일자 통신방송면)

2014서울조정862	(정정청구) 구○○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기무사 장교, 새벽에 女하사를 찌질방으로…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 소속 중령으로 근무할 당시,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고 정보비 등 공금을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기무사 A중령 성추행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63, 864	(각 반론청구) ○○○거주시설 ○○○ 對 서울신문 ⁽⁸⁶³⁾ , 인터넷 서울신문 ⁽⁸⁶⁴⁾
조 정 대 상	『성추행 가해자·피해자 같은 방에 재웠다』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6월 10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6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시설에서 성추행, 강제노동 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1) 기사 제목 수정 및 기사 본문 중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반발” 부분은 “... 반박”으로, “발일은...” 부분을 “발일은 원예프로그램으로”으로, “인권유린 및 비리 의혹”을 “인권침해 의혹”으로 수정 (2) 기사 본문 중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진상규명이 더딘 터라” 부분 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서울신문 『‘인권침해 의혹’ 송전원 진상규명 진행중』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865	(정정청구) 국군기무사령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성군기 사건 잇따른 기무사, 靑에 “남탓 보고” 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속 부사관의 여군 중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신청인이 출입기자와 정훈장교가 결탁되었다는 내부 보고서를 생산하고, 제보자 색출작업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성군기’ 제보자 색출관련 기무사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866, 867	(각 정정청구) 강○○ 對 시사IN ⁽⁸⁶⁶⁾ , 시사인Live ⁽⁸⁶⁷⁾
조 정 대 상	『‘그 이름’ 왜 있을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7일자 28면~31면, 인터넷 시사IN Live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경찰청 소속 신청인이 청와대 인사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모 대출사건을 축소 수사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는 수용이 가능하나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868~871	(각 정정·손배청구) 시단법인 ○○○○○협회 對 경제투데이 ^(868·869) , 매일마케팅신문 ^(870·871)
조 정 대 상	- 경제투데이 : (1) 『[속보]○○○ 동맹휴업 전격 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산업면) (2) 『○○○협회, 동맹휴업 전격 철회…정부 강경 대응에 물러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산업면) - 매일마케팅신문 : 『○○○협회 “12일 동맹휴업 철회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 동맹휴업이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경제투데이 : 『“○○○협회 동맹휴업 철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산업면) - 매일마케팅신문 : 『“○○○협회 동맹휴업 철회”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872~875	(각 정정·손배청구) ○○○○○구역주민대책위원회 외 1인 對 아유경제 ^(872·873) , 아유경제(AU 경제) ^(874·875)
조 정 대 상	『의왕○○○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가 코앞인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9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책위원회가 해당 구역 조합설립을 방해하고 있으며, 타구역 이권개입에 관련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876	(손배청구) 진○○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날] 의문의 화재사고 묻지마 방화?』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차량화재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 동의후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877·878, 880·881, 894·895	(각 정정·손배청구) 민○○ 對 뉴시스 ^(877·878) , 미디어펜 ^(880·881) , 노컷뉴스 ^(894·895)
조 정 대 상	• 뉴시스 : 『○○증권 민○○ 노조위원장, 자격 상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경제면) • 미디어펜 : 『○○증권 민○○ 노조위원장 자격 상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경제면) • 노컷뉴스 : 『번번이 발목 잡던 “민○○ 리스크” 해결 ... ○○증권 정상화 성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증권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사유에 부당한 인사 간섭 및 이권 청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뉴시스 : 『민○○ 노조위원장에 대한 면직사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경제면) • 미디어펜 : 『“민○○ 노조위원장에 대한 면직사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8일자 경제면) • 노컷뉴스 : 『“번번이 발목 잡던 ‘민○○ 리스크 해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879	(정정청구) 육군본부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증거자료” 조의금 서류 남기지 말라는 육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육군본부가 자살병사 조의금 횡령 사건 이후 사건 공개의 단초가 된 조의금 관련 서류를 앞으로는 남기지 말라고 일선 예하부대에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7월 5일자 8면, 인터넷 서울신문 7월 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 888, 906, 907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종합건설 외 1인 對 쿠키뉴스 ⁽⁸⁸⁸⁾ , 헤럴드경제 ⁽⁹⁰⁶⁾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⁹⁰⁷⁾
조 정 대 상	• 쿠키뉴스 : 『철도공단 변전소공사 ‘위험·지연’ 논란 … 하도급업체 “갑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일자 문화면) • 헤럴드경제 : 『회룡역 인근 철도 5m옆 지하공사 1년째 지지부진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22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철도시설공단의 ‘이상한’ 공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재테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불법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하도급 회사와의 계약을 일방 해지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약속)
이 행 결 과	• 쿠키뉴스 : 『[바로잡습니다] 6월 3일 보도한 철도공단 변전소공사 ‘위험·지연’ 논란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8일자 문화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5월 22일자 ‘철도시설공단의 ‘이상한’ 공사?’(인터넷판) ‘회룡역 인근 철도 5m옆 지하공사 1년째 지지부진 왜?’(지면)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0일자 재테크면)
2014서울조정890~893	(각 정정·손배청구) 국제○○○○○봉사단 對 그린경제 ^(890·891) , e그린경제 ^(892·893)
조 정 대 상	(1) 『美대통령 ‘가짜 봉사賞’ 불법 유통된다』 제하의 기사 (그린경제 2014년 5월 28일자 1면, 2면, e그린경제 5월 28일자 교육면) (2) 『배우 정준호에 賞 만들어 준 L씨는 ‘희대의 문서 사기꾼’』 제하의 기사 (그린경제 2014년 5월 28일자 7면, e그린경제 5월 28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짜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유통하거나 남발해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896	(정정청구)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1) 『비공개 분과위 절반이상 현장교사…학교 비우는 “선생님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6면) (2) 『법적권한 없는 전문위원이 교육청에 자료 무단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에 활동 중인 팀원 절반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수업 결손과 수업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시교육감 인수위 관련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4일자 12면)

2014서울조정897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국토매일
조 정 대 상	『철도공단 의정부변전소공사 설계보안상 일지정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9일자 철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무리한 공법 변경 요구로 의정부 변전소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철도공단 의정부 변전소 철거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교통면)
2014서울조정898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조 정 대 상	『○○제약 최○○ 사장, ‘물장사’ 팔 건었나?... 창업 2세, 제약업 ‘홀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약보다 식품 음료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서울조정899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뉴스플러스
조 정 대 상	(1) 『정신 나간 경기교육청, 무자격업자 강당공사 중단잠적 업체두둔 “쉬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교육면) (2) 『○○초 강당 공사업체 “내진설계 등 부실시공” 폭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시공하는 있는 초등학교 강당 증축공사가 부실 시공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4일자 교육면)
2014서울조정900~90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중앙일보 ^(900~902) , 온라인 중앙일보 ^(903~905)
조 정 대 상	『“국민 눈·귀 속인 중대 범죄...KBS는 개조 대상”』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4년 6월 25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KBS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강연내용을 당사자의 입장청취 노력없이 자체심의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08~91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강○○ 對 법무경찰신문 ^(908~910) , 인터넷 법무 경찰신문 ^(911~913)
조 정 대 상	• 법무경찰신문 : (1) 『범죄심리학자들, “과대망상 의심…위험한 단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8면) (2) 『강씨 실체 드러난 ‘과대망상 하얼빈 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자 8면~9면) • 인터넷 법무경찰신문 : (1)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피모』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뉴스면) (2) 『〈간급진단1〉 대한민국도 더 이상 ‘헤이트 스피치’ 안전지대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뉴스면) (3) 『〈간급진단2〉 하피모 강○○, 중국에서 시한부종말론 재산 갈취 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뉴스면) 외 10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을 재림예수라 주장하며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14~933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채널A ^(914·915) , 인터넷 채널A ^(916·917) , 인터넷 연합뉴스TV ^(918·919) , 인터넷 YTN ^(920·921) , 뉴스1코리아 ^(922·923) , 노컷뉴스 ^(924·925) , 세계닷컴 ^(926·927) , e머니투데이 ^(928·929) , CBC뉴스 ^(930·931) , CBS-R ^(932·933)
조 정 대 상	• 채널A : (1) 종합뉴스 프로그램 『‘연락 없더니…’ 세월호 보상금에 나타난…』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7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7일자 사회면) (2) 종합뉴스 프로그램 『세월호 사망 딸 보험금만 ‘썩’ …』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3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2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12년 만에 나타나 딸 보험금…』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10년 넘게 연락두절... 딸 사망보험금…』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세월호 사망 딸 보험금 챙긴 친부 …』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13년만에 나타난 친부, 사체검안서로 보험금 신청』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4일자 사회면) • CBS-R :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13년만에 나타난 친부, 사체검안서로 보험금 신청』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4일자) 외 6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과 학생의 친부인 신청인이 오래 전 이혼한 뒤 자식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오다가 참사 후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YTN, 노컷뉴스, e머니투데이, CBS뉴스, CBS-R/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인터넷 연합뉴스TV 30만원, 인터넷 YTN 10만원, 노컷뉴스 20만원, e머니투데이 30만원, CBC뉴스 3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채널A, 인터넷 채널A/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세계닷컴/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연합뉴스 TV : 『‘12년만에 나타나 딸 보험금 챙긴 아버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10년 넘게 연락두절...딸 사망보험금 수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세월 호 사망 딸 보험금 챙긴 친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3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13년만에 나타나 딸 보험금 챙긴 친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8일자 사회면) • CBS-R :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2014년 7월 29일자) •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 ‘12년만에 나타나 딸 보험금 챙긴 친부’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사회면) 외 2건
2014서울조정934~ 943, 945·946	(각 정정·손배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뉴스천지 ^(934·935) , 매일일보 인터넷 ^(936·937) , 인터넷 일간투데이 ^(938·939) , 온라인 중앙일보 ^(940·941) , 뉴스1코리아 ^(942·943) , 아주뉴스 ^(945·946)
조 정 대 상	• 뉴스천지 :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지지단체 이어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1일자 전국면) • 매일일보 인터넷 :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정치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단체 이어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전국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유한식후보 각급단체 지지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유한식후보, 각급단체 지지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충북·세종면) • 아주뉴스 : 『전국○○○○ 세종시연합회, “유한식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지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 세종지부가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일간투데이, 뉴스1코리아/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취하 (뉴스천지, 매일일보 인터넷 , 온라인 중앙일보, 아주뉴스/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뉴스천지 : 『[정정보도문] 전국○○○○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9일자 정치면) • 매일일보 인터넷 : 『[바로잡습니다] 전국○○○○노조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8일자 지역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전국○○○○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1일자 사회·전국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정정보도문] 전국○○○○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9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전국○○○○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1일자 전국면) • 아주뉴스 : 『[정정보도문] 전국○○○○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8일자 지방면)
2014서울조정944	(손배청구) 진○○ 對 데일리카
조 정 대 상	『폭스바겐, ‘CC’ 새 차 구입했는데..받아보니 사고차(?)』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수입차뉴스면)
신청인 주장	사고차량을 신차로 속여 출고한 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면서 딜러사 지점장인 신청인의 실명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947	(반론청구) 농림축산식품부 對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두부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6일자 A14면)
신청인 주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콩 두부 적합업종 지정 해제요구와 관련해 통계를 왜곡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48~957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시사주간 ^(948·949) , 인터넷 시사주간 ^(950·951) 이코노믹포스트 ^(952·953) , 인터넷 스페셜경제 ^(954·955) , 인터넷 일요시사 ^(956·957)
조 정 대 상	• 시사주간 : 『[단독]1300만 명 소비자 ‘성형외과’로 유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16면) • 인터넷 시사주간 : (1) 『위○○, 1300만 명 소비자 ‘청담 맥 피부과 · 성형외과’로 유인했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0일자 법원 · 검찰면) (2) 『[후속]위○○, 법률기망행위 ‘성형외과 알선’, 2012년부터 계속해왔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사건 · 사고면) (3) 『위○○, ‘불법성형외과 알선’에 ‘쿠팡 비방 광고’까지 막가파의 끝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건 · 사고면) (4) 『[단독]위○○ 불법행위 ‘본지단독보도관련’ 보건복지부 칼 빼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사회일반면) • 이코노믹포스트 : (1) 『[단독]위○○, 1300만 명 소비자 ‘청담 맥 피부과 · 성형외과’로 유인했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0일자 포토뉴스면) (2) 『위○○, ‘불법성형외과 알선’에 ‘쿠팡 비방 광고’까지 막가파의 끝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회면) (3) 『[단독]위○○ 불법행위 ‘본지 단독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칼 빼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페셜경제 : 『위○○, 1위 탈환 위해 ‘성형시장 진입?’ 고의성 논란 불거진 이유』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5일자 소비자면) • 인터넷 일요시사 : (1) 『위○○ ‘의료기관 알선’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0일자 기업면) (2) 『위○○ ‘이상한 돈벌이’ 실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8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소셜커머스 업체와 함께 피부과 상품을 내걸어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958·959	(정정·손배청구) 협업마을 ○○○○ 외 1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직언직설 프로그램 『그때 그 사건 ‘○○○○’ 미스테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종교단체이며, 대표자가 신도 2명을 살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 이행방법 : <직언직설> 본 방송중 신청인 관련 정정 사항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는 안내 자막을 2차례에 걸쳐 내보내며, 향후 신청인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받은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광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합의
이 행 결 과	인터넷 채널A 『‘○○○○과 김○○ 회장’에 대한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8일자 홈페이지)

2014서울조정960, 961	(각 정정청구) 변희재 對 인터넷 경향신문 ⁽⁹⁶⁰⁾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⁹⁶¹⁾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원희복의 인물탐구] 보수논객 변희재라는』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8일자 정치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서헌철목사] 좌파? 우파?』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신앙생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항상 여권에서만 활동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962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법인협의회 對 CBS-R
조 정 대 상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전 기간제 교사대표와의 인터뷰』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전거래가 있다는 취지의 전 기간제교사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전 기간제 교사대표 관련 반론입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2일자)
2014서울조정963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마트 소불고기의 배신』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과정 중 유통기한 스티커를 바꿔달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64~967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MBN ^(964·965) , 인터넷 MBN ^(966·967)
조 정 대 상	(1) 뉴스8 프로그램 『새누리 선관위, 지지자 불법 동원 용납 않겠다』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7월 6일자, 인터넷 MBN 7월 6일자 정치면) (2) 굿모닝MBN 프로그램 『새누리 선관위, 지지자 불법 동원 용납 않겠다』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7월 6일자, 인터넷 MBN 7월 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버스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68, 969	(각 정정청구) 유기홍 외 1인 對 검경타임즈 ⁽⁹⁶⁸⁾ , 검경뉴스 ⁽⁹⁶⁹⁾
조 정 대 상	- 검경타임즈 : 『관악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 공정성에 의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3면) - 검경뉴스 : 『관악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 공정성에 의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검찰News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가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공천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검경타임즈 : 『“관악구의원 비례대표 불공정”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3면) - 검경뉴스 : 『“관악구의원 비례대표 불공정”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8일자 검찰면)
2014서울조정970, 971	(각 손해청구) 강○○ 對 KBS-2TV ⁽⁹⁷⁰⁾ , KBS미디어 ⁽⁹⁷¹⁾
조 정 대 상	VJ특공대 프로그램 『그들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밤을 잊은 사람들』 제하의 보도 (KBS-2TV 2014년 5월 16일자, KBS미디어 5월 16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국립공원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80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972~975	(각 정정 · 손해청구) 최수규 對 세계일보 ^(972 · 973) , 세계닷컴 ^(974 · 975)
조 정 대 상	(1) 『비리혐의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7월 8일자 1면, 세계닷컴 7월 8일자 정치면) (2) 『창조경제 핵심 간부가 나랏돈 빼돌린 업자와 ‘부적절한 관계’?』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7월 8일자 3면, 세계닷컴 7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인 신청인이 창업투자사 대표로부터 수시로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세계일보 『비리혐의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정치면, 세계닷컴 10월 9일자 정치면) - 세계닷컴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9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976~979	(각 정정·반론청구) ○○대학교 외 4인 對 MBC ^(976·977) , iMBC ^(978·979)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0일자, iMBC 6월 10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대학 총장인 신청인이 교원 임용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고 채용비리를 확인한 조사보고서에 대학 교수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PD수첩 프로그램 『‘○○○대 총장 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6일자, iMBC 9월 1일자 홈페이지)
2014서울조정980~983	(각 정정·손배청구) 장○○ 對 채널A
조 정 대 상	FACT10 프로그램 『[단독공개] GOD.com...유병언 인터넷사이트』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 전 회장의 망명을 돕는 해외조력자이며, 구원파 소식지에 찬양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84~987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세계일보 ^(984·985) , 세계닷컴 ^(986·987)
조 정 대 상	(1) 『비리혐의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7월 8일자 1면, 세계닷컴 7월 8일자 정치면) (2) 『창조경제 핵심 간부가 나랏돈 빼돌린 업자와 ‘부적절한 관계’?』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4년 7월 8일자 3면, 세계닷컴 7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투자기금을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로비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세계일보 『비리혐의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정치면, 세계닷컴 10월 9일자 정치면) • 세계닷컴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9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988, 989	(각 정정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머니위크 ⁽⁹⁸⁸⁾ , e머니위크 ⁽⁹⁸⁹⁾
조 정 대 상	(1) 『서민 밥값마저 떼먹으려나』 제하의 기사 (머니위크 2014년 4월 15일자 58면~59면, e머니위크 4월 16일자 업계일반면) (2) 『서민 눈물』로 달리는 ‘시민의 발’』 제하의 기사 (머니위크 2014년 4월 22일자 56면~57면, e머니위크 4월 22일자 업계일반면) (3) 『갈라지고 내려앉고... ‘장마철이 큰 걱정’』 제하의 기사 (머니위크 2014년 4월 29일자 62면~63면, e머니위크 4월 29일자 업계일반면) (4) 『[단독] ‘철피아’, 철도시설공단 또 부실공사 선정』 제하의 기사 (e머니위크 5월 30일자 업계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매교역 출입구 공사 당시 부도난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지반침체와 주택붕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철도공단, “시공사 부도로 발생한 매교역 공사 미불금 1차분 지급”』 제하의 기사 (머니위크 2014년 8월 6일자 62면, e머니위크 8월 6일 업계일반면)
2014서울조정990, 991	(각 정정청구) 박○○ 對 채널A ⁽⁹⁹⁰⁾ , 인터넷 채널A ⁽⁹⁹¹⁾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7월 4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4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소가 칼국수 고명으로 폐기용 닭을 쓰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993~1015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뉴스1코리아 ⁽⁹⁹³⁾ , 연합뉴스 ⁽⁹⁹⁴⁾ , 데일리안 ⁽⁹⁹⁵⁾ , EBN ⁽⁹⁹⁶⁾ , M이코노미NEWS ⁽⁹⁹⁷⁾ , 경제투데이 ⁽⁹⁹⁸⁾ , 인터넷 경향신문 ⁽⁹⁹⁹⁾ , 국제뉴스 ⁽¹⁰⁰⁰⁾ , 뉴스웨이 ⁽¹⁰⁰¹⁾ , 뉴시스 ⁽¹⁰⁰²⁾ , MK뉴스 ⁽¹⁰⁰³⁾ , 메디컬투데이 ⁽¹⁰⁰⁴⁾ , 인터넷 베이비뉴스 ⁽¹⁰⁰⁵⁾ , 뷰티한국 ⁽¹⁰⁰⁶⁾ , 브레이크뉴스 ⁽¹⁰⁰⁷⁾ ,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¹⁰⁰⁸⁾ , 인터넷 스포츠조선 ⁽¹⁰⁰⁹⁾ , 시사포커스신문 ⁽¹⁰¹⁰⁾ , 아시아경제닷컴 ⁽¹⁰¹¹⁾ , 인터넷 위클리오늘 ⁽¹⁰¹²⁾ , 인터넷 일간스포츠 ⁽¹⁰¹³⁾ , 쿠키뉴스 ⁽¹⁰¹⁴⁾ , 인터넷 환경일보 ⁽¹⁰¹⁵⁾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영유아 질식 유발 ‘○○○ 딸랑이’ 2000개 회수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유통/생활경제면) • 연합뉴스 : 『미국산 영유아용 ‘○○ 딸랑이’, 제품회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속보면) • 데일리안 : 『미국산 영유아용 ‘○○ 딸랑이’ 제품 회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경제면) • EBN : 『‘○○ 딸랑이’·‘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자발적 시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유통면) • M이코노미NEWS : 『‘○○ 딸랑이’, ‘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자발적 시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뉴스면) 외 1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미국 제조사의 리콜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아동용 제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외 21개 매체/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인터넷 위클리오늘/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 본문 중 신청인 회사가 해당 제품을 적극 회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수정
2014서울조정1016	(반론청구) ○○○○○○○○시민회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8일자 B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에 관한 기사를 약속대로 보도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사실적 주장이 아님)
2014서울조정1017 · 1018, 1059 · 1060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채널A ^(1017·1018) , 인터넷 채널A ^(1019·1020)
조 정 대 상	(1) 뉴스특보 프로그램 『시신 한 구에 1억』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4월 19일자, 인터넷 채널A 4월19일자 뉴스면) (2) 종합뉴스 프로그램 『피해자 가족 두 번 울리는 사기꾼』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4월 19일자, 인터넷 채널A 4월1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시신을 찾아주는 대가로 시신 한 구에 1억원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019 · 1020, 1023 · 1024	(각 정정 · 손해청구) 재단법인 ○○문화재단 對 인터넷 의정부신문
조 정 대 상	(1) 『의정부 박○○ 문화재단, 재단소유 땅 명분 내세워 법 위반하며 수락산 진입로에 장애물 설치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뉴스면) (2) 『박○○ 문화재단 소유 토지 내 총체적 불법 투성이, 시의 특혜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7일자 뉴스면) (3) 『변호사 불법명의 신탁 동원 인 · 허가 받아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현상변경 허가없이 법을 위반하여 재단소유 토지에 철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대형 바위를 등산 진입로에 설치해 논란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021, 1022	(각 정정청구) 박○○○○○ 對 채널A ⁽¹⁰²¹⁾ , 인터넷 채널A ⁽¹⁰²²⁾
조 정 대 상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7월 4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4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소가 칼국수 고명으로 폐기용 닭을 쓰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내용이 사실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025~ 1028, 1029~1032	(각 정정 ·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동아일보 ^(1025 · 1026) , 동아닷컴 ^(1027 · 1028) (각 정정 · 반론청구) KBS방송기술인협회 對 동아일보 ^(1029 · 1030) , 동아닷컴 ^(1031 · 1032)
조 정 대 상	『1급 이상 10명중 6명꼴 무보직... 고액연봉 5년새 10%P 급증』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0일자 17면, 동아닷컴 5월 30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KBS 기술직 직원이 업무량은 적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8월 15일자 17면, 동아닷컴 8월 15일자 기획면)

2014서울조정1033, 1034	(각 손해청구) 박○○ 對 헤럴드경제 ⁽¹⁰³³⁾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⁰³⁴⁾
조 정 대 상	『‘퍼블리시티권’ 딜레마』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4년 7월 17일자 2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7월 1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이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고소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035 · 1036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닭을 비위생적으로 해동하여 가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보도내용이 사실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037~ 1040	(각 정정 · 손해청구) 최○○ 對 한겨레 ^(1037 · 1038) , 인터넷 한겨레 ^(1039 · 1040)
조 정 대 상	『노숙인 쫓겨 가짜환자 42% 채운 요양병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14면, 인터넷 한겨레 6월 30일자 인권복지면)
신청인 주장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노숙인을 가짜환자로 입원시켜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천 뇌요양병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9월 5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9월 5일자 인권복지면)

2014서울조정1042~ 1049	(각 반론청구) 강○○ 외 1인 對 데일리 한국 ⁽¹⁰⁴²⁾ , 미디어펜 ⁽¹⁰⁴³⁾ , 전자신문 인터넷 ⁽¹⁰⁴⁴⁾ , 조선닷컴 ⁽¹⁰⁴⁵⁾ , 티브이데일리 ⁽¹⁰⁴⁶⁾ , 더 피알 ⁽¹⁰⁴⁷⁾ , 데일리 중앙 ⁽¹⁰⁴⁸⁾ , 아시아경제닷컴 ⁽¹⁰⁴⁹⁾
조 정 대 상	• 데일리 한국 : 『“너땀에 젖어” 회원 엿 투척 도모 “축구국가대표들에게 엿을 먹이자” 황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사회면) 외 5건 • 미디어펜 : 『‘너땀에 젖어’ 악플카페 “어떤 김치X...” 일베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사회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엿투척 ‘너땀에 젖어’, ‘일베’와 연관성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네티즌핫이슈면) • 조선닷컴 : 『스포츠악플카페 ‘너땀에 젖어’에서 일베 용어, 아이디 발견...“아시안 게임에도 출격?”』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연예면) • 티브이데일리 : 『‘너땀에 젖어’ 카페 회원수 급증, 게시판 살펴보니...일베 유입?』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문화/사회면) • 더 피알 : 『국가대표팀 엿세례 논란 “일베 소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온라인 나우면) • 데일리 중앙 : 『너땀에 젖어 커뮤니티... 일베 관련 있나? “한국팀 엿 먹으라니”』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생활/문화면) • 아시아경제닷컴 : 『엿 투척 ‘너땀에 젖어’ 악플 카페 표방 도널어 ‘제 2의 일베’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네티즌핫이슈면)
신청인 주장	축구국가대표에게 엿을 던진 회원이 속한 모 인터넷 카페가 일베와 연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보도제재)
이 행 결 과	• 데일리 한국 : 『[반론보도문] ‘너땀에 젖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7일자 사회면) • 미디어펜 : 『‘너땀에 젖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락&락면) • 전자신문 인터넷 : 『[반론보도] ‘너땀에 젖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라이프면) • 조선닷컴 : 『[반론보도문] ‘너땀에 젖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사회면) • 티브이데일리 : 『[반론보도문] ‘너땀에 젖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문화/사회면) • 더 피알 : 『‘너 땀에 젖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오피니언면) • 데일리 중앙 : 『[반론보도문] ‘너땀에 젖어’ 카페 “일베와 연관없다”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생활/문화면) • 아시아경제닷컴 : 『‘너땀에 젖어’ 카페 “일베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스포츠면)

2014서울조정1050	(정정청구) 권○○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권○○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인 신청인이 후보등록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수십억 대 재산에 대해 축소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명백한 오보이므로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051~ 1054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조리원 對 뉴스메이커 ^(1051·1052) , 인터넷 뉴스메이커 ^(1053·1054)
조 정 대 상	『좋은 산후관리는 여성의 평생건강을 좌우한다』 제하의 기사 (뉴스메이커 2014년 6월 3일자 130면~131면, 인터넷 뉴스메이커 6월 3일자 경제 CEO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모 그룹과 관계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산후조리원 ○’은 (주)○○그룹 임○○ 대표와 무관합니다』 제하의 기사 (뉴스메이커 2014년 9월 1일자 170면, 인터넷 뉴스메이커 8월 1일자 경제 CEO면)
2014서울조정1056· 1057	(각 손배청구) 배○○ 對 SBS-TV ⁽¹⁰⁵⁶⁾ , SBS 콘텐츠허브 ⁽¹⁰⁵⁷⁾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입석금지 첫날...버스증편, 계획 못 미쳐』 제하의 보도 (SBS-TV 2014년 7월 16일자, SBS 콘텐츠허브 7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운행 금지 첫날 동정을 보도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손해배상 결정액이 적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촬영 당시 신청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2014서울조정1061 · 1062, 1072 · 1073	(각 정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JTBC ^(1061 · 1062) , 인터넷 JTBC ^(1072 · 1073)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첫 시신 발견 “언딘이 한 것으로…” 인양 조작했나』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8일자, 인터넷 JTBC 4월 28일자 뉴스면) (2) 뉴스9 프로그램 『민간 잠수사 “기상 탓? 언딘, 의도적으로 구조 지연”』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8일자, 인터넷 JTBC 4월 28일자 뉴스면) (3) 뉴스9 프로그램 『“윗선 난처해지니 인양 말라고 해” 증언…언딘 측 부인』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8일자, 인터넷 JTBC 4월 28일자 뉴스면) (4) 뉴스9 프로그램 『“시신 첫 발견, 민간 잠수사가 맞다” 언딘 일부 시인』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9일자, 인터넷 JTBC 4월 29일자 뉴스면) (5) 뉴스9 프로그램 『강○○ 잠수부 “언딘 김 이사가 재차 양보 요청”』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4월 29일자, 인터넷 JTBC 4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구조작업시 신청인이 해경과 구조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잠수사들에게 시신 인양 중단을 요구하거나 구조작업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주식회사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9월 16일자, 인터넷 JTBC 9월 16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063, 1064	(각 정정청구) ○○○○○○협동조합 對 채널A ⁽¹⁰⁶³⁾ , 인터넷 채널A ⁽¹⁰⁶⁴⁾
조 정 대 상	• 채널A :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자죽염, 명품 죽염인가?』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6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7일자 홈페이지) • 인터넷 채널A : 『자죽빛 명품 소금 ‘자죽염’의 비밀…먹거리 X파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6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자죽염에 대나무 숯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숯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자죽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채널 A 2014년 9월 3일자 홈페이지)

2014서울조정1074~1077	(각 정정·손배청구) ○○○○○장로회 ○○교회 對 프레시안 ^(1074·1075) , 당당뉴스 ^(1076·1077)
조 정 대 상	• 프레시안 : 『개신교에서 암약하는 사채업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9일자 뉴스면) • 당당뉴스 : (1) 『○○교회 수석장로 자살-“진상규명” 대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2일자 교계면) (2) 『개신교계에暗躍하는 사채업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8일자 칼럼면) (3) 『○○교회 김○○ 목사, 내부단속 강화』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재정장로가 비자금을 관리·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삭제 외 동일한 기사의 배포 또는 게재 금지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078·1079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무너진 시력교정의 꿈』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안내렌즈 삽입술의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약속)
2014서울조정1080~1083	(각 정정·반론청구) 고○○ 외 1인 對 한경비즈니스 ^(1080·1081) , 인터넷 한경비즈니스 ^(1082·1083)
조 정 대 상	『‘잇단 고소’ 유명 교육 기업 內 갈등 진실은』 제하의 기사 (한경비즈니스 2014년 6월 11일자 44면~45면, 인터넷 한경비즈니스 6월 17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인과 진행중인 이혼소송 및 재산분쟁 사유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돌아오길 바란다면 애초 내몰지 않았을 것”』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경비즈니스 2014년 9월 12일자 비즈니스 포커스면)

2014서울조정1084·1085	(정정·손배청구) 사단법인 ○○○○○○협회 對 뉴시스헬스
조 정 대 상	『○협-現 치과 의사 논쟁중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심장 및 폐 질환, 암 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핫이슈면)』
신청인 주장	투바디 임플란트 시술이 암발생을 높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이 행 결 과	『“투바디임플란트 유해성” 관련 반론 및 유감표명』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TodayNews면)
2014서울조정1098	(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 對 SBS-TV
조 정 대 상	(1) 8시뉴스 프로그램 『범죄 악용 ‘동물마취제’...묻지마 판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4일자) (2)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범죄 악용 ‘동물마취제’...묻지마 판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5일자) (3) 나이트라인 프로그램 『범죄 악용 ‘동물마취제’..묻지마 판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수 의사 처방없이 아세프로마진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마취제를 구입할 수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동물용 마취제 묻지마 판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SBS-TV2014년 8월 13일자, SBS콘텐츠허브 8월 13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098~1116	(각 추후·손배청구) 박○○ 對 중앙일보 ^(1098·1099) , 내일신문 ^(1101·1102) , 뉴스1 ^(1103·1104) , 코리아 ^(1103·1104) , 동아닷컴 ^(1105·1106) , e머니투데이 ^(1107·1108) , 인터넷 경향신문 ^(1109·1110) , 인터넷 MBN ^(1111·1112) , SBS콘텐츠허브 ^(1113·1114) , 인터넷 YTN ^(1115·1116)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같이 살려다 같이 망한 악어와 악어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14면) • 내일신문 : 『마약사범 수사 빠져나가게 도운 경찰 영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21면) • 뉴스1코리아 : 『검찰, 마약사범 수사 방해한 경찰관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검찰, 마약사범 수사 빠져나가게 도운 경찰 영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劍, 마약사범 ‘머리카락 바꿔치기’ 경찰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사회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경찰공무원인 신청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동아닷컴⁽¹¹⁰⁵⁾, 인터넷 경향신문⁽¹¹⁰⁹⁾, 인터넷 MBN⁽¹¹¹¹⁾/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 각 조정불성립결정 (중앙일보, 내일신문, 뉴스1코리아, 동아닷컴⁽¹¹⁰⁶⁾, e머니투데이, 인터넷 경향신문⁽¹¹¹⁰⁾, 인터넷 MBN⁽¹¹¹²⁾, SBS콘텐츠허브, 인터넷 YTN)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署 박모 마약팀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署 박모 마약팀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署 박 모 마약팀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17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신문지 회장’ ○○○○ 강○○, 항공사 인수는 ‘정계진출’ 포석?』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정계진출을 위해 저가항공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118 · 1119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장성민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씨 미행 구원파 경찰 A모씨』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구원파 신도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방송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120	(손배청구) 황○○ 외 2인 對 홈앤쇼핑
조 정 대 상	세부여행 프로그램 (2014년 7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동의없이 여행상품 방송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약속)

2014서울조정1121·1122	(각 정정청구) 금융위원회 對 경향신문 ⁽¹¹²¹⁾ , 인터넷 경향신문 ⁽¹¹²²⁾
조 정 대 상	(1) 『“공인인증서 탓에 중국서 ‘천송이 코트’ 못산다”는 대통령 말…사실이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1면) (2) 『“천송이 코트” 잘못된 지시에 금융당국 ‘헛발질’』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2면) (3) 『위법이라며 눈감고, 대통령 발언 오류 직언도 안해 ‘천송이 코트’ 논란 키운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0일자 2면) (4) 『“인터넷 쇼핑물 해외 판매는 불법”…뜬금없는 ‘천송이 유권해석’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6면) (5) 『금융위, 대통령에 직언 대신 ‘페이퍼 정책’만 양산』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천송이 코트’ 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제대로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123·1124	(정정·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VIP 고객 유치하려 성매매 알선도』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성매매 알선 의혹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카지노 전경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라인 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법 마케팅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2일자)
2014서울조정1125~1132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1125·1126) , 아시아경제닷컴 ^(1127·1128) , 이데일리 ^(1129·1130) , 조선닷컴 ^(1131·1132)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구원파 이○○, 유병언 도피조력자와 연락』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구원파 대변인, 아들 휴대폰으로 유병언과 연락 주고 받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정치·사회면) • 이데일리 : 『“유병언 숨기기” 구원파 이○○, 도피 조력자와 연락』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1) 『이○○ 구원파 대변인, 유병언 조력자와 수시로 전화통화 해』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2) 『이○○ 구원파 대변인, 유병언 일가 도피 수행원과 수시로 전화연락』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세칭 구원파 교회의 임시대변인인 신청인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정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 이데일리 : 『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30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33~1136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한국일보 ^(1133·1134) , 한국일보 ^(1135·1136)
조 정 대 상	『한국○○협회 ○○시지부 ‘갑질’ 횡포』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7월 18일자 B13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 무용계의 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국○○협회 ○○시지부 횡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8월 20일자 B1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37~1143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문화방송 對 아시아경제닷컴 ^(1137·1138)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메트로 ^(1140·1141) (정정청구) 이데일리 ⁽¹¹³⁹⁾ , 전자신문 인터넷 ^(1142·1143)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닷컴 : 『지상파의 모바일TV ‘발목잡기’…MBC 영상 모든 콘텐츠 유료화』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6일자 통신/인터넷면) • 이데일리 : 『월드컵으로 옮겨 탄 ‘지상파 재송신’ 분쟁』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IT·과학면) • 인터넷 메트로 : 『지상파 ‘갑의 횡포’…모바일 IPTV, 내달부터 VOD 유료화』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방송/통신면) • 전자신문 인터넷 : (1)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 부당하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오피니언면) (2) 『월드컵 블랙아웃 파장…모바일TV 가입자 350만명 한국경기 못 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5일자 통신방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모바일 IPTV 업계에 무료로 제공하던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유료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전자신문 인터넷/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메트로/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이데일리/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아시아경제닷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지상파의 모바일TV 발목잡기... MBC영상 모든 콘텐츠 유료화』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통신/인터넷면) - 인터넷 메트로 : 『[정정보도문] 지상파 '갑의 횡포' 모바일 IPTV 내달부터 VOD 유료화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방송/통신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월드컵 블랙아웃 파장”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8일자 통신방송면)
2014서울조정1144, 1158	(각 정정청구) ○○미술관 對 퍼블릭아트
조 정 대 상	『○○미술관의 불안』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일자 43면~59면)
신청인 주장	신청기관의 대표가 작품 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특정 화랑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145	(정정청구) 오○○ 對 수도권의회신문
조 정 대 상	『경기북부 교육자 및 교장 부동산 투기 앞장』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4일자 경제/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장인 신청인이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교육청 조사결과 적법한 거래임이 확인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146 · 1147	(정정 · 반론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뉴포커스
조 정 대 상	『남북하나재단 정옥임 이사장, 탈북민 관련 사이트들 악성 글들에 고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 이사장이 특정 탈북자를 표적삼아 고소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4서울조정1148	(정정청구) 통합진보당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대책회의』 제하의 사진 (2014년 8월 13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 모습을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책회의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2014서울조정1149, 1150	(각 정정청구) 김재원 對 한겨레 ⁽¹¹⁴⁹⁾ , 인터넷 한겨레 ⁽¹¹⁵⁰⁾
조 정 대 상	『특별법 담판 전 여야 40분간 고성』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8일자 3면, 인터넷 한겨레 8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신청인이 야당의 세월호 관련 특별법안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3일자 6면)
2014서울조정1151~1155	(각 정정청구) 문화재○○○○○ 對 인터넷 국방일보 ⁽¹¹⁵¹⁾ , 인터넷 문화일보 ⁽¹¹⁵²⁾ , 인터넷 중앙일보 ⁽¹¹⁵³⁾ , 인터넷 경향신문 ⁽¹¹⁵⁴⁾ , 세계닷컴 ⁽¹¹⁵⁵⁾
조 정 대 상	- 인터넷 국방일보 : 『대한제국 국새반환, 단초 잡은 참군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문화일보 : 『오바마 방한때 국새 반환 결정적 단초 제공 ... 석○○ 일병』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인물면) - 인터넷 중앙일보 : 『대한제국 국새 환수 일등공신, 석○○ 일병』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문화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대한제국 국새 환수 일등공신, 석○○ 일병』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문화면) - 세계닷컴 『대한제국 국새 반환, 육군 일병 노력이 결정적 역할』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 국새를 반환받은 것과 관련해 국군 모 일병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국방일보, 인터넷 경향신문, 세계닷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인터넷 문화일보,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156, 1157	(각 반론청구) 지○○ 외 1인 對 TV조선 ⁽¹¹⁵⁶⁾ , 인터넷 TV조선 ⁽¹¹⁵⁷⁾
조 정 대 상	뉴스쇼 판 프로그램 『○○사단 선임 가혹행위에 일병 자살』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4년 8월 7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가혹행위로 모사단 일병이 자살했으며, 신청인의 가족이 유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159, 1160, 1167~1186, 1197~1220, 1206~1212, 1215~1225, 1228, 1230, 1231, 1242~1244	(각 손해청구) 권○○ ⁽¹¹⁵⁹⁾ , 권○○ ⁽¹¹⁶⁰⁾ , 김○○ ⁽¹¹⁶⁹⁾ , 목○○ ⁽¹¹⁷⁰⁾ , 박○○ ⁽¹¹⁷¹⁾ , 심○○ ⁽¹¹⁷⁶⁾ , 강○○ ⁽¹¹⁹⁷⁾ , 김○○ ⁽¹²⁰⁸⁾ , 박○○ ⁽¹²¹⁵⁾ , 안○○ ⁽¹²¹⁹⁾ 對 뉴스1코리아 김○○ ⁽¹¹⁶⁷⁾ , 김○○ ⁽¹²⁰⁹⁾ , 서○○ ⁽¹²¹⁶⁾ , 이○○ ⁽¹²²⁴⁾ 조○○ ⁽¹²³⁰⁾ 對 MBN 김○○ ⁽¹¹⁶⁸⁾ , 김○○ ⁽¹²¹⁰⁾ , 서○○ ⁽¹²¹⁷⁾ , 이○○ ⁽¹²²⁵⁾ 對 인터넷 MBN, 성○○ 對 JTBC ⁽¹¹⁷²⁾ , 성○○ ⁽¹¹⁷³⁾ , 서○○ ⁽¹²¹⁸⁾ 對 연합뉴스 TV 성○○ 對 MBC ⁽¹¹⁷⁴⁾ , iMBC ⁽¹¹⁷⁵⁾ 양○○ 對 오마이뉴스 ⁽¹¹⁷⁷⁾ 오○○ 對 아주뉴스 ⁽¹¹⁷⁸⁾ , 뉴스핌 ⁽¹¹⁷⁹⁾ , 이○○ 對 인터넷 서울신문 ⁽¹¹⁸¹⁾ 임○○ ⁽¹¹⁸²⁾ , 임○○ ⁽¹¹⁸⁵⁾ , 오○○ ⁽¹¹⁸⁰⁾ , 조○○ ⁽¹²⁴⁴⁾ 對 뉴시스 임○○ ⁽¹¹⁸³⁾ , 임○○ ⁽¹¹⁸⁴⁾ , 강○○ ⁽¹²⁰⁰⁾ 데일리안 최○○ ⁽¹¹⁸⁶⁾ , 강○○ ⁽¹¹⁹⁸⁾ , 김○○ ⁽¹²⁰⁸⁾ 對 아시아경제 닷컴 강○○ 對 민중의소리 ⁽¹¹⁹⁹⁾ 공○○ ⁽¹²⁰⁶⁾ , 김○○ ⁽¹²¹²⁾ , 이○○ ⁽¹²²²⁾ , 조○○ ⁽¹²⁴²⁾ 對 YTN 김○○ 對 아주뉴스 ⁽¹²¹¹⁾ 오○○ 對 TV조선 ⁽¹²²⁰⁾ , 인터넷 TV조선 ⁽¹²²¹⁾ 이○○ ⁽¹²²³⁾ , 정○○ ⁽¹²²⁸⁾ 對 오마이뉴스 최○○ 對 환경TV ⁽¹²³¹⁾ 조○○ ⁽¹²⁴³⁾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는 구원파』 제하의 사진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 MBN : 8시뉴스 프로그램 『첫 내부 공개…논·발만 보여줬다』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8일자, 인터넷 MBN 5월 18일자 사회면 사진) • JTBC : 뉴스특보 프로그램 『“마녀사냥 하지말라” 항의집회』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4월 29일자) • 연합뉴스 TV : 뉴스특보 프로그램 『금수원 압수수색 이틀째…유 씨 행방 단서 찾을까』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6월 12일자)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유병언 16일 소환 금수원 긴장』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3일자, iMBC 5월 13일자 뉴스면) • 오마이뉴스 : 『구원파, 인천지검 앞 항의집회』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6일자 사회면) 외 25건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종교탄압중단 요구집회 등 행사에 참여한 신청인들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집회 시위 현장에 관한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2014서울조정1161~ 1166	(각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MBN ⁽¹¹⁶¹⁾ , 노컷뉴스 ⁽¹¹⁶²⁾ , 뉴스1코리아 ⁽¹¹⁶³⁾ , 마이데일리 ⁽¹¹⁶⁴⁾ , 스타뉴스 ⁽¹¹⁶⁵⁾ , 인터넷 스포츠조선 ⁽¹¹⁶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MBN : 『전양자 검찰 출두해 “진실을 말하겠다”』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배우 ‘전양자’ 검찰 출두』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노컷 V면) • 뉴스1코리아 : 『검찰 출두하는 탤런트 전양자』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외 1건 • 마이데일리 : 『전양자, ‘검찰 출두 합니다’』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포토면) • 스타뉴스 : 『전양자, 경호 받으며 인천지검 출두』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포토면) • 인터넷 스포츠조선 : 『억울해하는 전양자 ‘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탤런트 전양자씨가 검찰에 출두할 당시 동행하던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70만원, 사진 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동의 후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187~ 119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동아일보 ^(1187·1188) , 동아닷컴 ^(1189·1190) , 네이버 ^(1191·1192) , 다음 ^(1193·1194)
조 정 대 상	『첫 휴가 때 복귀 않겠다는 아들 ... 등 떠민 내가 죄인이요』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4일자 A12면, 동아닷컴·네이버·다음 8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2009년에 제대한 신청인이 군복무 시절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軍 가혹행위로 정신이상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네이버·다음 9월 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95, 1196	(각 손해청구) JOOOOO 對 MBN ⁽¹¹⁹⁵⁾ , 인터넷 MBN ⁽¹¹⁹⁶⁾
조 정 대 상	일요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구원파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 ... 유병언 무죄입증 목적?』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6월 15일자, 인터넷 MBN 6월 15일자 사회면 사진)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약속)
이 행 결 과	금액 지급 (5만원)

2014서울조정1201~1205	(각 손해청구) 고○○ 對 JTBC ⁽¹²⁰¹⁾ , 인터넷 JTBC ⁽¹²⁰²⁾ , KBS-1TV ⁽¹²⁰³⁾ , YTN ⁽¹²⁰⁴⁾ , 인터넷 YTN ⁽¹²⁰⁵⁾
조 정 대 상	• JTBC : 9시뉴스 프로그램 『유병언 일가 수사』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5월 13일자, 인터넷 JTBC 5월 13일자 사회면 사진) • KBS-1TV : 뉴스라인 프로그램 『검찰, 유대균씨 체포 실패』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5월 13일자) • YTN :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유 회장 소환 통보 전 대균씨 신병 확보 방침』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5월 13일자, 인터넷 YTN 5월 13일자 사회면 사진)
신청인 주장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소재지 추적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213, 1214	(각 손해청구) 김○○ 對 MBN ⁽¹²¹³⁾ , 인터넷 MBN ⁽¹²¹⁴⁾
조 정 대 상	일요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구원파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 … 유병언 무죄입증 목적?』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6월 15일자, 인터넷 MBN 6월 15일자 사회면 사진)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226	(손배청구) 이○○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검·경 “금수원 진입작전” 어떻게 진행되나』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6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의 금수원 진입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공개집회 현장에서의 보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227	(손배청구) 장○○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검찰, 유병언 장남 집 강제진입』 제하의 사진 (2014년 5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소재지 추적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229	(손배청구) 이○○ 對 MBN
조 정 대 상	일요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구원파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 … 유병언 무죄입증 목적?』 제하의 보도 중 영상 (MBN 2014년 6월 15일자, 인터넷 MBN 6월 15일자 사회면 사진)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232~1236, 1248~1241	(각 정정·손배청구) 대한○○학회 외 5인 對 국민일보 ^(1232·1233) , 쿠키뉴스 ^(1234·1235)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對 국민일보 ^(1238·1239) , 쿠키뉴스 ^(1240·1241) (정정청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對 쿠키뉴스 ⁽¹²³⁶⁾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 : 『현직 치과궤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癌유발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H01면, 쿠키뉴스 7월 15일자 건강생활면) • 쿠키뉴스 : 『치아 임플란트 하점 들춰내기 싫은 ‘dentist’』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건강생활면) • 쿠키뉴스 : 『치과전문의, 배출 중단 위기 맞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투바디 임플란트 시술의 부작용으로 치주염과 구취 및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국민일보^(1238·1239), 쿠키뉴스^(1236, 1240·1241)/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국민일보^(1232·1233), 쿠키뉴스^(1234·1235)/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국민일보 : 『[암과의 동행]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H05면, 쿠키뉴스 9월 5일자 건강생활면) • 쿠키뉴스 : 『“치과의사 레지던트 교육”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237	(손배청구) 박○○ 對 TVN
조 정 대 상	두 남자의 특급찬양 프로그램 (2014년 8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이 실험대상으로 촬영된 영상이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279·1280	(정정·손배청구) A○○○○○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인도여행 카페 둘러싼 무더기 소송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도인인 신청인이 성폭력 기소 사실을 숨긴 채 한국 여성과 결혼했으며, 한국 체류 기간연장을 위해 해당 사실을 폭로한 인도여행카페 운영자들을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도인 A씨, 국내 체류 위해 고소제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281~1312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뉴스1코리아 ⁽¹²⁸¹⁾ , 연합뉴스 ⁽¹²⁸²⁾ , KBS미디어 ⁽¹²⁸³⁾ , iMBC ⁽¹²⁸⁴⁾ , SBS콘텐츠허브 ⁽¹²⁸⁵⁾ , 인터넷 TBS ⁽¹²⁸⁶⁾ , 인터넷 연합뉴스TV ⁽¹²⁸⁷⁾ , 인터넷 YTN ⁽¹²⁸⁸⁾ , 동아닷컴 ⁽¹²⁸⁹⁾ , 인터넷 경향신문 ⁽¹²⁹⁰⁾ , 인터넷 일간스포츠 ⁽¹²⁹¹⁾ , 그린포스트 코리아 ⁽¹²⁹²⁾ , 뉴스웨이 ⁽¹²⁹³⁾ , 뉴스핌 ⁽¹²⁹⁴⁾ , 데일리 그리드 ⁽¹²⁹⁵⁾ , 데일리 서울파이낸스 ⁽¹²⁹⁶⁾ , 데일리인 ⁽¹²⁹⁷⁾ , 데일리팜 ⁽¹²⁹⁸⁾ , 메디컬투데이 ⁽¹²⁹⁹⁾ , 인터넷 베이비뉴스 ⁽¹³⁰⁰⁾ , 아주뉴스 ⁽¹³⁰¹⁾ , 오가닉라이프신문 ⁽¹³⁰²⁾ , 인터넷 위클리오늘 ⁽¹³⁰³⁾ , 이데일리 ⁽¹³⁰⁴⁾ , 이투데이 ⁽¹³⁰⁵⁾ , 인터넷 약사공론 ⁽¹³⁰⁶⁾ , 조세일보 ⁽¹³⁰⁷⁾ , 초이스경제 ⁽¹³⁰⁸⁾ , 헬스조선 ⁽¹³⁰⁹⁾ , 러브즈뷰티 ⁽¹³¹⁰⁾ , M이코노미NEWS ⁽¹³¹¹⁾ , MK패션 ⁽¹³¹²⁾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키크게 한다고? 허위·과대광고 제품 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한국○○○○○·굿○○, 키 크는 약 거짓 광고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 2개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뉴스면) • iMBC : 『일반식품을 키크는 약으로 허위·광고한 식품업체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뉴스면) • SBS콘텐츠허브 :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뉴스면) 외 27건
신청인 주장	OEM 제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주문제작한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TBS/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연합뉴스, SBS콘텐츠허브, 동아닷컴, 그린포스트코리아, 뉴스핌, 데일리 그리드, 데일리 서울파이낸스, 데일리인, 메디컬투데이, 인터넷 베이비뉴스, 아주뉴스, 이데일리, 이투데이, 인터넷 약사공론, 조세일보, 초이스경제, 헬스조선, 러브즈 뷰티, M이코노미NEWS, MK패션/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KBS미디어, 인터넷 연합뉴스 TV, 인터넷 YTN, 인터넷 일간스포츠, 뉴스웨이, 데일리팜, 오가닉 라이프신문, 인터넷 위클리오늘/사유 - 기사삭제) • 취하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중재합의) • 취하 (iMBC/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SBS콘텐츠허브 :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뉴스면) • 인터넷 TBS :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7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아동 키 성장 제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 그린포스트코리아 : 『‘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돕는다” 허위광고 제품 적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건강문화면) 외 16건
2014서울조정1313, 3607·3608	(정정, 정정·손배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뉴포커스 ^(1313, 3607·3608)
조 정 대 상	(1) 『탈북단체들, 남북하나재단 명칭 변경에 집단적 항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정치면) (2) 『정○○, 탈북자단체장들에게 거짓말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의도적으로 남북하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남북하나재단 명칭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14~1318	(각 정정청구) 이○○ 對 에이블뉴스 ⁽¹³¹⁴⁾ , 디지털 함께걸음 ⁽¹³¹⁵⁾ , 세계닷컴 ⁽¹³¹⁶⁾ , 인터넷 YTN ⁽¹³¹⁷⁾ , SBS-R ⁽¹³¹⁸⁾
조 정 대 상	• 에이블 뉴스 :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에 금품 갈취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 디지털 함께걸음 : 『14년간 지적 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식당 주인 덜미 잡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뉴스 및 이벤트면) • 세계닷컴 : 『장애인 거둔 천사 알고보니 14년 착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10년 넘게 장애인 월급과 수당 착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사회면) • SBS-R : 한수진의 SBS전망대 프로그램 (2014년 8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에이블뉴스, 디지털 함께걸음, 인터넷 YTN, SBS-R/내용 : 정정보도) • 취하 (세계닷컴/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에이블 뉴스 :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식당 주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6일자 사회면) • 디지털 함께걸음 :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식당 주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6일자 뉴스 및 이벤트면) • 인터넷 YTN : 『‘10년 넘게 장애인 월급과 수당 착취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 SBS-R : 한수진의 SBS전망대 프로그램 (2014년 9월 12일자)
2014서울조정1319, 1320	(각 정정청구) 윤○○ 한국일보 ⁽¹³¹⁹⁾ , 인터넷 한국일보 ⁽¹³²⁰⁾
조 정 대 상	『음대교수가 교비 착복하고 작품집 강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8월 22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 모 음대 교수인 신청인이 교비를 착복하고 성적 평가에서도 전횡을 일삼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음대 교수 착복”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9월 10일자 6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1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21 · 1322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 對 투데이신문
조 정 대 상	『[원조 논란①] 요거프레소 ○○딸기, 디자인 특허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판매 중인 인기메뉴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메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회사 제품 익명 처리

2014서울조정1323, 1324 · 1422	(정정, 정정 · 손해청구) 신○○ 對 구리남양주넷
조 정 대 상	(1) 『남양주, 황당한 P의원...아동에게 감기약 대신...식초처방?』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사회면) (2) 『남양주시, 금곡동 P의원 B군에게 처방한 감기약은 100% 식초로 “판명”』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고열과 감기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에게 식초 성분이 의심되는 약을 처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고열과 감기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에게 처방한 감기약이 식초로 판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하 ⁽¹³²³⁾ (사유 : 조정신청기간 도과) • 조정성립 ^(1324 · 1422)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남양주시, 금곡동 P의원, 식초 처방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25	(정정청구) 주식회사 한국○○○○○협회 對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천차만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최대 9배 차이』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정책/보건의료면)
신청인 주장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326, 1327	(각 정정청구) 권○○ 對 한겨레 ⁽¹³²⁶⁾ , 인터넷 한겨레 ⁽¹³²⁷⁾
조 정 대 상	『한중연 근현대사 사진집 제작에 ‘친일 · 독재 미화’ 학자 대거 참여』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5일자 6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학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친일 · 독재 미화 학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28	(정정청구) 신○○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존재감 - 골 없어도 특별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7일자 33면)
신청인 주장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1329 · 1330	(반론·손배청구) 한국○○은행 노동조합 對 더벨
조 정 대 상	(1) 『○○-○○銀, ‘한지붕 두가족’ 조기통합 필요한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콘텐츠면) (2) 『○○은행 인수 2년, 시너지효과 ‘미미’...비용만 늘어』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콘텐츠면) (3) 『○○은행, ‘론스타 무임승차’...외환경쟁력도 위태』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3일자 콘텐츠면) (4) 『‘○○+○○’ 사례보면 답이 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3일자 콘텐츠면) (5) 『○○-○○銀 ‘감성통합’이 관건』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4일자 콘텐츠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의 반대로 ○○은행과 ○○은행간 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銀 ‘론스타 무임승차’ ... 외환경쟁력도 위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은행 노조, 변해야 산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2014서울조정1331~ 1346	(각 정정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온라인 중앙일보 ⁽¹³³¹⁾ , 노컷뉴스 ⁽¹³³²⁾ , 인터넷 경향신문 ⁽¹³³³⁾ , 시사브리핑 ⁽¹³³⁴⁾ , 아주뉴스 ⁽¹³³⁵⁾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¹³³⁶⁾ , 유앤엔 ⁽¹³³⁷⁾ , KBS미디어 ⁽¹³³⁸⁾ , 매경닷컴 ⁽¹³³⁹⁾ , 오마이뉴스 ⁽¹³⁴⁰⁾ , e머니투데이 ⁽¹³⁴¹⁾ , 인터넷 서울신문 ⁽¹³⁴²⁾ , 세계닷컴 ⁽¹³⁴³⁾ , 연합뉴스 ⁽¹³⁴⁴⁾ , 조선닷컴 ⁽¹³⁴⁵⁾ , 대한뉴스투데이 ⁽¹³⁴⁶⁾
조 정 대 상	• 온라인 중앙일보 : 『비리 전력 김○○씨 ○○대 총장 자격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사설) • 노컷뉴스 : 『교육부, 사학비리 관련자의 대학 복귀 막아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설) • 인터넷 경향신문 : 『○○대 김○○ 총장 복귀, 교육부가 방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9일자 사회면) • 시사브리핑 : 『金○○ ○○대총장, 정○○교수 징계위 회부...공금횡령 전력의 前이사장이 다시 총장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9일자 뉴스면) • 아주뉴스 : 『교육부, ○○대 김○○ 총장 정이사 승인 거부·해임 요구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외 11건

신청인 주장	전 ○○대 이사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 취하 (대한뉴스투데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온라인 중앙일보 : 『○○대 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대 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일자 칼럼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정정보도문]○○대 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오피니언면) • 시사브리핑 : 『○○대 김○○ 총장 보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교육면) • 아주뉴스 : 『김○○씨 ○○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외 10건
2014서울조정1347 · 1348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 對 위키트리
조 정 대 상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4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신문사가 발행하는 메트로 신문이 휴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미디어면)
2014서울조정1349~ 1356	(각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MBN ^(1349 · 1350) , 인터넷 MBN ^(1351 · 1352) , 채널A ^(1353 · 1354) , 인터넷 채널A ^(1355 · 1356)
조 정 대 상	• MBN : 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검찰, 금수원 전격 진입! 유병언 체포 급물살 - 박○○, 정○○, 이○○』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1일자, 인터넷 MBN 5월 21일자 뉴스면) • 채널A : 직언직설 프로그램 세월호 관련 보도 (2014년 5월 22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21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세칭 ‘구원파’ 임시대변인인 신청인이 과거 구원파 신도였던 정○○ 목사 등을 미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357~1359	(각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연대 외 1인 對 대한뉴스투데이 ⁽¹³⁵⁷⁾ , 아시아일보 ⁽¹³⁵⁸⁾ , 인터넷 아시아일보 ⁽¹³⁵⁹⁾
조 정 대 상	- 대한뉴스투데이 : 『인천 인터넷 기자단체 대한민국 인물 시상식 “자격시비”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4일자 사회면) - 대한뉴스투데이 : 『대한민국인물시상 논란시비 경찰 철저히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아시아일보 : 『대한민국인물시상 공신력 결여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전과 경력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360, 1361	(각 정정청구) 한국○○○○○○○○전문학교 對 주간한국 ⁽¹³⁶⁰⁾ , 데일리한국 ⁽¹³⁶¹⁾
조 정 대 상	- 주간한국 : 『[본지단독] 한국○○○○○○○○전문학교 허위·과장광고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경제면) - 데일리한국 : 『[단독] A직업전문학교 허위·과장광고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6일자 연재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신입생을 모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주간한국/사유 : 자진취하) - 취하 (데일리한국/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허위·과장 광고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4서울조정1362~1367	(각 손해청구) 오○○ 對 KBS-1TV ⁽¹³⁶²⁾ , KBS미디어 ⁽¹³⁶³⁾ , JTBC ⁽¹³⁶⁴⁾ , 인터넷 JTBC ⁽¹³⁶⁵⁾ , MBN ⁽¹³⁶⁶⁾ , 인터넷 MBN ⁽¹³⁶⁷⁾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 5프로그램 『유대균-박수경 첫 재판 … 대체로 혐의 인정』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8월 27일자, KBS미디어 8월 27일자 사회면) 외 2건 - JTBC : 뉴스현장 프로그램 『유대균 재판 관련』 속보 중 영상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JTBC 8월 27일자 사회면) - MBN : 시사마이크 프로그램 『유대균 첫 재판 … 73억 횡령 일부 부인』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MBN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회장 장남인 유대균씨 재판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손해배상 지급)

2014서울조정1368, 1369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JTBC ⁽¹³⁶⁸⁾ , 인터넷 JTBC ⁽¹³⁶⁹⁾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인재라고 고치면 공무원 다친다』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7일자, 인터넷 JTBC 8월 7일자 사회면) (2) 뉴스9 프로그램 『인재냐, 천재냐 끝나지 않은 산사태』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8일자, 인터넷 JTBC 8월 8일자 사회면) (3) 뉴스9 프로그램 『우면산 보고서 논란』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11일자, 인터넷 JTBC 8월 11일자 사회면) (4) 뉴스9 프로그램 『천재라던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 조작 논란…핵심은 강우량』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13일자, 인터넷 JTBC 8월 13일자 사회면) 외 6건
신청인 주장	서울시가 2011년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소속 공무원 면책을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반론보도] ‘우면산 산사태 보고서 조작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JTBC 2014년 10월 31일자, 인터넷 JTBC 10월 2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70, 1371	(각 반론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 ⁽¹³⁷⁰⁾ , 인터넷 한국일보 ⁽¹³⁷¹⁾
조 정 대 상	『김무성 딸 수원대 교수채용 때 기준 미달』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8월 25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지원자격 미달임에도 김무성 의원의 딸을 조교수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수원대 특혜 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9월 30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3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72	(반론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칠판 지우개 10만개 샀다며 돈 빼돌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 재단이 시설개선 요구는 묵살하고 회계부정 등을 통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학원, “칠판지우개 10만개 구입 등 비리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교육면)

2014서울조정1373·1374	(정정·반론청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탈북자지원 재단이사장이 탈북자 고소...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민족·국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 이사장이 재단 운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을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민족·국제면)
2014서울조정1375·1376	(정정·손배청구) 김한표 對 KBS 미디어
조 정 대 상	『국회의원이 유통업체 매출액 부풀리게 된 사연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통계를 왜곡해 대형마트에 비해 전통시장 매출이 부진하다고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377, 1378	(각 정정청구) 인천 웅진군청 기자단 對 대한뉴스투데이 ⁽¹³⁷⁷⁾ , 인터넷 일간투데이 ⁽¹³⁷⁸⁾
조 정 대 상	- 대한뉴스투데이 : 『웅진군청 출입기자실 타 회원사 명단 일부러 손괴』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인천플러스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인천 웅진군청 브리핑룸 타 회원사 명단 고의 파손』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사회/인천면)
신청인 주장	웅진군청에 출입하는 2개 기자단 중 하나인 신청인 기자단이 상대방 기자단의 명단을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대한뉴스투데이 : 『“웅진군청 출입기자단 명단 손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5일자 인천플러스면) - 인터넷 일간투데이 : 『“웅진군청 출입기자단 명단 손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5일자 사회/인천면)

2014서울조정1379~1382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한겨레 ^(1379·1380) , 인터넷 한겨레 ^(1381·1382)
조 정 대 상	『한중연 근현대사 사진집 제작에 ‘친일·독재 미화’ 학자 대거 참여』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5일자 6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학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친일·독재 미화 학자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10월 4일자 6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4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83·1384	(정정·손배청구) 대한○○의사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알고 하십니까? 라식·라섹 수술 부작용 그 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5일자)
신청인 주장	라식·라섹 수술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일부 안과에서 환자관리에 소홀하다고 보도해 소속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자 이의신청/신청인은 반론보도로 결정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익적인 보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408·1409, 1412~1415	(각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시사저널 ^(1408·1409) 주식회사 ○○○○○ ○○○ 對 시사저널 ^(1412·1413) , 인터넷 시사저널 ^(1414·1415)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치명적 독성물질 든 ‘아기 물티슈’ 팔리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14면~16면, 18면) • 인터넷 시사저널 『치명적 독성물질 든 ‘아기 물티슈’ 팔리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제작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 독한 물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아기 물티슈에 ‘소독용 원료’ 썼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4년 9월 15일자 문화면)
2014서울조정1410, 1411	(각 손배청구) 김○○ ⁽¹⁴¹⁰⁾ , 이○○ ⁽¹⁴¹¹⁾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실물과 다른 ‘디지털 성형’ ... 사진 없는 서류 전형 확산』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9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취업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1417, 1418	(각 손해청구) 사단법인 ○○○○합창단 對 TV조선 ⁽¹⁴¹⁷⁾ , 인터넷TV조선 ⁽¹⁴¹⁸⁾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구원파 계열사 건물 잇단 매각』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3일자) • 인터넷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다판다』에 ‘문진미디어’까지 … 핵심 계열사 줄줄이 ‘매각’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구원파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합창단의 공연포스터를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홍보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 본 방송 중 자막을 통한 유감표명/신청인의 미국 공연 및 국내 공연 총 2회 및 단신 1회, 공연안내 자막 3회 방송
이 행 결 과	뉴스쇼 판 프로그램 유감표명 자막 게재 (TV조선 2014년 10월 17일자)
2014서울조정1419, 1420	(각 정정청구) 윤○○ 對 더스쿠프 ⁽¹⁴¹⁹⁾ , 인터넷 더스쿠프 ⁽¹⁴²⁰⁾
조 정 대 상	『국정원 전 직원 “파고다 사건” 비틀었나』 제하의 기사 (더스쿠프 2014년 5월 26일자 Current Economy면, 인터넷 더스쿠프 5월 26일자 Current Economy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그룹 회장 살인에비음모 사건의 배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Current Economy면)
2014서울조정1421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채널A
조 정 대 상	『[단독]어린이 복용 금지 약 먹여 상처 없애고 구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이웃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과 관련,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423	(정정청구) ○○○○산부인과의원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부산 모 산부인과 신생아 집단 결핵』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산부인과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424, 1425	(각 정정청구) 육군본부 對 경향신문 ⁽¹⁴²⁴⁾ , 인터넷 경향신문 ⁽¹⁴²⁵⁾
조 정 대 상	(1)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8월 13일자 정치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13일자 정치면) (2)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8월 22일자 정치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육군 군 검찰이 윤모 일병 사망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9월 23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23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426~ 1429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연합뉴스 ^(1426, 1427) , 연합뉴스TV ^(1428, 1429)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부인 폭행’ 탤런트 류○○ 벌금 700만원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연예면) • 연합뉴스TV : 뉴스Y 프로그램 『‘부인 폭행’ 탤런트 류○○ 벌금 700만원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소속 유명 배우의 부인 폭행 혐의와 관련해 1심재판 결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430, 1432, 1433, 1435	(각 정정청구) 최민희 對 동아일보 ⁽¹⁴³⁰⁾ , YTN ⁽¹⁴³²⁾ , 인터넷 YTN ⁽¹⁴³³⁾ , 인터넷 국민일보 ⁽¹⁴³⁵⁾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박영선식 파격 통할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종합면) • YTN : 호준석의 뉴스인 프로그램 『새정치, 비대위원장 영입 대소동』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2일자, 인터넷 YTN 9월 12일자 정치면) • 인터넷 국민일보 : 『흔들리는 제1 야당』 품격과 금도 상실한 새정치연합 세종대왕·이순신이 나서도 갈등 수습 안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외부영입설과 관련해 의원 그룹채팅방에 당장 원내대표실로 달려가자는 문자를 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SNS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동아일보, YTN, 인터넷 YTN/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일자 5면) • YTN : 3시 뉴스 프로그램 『최민희 의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인터넷 YTN 9월 12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431, 1497, 1603, 1614, 1615	(각 손해청구) 조○○ 對 스타엔 ⁽¹⁴³¹⁾ , 한경닷컴 ⁽¹⁴⁹⁷⁾ , TV리포트 ⁽¹⁶⁰³⁾ , 전자신문 인터넷 ⁽¹⁶¹⁴⁾ , 아시아경제 닷컴 ⁽¹⁶¹⁵⁾
조 정 대 상	• 스타엔 : 『조오련 아들 조○○, 유병호와 의형제 사이 ‘동거 중 체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스타엔) • 한경닷컴 : 『‘유병언 동생’ 유병호, 박진영·조오련 아들과 관계가 … ‘발각’』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뉴스면) • TV리포트 : 『‘박진영 장인’ 유병호, 故 조오련 아들과 생활하다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일자 연예면) • 전자신문 인터넷 : 『조오련 아들 유병언 동생과 의형제 맺어 …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뉴스면) • 아시아경제 닷컴 : 『조오련 아들 유병언 동생 유병호와 동거 … 유씨 일가와 ‘의형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의 친동생과 의형제라고 허위보도하고 동의없이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각 250만원 (한경닷컴, TV리포트), 180만원 (TV리포트), 200만원 (전자신문 인터넷), 150만원 (아시아경제 닷컴), 부제소 - 동의 후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금액 지급
2014서울조정1434	(정정청구) 한국광해관리공단 對 환경미디어
조 정 대 상	『광해관리공단, 지침 무시 부당 인사 노동위 구제신청 사연』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환경신문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 인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광해관리공단, 지침무시 부당인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환경신문고면)
2014서울조정1436~1439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對 KBS-1TV ^(1436·1437) , 부산KBS-1TV ^(1438·1439)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뉴스12/뉴스라인 프로그램 『[단독]신고리 3·4호기 납품 미 업체 “부적합”… 검증 안해』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5일자) • 부산 KBS-1TV : 뉴스 9 프로그램 『신고리 3·4호기 납품 미 업체 “부적합”… 검증 안해』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신고리 원자력 3, 4호기에 사용된 케이블이 불량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440~ 1445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국제뉴스 ^(1440·1441) , DK뉴스 ^(1442·1443) , 부패방지 뉴스 ^(1444·1445)
조 정 대 상	• 국제뉴스 :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DK뉴스 :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전국면) • 부패방지뉴스 : 『도망친 여자 김엄마 김○○ 얼굴, 유병언 맹종도피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 도피에 적극 가담했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내 특정 모임을 이끌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천만원(국제뉴스), 각 5백만원(DK뉴스, 부패방지뉴스),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불명(국제뉴스), 직접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DK뉴스, 부패방지뉴스)) ※ 이의신청 후 국제뉴스와 부패방지뉴스는 각각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국제뉴스 : 『김○○씨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2일자 부산면) • 부패방지뉴스 : 『김○○씨(숙칭 김엄마) 보도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사회환경면)
2014서울조정1446	(손배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프로그램 중 신청인 관련 사진 (2014년 9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일베회원들의 광화문 시위집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 행사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447~ 1452	(각 정정·손배청구) 노○○ 對 뉴스1코리아 ^(1447·1448) , 네이버 ^(1449·1450) , 네이트 ^(1451·1452)
조 정 대 상	『40대 여교사, 여중생 제자 교통사고 낸 뒤 방치 물의』 제하의 기사 (뉴스1코리아 2014년 9월 2일자 전국면, 네이버·네이트 9월 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구호조치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뉴스1코리아, 네이버) • 취하 (네이트/사유 : 검색차단 및 댓글삭제)

2014서울조정1453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조기교육 영단어 금세 외우지만...창의성은 “뚝”』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영유아 선행학습의 무익하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며 이와 무관한 신청인 수학학원의 인터뷰를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454	(손배청구) 남○○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스트레스 풀자”...백화점에 물린 주부들』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9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명절 스트레스를 백화점 쇼핑으로 해소하는 세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1455~1457	(정정청구) 김성태 對 뉴스1코리아 ⁽¹⁴⁵⁵⁾ (정정 · 손배청구) 인터넷 미디어오늘 ^(1456 · 1457)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기사삭제 종용 김성태 의원 협박 강요 등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김성태 의원, 언론사주에게 고발장 준비해냈다 전화』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2) 『언론사주 압박 새누리 의원, 협박 업무방해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8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혹제기를 한 언론사에 기사삭제를 종용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뉴스1코리아/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조건부 보도 약속, 부제소)
이 행 결 과	『‘김성태 의원’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1코리아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458, 1495, 1496	(각 정정청구) ○○○○○○○○○○○○연구회 對 한국일보 ⁽¹⁴⁵⁸⁾ , SBS-TV ⁽¹⁴⁹⁵⁾ , SBS 콘텐츠허브 ⁽¹⁴⁹⁶⁾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일반학생이 장애학생 성추행한 대안학교서 체육 교사가 장애학생 내리쳐 뇌진탕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사회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교사가 장애학생 폭행해 “급성 뇌진탕”』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1일자, SBS 콘텐츠허브 8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한국일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SBS-TV, SBS 콘텐츠허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11월 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459 · 1460, 1507 · 1508	(각 정정 · 반론청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對 JTBC ^(1459 · 1460) , 인터넷 JTBC ^(1507 · 1508)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경주 방폐장 ‘암반조사’ 조작 의혹』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8월 29일자, 인터넷 JTBC 8월 2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경주방폐장 부지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암반건전성 수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경주 방폐장, 조작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11월 7일자, 인터넷 JTBC 11월 5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461~1494	(각 정정 · 손해청구) 채○○ 對 온라인 중앙일보^(1461 · 1462), 쿠키뉴스^(1463 · 1464), 인터넷 내일신문^(1465 · 1466), 인터넷 MBN^(1467 · 1468), 인터넷 YTN^(1469 · 1470), 뉴시스^(1471 · 1472), 아시아경제닷컴^(1473 · 1474), e머니투데이^(1475 · 1476), 뉴스1코리아^(1477 · 1478), 인터넷 서울경제^(1479 · 1480), 매경닷컴^(1481 · 1482), 인터넷 한국일보^(1483 · 1484), 동아닷컴^(1485 · 1486), 노컷뉴스^(1487 · 1488), 인터넷 법률신문^(1489 · 1490), 인터넷 한국국정일보^(1491 · 1492), 연합뉴스^(1493 · 1494)
조 정 대 상	- 온라인 중앙일보 :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위조한 판결문 증거로 제출 ‘간 부은 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내일신문 : 『세금 더 돌려받으려고 판결문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판결문 위조해 재심청구한 60대 덜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외 2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고발당할 처지라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온라인 중앙일보⁽¹⁴⁶¹⁾, 쿠키뉴스⁽¹⁴⁶³⁾, 인터넷 내일신문⁽¹⁴⁶⁵⁾, 인터넷 MBN⁽¹⁴⁶⁷⁾, 인터넷 YTN⁽¹⁴⁶⁹⁾, 뉴시스⁽¹⁴⁷¹⁾, 아시아경제 닷컴⁽¹⁴⁷³⁾, e머니투데이⁽¹⁴⁷⁵⁾, 인터넷 서울경제⁽¹⁴⁷⁹⁾, 매경닷컴⁽¹⁴⁸¹⁾, 인터넷 한국일보⁽¹⁴⁸³⁾, 동아닷컴⁽¹⁴⁸⁵⁾, 노컷뉴스⁽¹⁴⁸⁷⁾, 인터넷 법률신문⁽¹⁴⁸⁹⁾, 인터넷 한국국정일보⁽¹⁴⁹¹⁾/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각 기각 (온라인 중앙일보⁽¹⁴⁶²⁾, 쿠키뉴스⁽¹⁴⁶⁴⁾, 인터넷 내일신문⁽¹⁴⁶⁶⁾, 인터넷 MBN⁽¹⁴⁶⁸⁾, 인터넷 YTN⁽¹⁴⁷⁰⁾, 뉴시스⁽¹⁴⁷²⁾, 아시아경제 닷컴⁽¹⁴⁷⁴⁾, e머니투데이⁽¹⁴⁷⁶⁾, 뉴스1코리아^(1477·1478), 인터넷 서울경제⁽¹⁴⁸⁰⁾, 매경닷컴⁽¹⁴⁸²⁾, 인터넷 한국일보⁽¹⁴⁸⁴⁾, 동아닷컴⁽¹⁴⁸⁶⁾, 노컷뉴스⁽¹⁴⁸⁸⁾, 인터넷 법률신문⁽¹⁴⁹⁰⁾, 인터넷 한국국정일보⁽¹⁴⁹²⁾, 연합뉴스^(1493·1494)/사유 : 언론의 상당성 인정)
이 행 결 과	• 온라인 중앙일보 : 『60대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60대 남성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내일신문 : 『60대 남성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60대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50대 A씨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외 10건
2014서울조정1498·1499	(정정·손배청구) 박○○ 외 1인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여수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부인 통장으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500, 1501	(각 정정청구) 배재정 외 4인 對 채널A ⁽¹⁵⁰⁰⁾ , 인터넷 채널A ⁽¹⁵⁰¹⁾
조 정 대 상	박정훈의 뉴스 톱 10 프로그램 『2300억대 땅재벌 청해진해운 관계사...‘속빈강정’ 신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4월 28일자, 인터넷 채널A 4월 28일자 정책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국회의원인 신청인들이 강경파로 의원총회에서 막말을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박정훈의 뉴스 톱 10 프로그램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10월 31일자, 인터넷 채널A 10월 31일자 정책면)
2014서울조정1502~ 1505	(각 정정·반론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경향신문 ^(1502·1503) , 인터넷 경향신문 ^(1504·1505)
조 정 대 상	『내부고발자 철저히 보호해야』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9월 3일자 9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내부고발자인 교사를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 ○○○고 내부고발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10월 10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508~ 1575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1) 『현직 공기업 CEO의 또다른 공기업 도전기』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1일자 부동산정책면) (2) 『‘구설수’ 서종대 주금공 전사장, 결국 감정원장에』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9일자 부동산일반면) (3) 『감정평가협회, ‘한남○○’ 타당성조사 중도포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부동산일반면) (4) 『‘한남○○’ 타당성조사 오늘 2차심의....심의위원 교체 구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9일자 부동산일반면) (5) 『감정원도 “한남○○ 고무줄 감정...재표결서 결과 뒤바뀌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부동산일반면) 외 18건 (6) 『국토부 ‘한남○○’평가사·법인 징계 왜 서두르나?』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부동산정책면)

	(7) 『‘한남○○’ 타당성조사 재심의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부동산정책면) (8) 『‘불편한 진실’ 외면한 국토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3일자 부동산 정책면) (9) 『“하지도 않은 평가방식이 잘못?...감정원의 이상한 타당성조사”』 2014년 7월 23일자 부동산정책면) (10) 『국토부, 한남○○ ‘억지’ 징계? ‘1개월 vs 14개월’ 2014년 7월 24일자 부동산일반면』 외 30건
신청인 주장	1. 한국감정원 원장직 선출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08~1511, 1566 · 1567) 2. 한국감정원이 모 아파트 타당성 조사단의 단장 및 총책임자를 교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12~1515, 1542 · 1543, 1554 · 1555) 3. 한국감정원의 모 아파트 타당성 조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16~1521, 1524~1533, 1540 · 1541, 1544~1553, 1560~1565) 4.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의 상, 하한선이 18%의 차이가 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22 · 1523, 1536 · 1537, 1556~1559) 5. 모 리조트 담보평가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한국 감정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4서울조정1534 · 1535, 1538 · 1539) 6.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직원의 집합소이며, 국토부가 일감을 몰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4서울조정1568~1575)
처리 결과	• 각 각하^(1508~1535) (사유 : 조정신청기간 도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536~1575)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정정보도 결정건수 및 손해배상액이 적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577 · 1578	(정정·손배청구) 군산○○교회 對 종교와진리
조정 대상	『군산 ○○교회 유○○ 목사, 이단사상 반발한 성도들. 강제 출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48면~6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담임목사에게 성도들의 이단사상 주입금지를 요구한 장로들을 강제로 출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 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 결과	『“군산 ○○교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9면)

2014서울조정1579~1582	(각 정정청구) 이○○ 對 경향신문 ⁽¹⁵⁷⁹⁾ , 인터넷 경향신문 ⁽¹⁵⁸⁰⁾ , 한국일보 ⁽¹⁵⁸¹⁾ , 인터넷 한국일보 ⁽¹⁵⁸²⁾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뉴라이트 전면 복귀, 이젠 방송까지 장악』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6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5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朴정부의 편애… 뉴라이트 정부기관 수장 속속 꺾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일자 2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박근혜 정부 “뉴라이트 챙기기” 확산』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하고, 명성황후를 민비로 표현해야한다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뉴라이트 전면 복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24일자 오피니언면) • 한국일보 : 『‘뉴라이트, 정부기관 수장 속속 꺾인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문화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31일자 문화면)
2014서울조정1583	(정정청구) 대한○○의사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무너진 시력교정의 꿈』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시력교정술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6월 27일 방송된 “무너진 시력교정의 꿈” 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4년 10월 21일자 홈페이지 게시판)
2014서울조정1584	(정정청구) 조○○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101세 꽃할배와 100억대 재력가 김여사의 황혼연애』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연인 관계였던 사람의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고,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585·1586	(정정·손배청구) 김○○ 외 3인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수상한 이웃, X맨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 건설사와 유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87·1588, 1590·1591, 1592, 1593	(각 정정·손배청구) 김○○ ^(1587·1588) , 이○○ ^(1590·1591) 對 뉴스 TR (각 손배청구) 엄○○ ⁽¹⁵⁹²⁾ , 유○○ ⁽¹⁵⁹³⁾ 對 뉴스 TR
조 정 대 상	(1) 『당신의 브래지어는 안전합니까?』 제하의 기사 및 사진 (2014년 9월 11일자 초기화면) (2) 『장난과 범죄사이...』 제하의 기사 및 사진 (2014년 9월 14일자 TR토크면) (3) 『○○생명의 ‘팬티를 벗어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8일자 더리뷰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김모씨가 사내 워크숍에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사내 워크숍 성추행 보도건과 관련해 신청인들의 초상이 동의없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김○○^(1587·1588)/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 양당사자간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부제소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엄○○⁽¹⁵⁹²⁾/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취하간주 (이○○^(1590·1591), 유○○⁽¹⁵⁹³⁾)
2014서울조정1589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국제타임스
조 정 대 상	『○○○○○ 요구르트 ○○○○서 죽은 벌레 나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제품에서 죽은 벌레가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94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외 1인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석촌지하차도에 또 동공 5개…서울시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가 석촌지하차도에서 동공 5개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안전특별시’ 라더니』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4년 10월 2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595~1602	(각 추후·손배청구) 김○○ 對 뉴스1코리아 ^(1595·1596) , 노컷뉴스 ^(1597·1598) , 인터넷 베이비뉴스 ^(1599·1600) , 연합뉴스 ^(1601·1602)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보육보조금 빼돌린 50대 부부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국고보조금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지역/부산면) • 인터넷 베이비뉴스 : 『어린이집 비리·횡령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9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국고보조금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노컷뉴스, 인터넷 베이비뉴스, 연합뉴스/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1코리아/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피신청인 이익신청/사유 : 보도에 문제가 없으므로 추후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어린이집 비리·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베이비뉴스 : 『‘어린이집 비리·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국고보조금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 입건’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지역면)
2014서울조정1604	(정정청구) 재단법인 울산○○○○ 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공동묘지 묘비에 웬 체불 딱지』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지방자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묘지규모에 따라 고액의 영구관리비를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지방자치면)

2014서울조정1605, 1616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KBS-1TV ⁽¹⁶⁰⁵⁾ , KBS미디어 ⁽¹⁶¹⁶⁾
조 정 대 상	취재파일 K 프로그램 『배달앱, 우버 디지털 상술의 그늘』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KBS미디어 9월 19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고율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다시보기 동영상 끝부분에 해당 반론보도문 추가 게시
이 행 결 과	『배달앱 고율의 수수료 관련 공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2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2014서울조정1606 · 1607	(정정·손배청구) 이○○ 對 아유경제
조 정 대 상	『박원순 시장님,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신청인에게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박원순 시장님, 동성애 차별금지…”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08~ 1611	(각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경향신문 ^(1608·1609) , 인터넷 경향신문 ^(1610·1611)
조 정 대 상	『안전점검 ‘D등급’ 받은 학교 지원 받아 횡령, 시설 보수 안해』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8월 6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교설립자 아들이 교사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회계비리, 학생·교사에 폭행·폭언까지’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4년 10월 3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12 · 1613	(정정 · 손해청구) ○○○○○ 주식회사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우리 프로그램 외엔 안 돼”...퀵서비스 업계 ‘甲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퀵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영세 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종결때까지 조건부 부제소
이 행 결 과	『“퀵서비스 프로그램 업체의 횡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17, 1618	(각 정정청구) 박○○ 對 전자신문 ⁽¹⁶¹⁷⁾ , 전자신문 인터넷 ⁽¹⁶¹⁸⁾
조 정 대 상	『국산 전기면도기 ‘불씨’ 살아났다』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2014년 9월 30일자 종합면, 전자신문 인터넷 9월 30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모 전자회사 부도로 인해 신청인 소유 해당회사 브랜드 전기면도기가 더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기사 약속)
이 행 결 과	『토종 면도기 브랜드 ‘○○○’ 부활 안간힘』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인터넷 2014년 10월 2일 뉴스면)
2014서울조정1619 · 1620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문화방송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아빠 청와대 방문’ 관심없는 지상파 뉴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측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사과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아빠 청와대 방문, 관심없는 지상파뉴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2일 초기화면)

2014서울조정1621~1623	(각 반론청구) ○○여대 ○○대 총학생회 對 인터넷 한겨레 ⁽¹⁶²¹⁾ , 인터넷 경향신문 ⁽¹⁶²²⁾ , 연합뉴스 ⁽¹⁶²³⁾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겨레 : 『쏟대스러운 ‘○대 축제’, 그들만의 ‘드레스코드’』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가슴골 상의·망사·시스루 금지’ 여대 축제의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2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핫팬츠에 가슴골 노출’…도 넘은 대학축제 주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 총학생회가 축제 규정안을 마련한 취지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신청인 관련 사진 삭제,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중 신청인 대학축제 홍보 포스터 삭제 및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사진도 삭제 - 각 취하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한겨레 : 『2014년 ○○여대 ○○제 규정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문화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여대 축제 규정안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24	(정정청구) ○○한의원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한의원, 무허가 약광고? 극장 등에 “약장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한의원이 무허가 광고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1625	(반론청구) 전국○○○○연합회 對 방송대신문
조 정 대 상	차기 총장, 누구 뽑으면 좋을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모대학 전국총학생회가 신청인 단체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연 징계 문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7일자 종합면)

2014서울조정1626 · 1627	(정정 · 손해청구) 유○○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교대 총장 ‘카드깡’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W1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문화재단 이사장 재직시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대 총장 카드깡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12A면)
2014서울조정1628 · 1629	(정정 · 손해청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對 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내역서 입수…11개월 ‘0’원』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5일자, 9월 26일자 아침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 점검을 소홀히 하여 난방비가 0원인 가구가 33가구나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TV비평 시청자데스크 프로그램 『난방밸브 적절 관리… 난방비 부정 없어』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8일자)
2014서울조정1630~1635	(각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주식회사 ○○○○ 對 한겨레 ^(1630~1632) , 인터넷 한겨레 ^(1633~1635)
조 정 대 상	(1) 『10달러에 빼앗긴 목숨』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5일자 8면~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4일자 사회면) (2) 『터무니없이 임금 낮아도 재봉틀이 돌아가는 이유』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6일자 1면, 8면~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5일자 사회면) (3) 『“그들만의 감작 실적”… 재봉틀앞 노동자 뭇은 없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4년 8월 29일자 1면, 8면~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해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않았고, 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636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The Korea Times
조 정 대 상	『취업준비생 8할 ‘사진도 스펙이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취업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증명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1637, 1818	(정정청구) 고○○ 외 2인 ⁽¹⁶³⁷⁾ 對 e머니투데이 (정정청구) 김○○ 외 2인 ⁽¹⁸¹⁸⁾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해고직원 월급에 장애인보조금까지 챙긴 톨게이트 사장님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모 톨게이트 영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부당하게 돈을 챙기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후 보도)
이 행 결 과	『‘톨게이트영업소 부당 이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4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700~ 1702, 1714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한겨레 ⁽¹⁷⁰⁰⁾ , 뉴스1 코리아 ^(1701, 1714) , 쿠키뉴스 ⁽¹⁷⁰²⁾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1) 『○○○ 어린이병원 청소노동자들, 오늘부터 파업 시작』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6일자 사회면) (2) 『“○○○병원이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책임져라”』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6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대병원 청소노동자들 오늘 파업 돌입』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공공부문 간접고용 되레 늘어…정부가 ‘나쁜 사용자’ 노릇』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병원 청소용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노조에게 노동법 위반 내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스1코리아, 인터넷 한겨레/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신청인 업체명 익명으로 수정표기 - 취하 (쿠키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신청인 관련 보도 내용 수정

2014서울조정1703, 1704	(각 정정청구) 권성동 對 인터넷 경향신문 ⁽¹⁷⁰³⁾ , 인터넷 한겨레 ⁽¹⁷⁰⁴⁾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1) 『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똥 따라 개정안 발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비즈니스라이프면) (2) 『새누리 주당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추진, 노동계 명백한 착취입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창조경제의 핵심이 노동력 착취, 노예임을 누가 알았으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정근로시간을 늘리고 휴일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한겨레/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사회면 및 비즈니스라이프면) - 인터넷 한겨레 :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05~ 1709	(각 정정청구) 류지영 對 뉴스1코리아 ⁽¹⁷⁰⁵⁾ , 아시아경제닷컴 ⁽¹⁷⁰⁶⁾ , 아주뉴스 ⁽¹⁷⁰⁷⁾ , 쿠키뉴스 ⁽¹⁷⁰⁸⁾ , 의약뉴스 ⁽¹⁷⁰⁹⁾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새누리당 의원, 건보공단 문건 담배회사 넘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복지면) - 아시아경제닷컴 : 『새누리 의원, 담배소송 국감자료 KT&G에 넘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기업면) - 아주뉴스 : 『건보공단 담배소송 자료, 국회의원이 KT&G에 넘겨』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복지면) - 쿠키뉴스 : 『국내 담배회사들, 정치인 후원 및 불법 마케팅 지속』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뉴스면) - 의약뉴스 : 『국감자료, 담배회사에 넘겼나,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의약정책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배소송 관련 국감자료를 담배회사에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710~1713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연합뉴스 ^(1710·1711) , 매일일보 인터넷 ^(1712·1713)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도시정보화 한다던 ‘인천 ○○○○○○’ 엉망…해체론 ‘술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전국면) • 매일일보 인터넷 : 『민·관 투자기업 ‘인천○○○○○○’ 방만 운영에 해체론까지 거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9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익계약을 통해 인천의 모 투자기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연합뉴스/사유 : 기사삭제) • 취하 (매일일보 인터넷/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매일일보 인터넷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전국면)
2014서울조정1715, 1716	(각 정정청구) ○○○○○○ 對 서울신문 ⁽¹⁷¹⁵⁾ , 인터넷 서울신문 ⁽¹⁷¹⁶⁾
조 정 대 상	『[사이버검열 후폭풍] 보수 고발→신속 수사→사이버 검열… 여론 통제 방정식 논란』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10월 15일자 사회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정부의 사이버검열 원인을 제공하는 보수단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사이버검열 후폭풍] 보수 고발→신속 수사→사이버 검열… 여론 통제 방정식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11월 27일자 8면(사회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27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63·1764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60분 프로그램 『수상한 이웃, X맨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인천 모 아파트 임시대표회의 회장인 신청인이 아파트 건설사와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기타) ※ 이행방법 : 신청인은 건설사 유착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공문 송부 및 다시보기 중단
이 행 결 과	공문송부 및 다시보기 중단

2014서울조정1765~ 1768	(각 정정·반론청구) ○○○○○입주자 대표회의 對 MBN ^(1765·1766) , 인터넷 MBN ^(1767·1768)
조 정 대 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전국 최대 아파트 입찰 비리잡음』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5일자) • 인터넷 MBN : 『[단독]‘전국 최대’ 아파트 단지 입찰 비리 ‘잡음’…구청 감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잠실 모 아파트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공사 및 경비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약속)
2014서울조정1769~ 1772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제이티비시 對 경향신문 ^(1769·1770) , 인터넷 경향신문 ^(1771·1772)
조 정 대 상	『프리랜서가 퇴직금 신청하자…방송사, 같은 팀 프리랜서 모두 해고』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4년 9월 1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프리랜서를 부당 해고했으며, 복직후에도 대기명령을 내리고 강압적인 근태관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773· 1774	(정정·손배청구) 마○○ 외 4인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경찰, ○○연맹 임원 ‘아시안게임 선발 비리’ 수사(종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2) 『[단독]경찰, ○○연맹 임원 아시안게임 선발 비리 혐의 수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선수 부모인 신청인들이 대한○○연맹 이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추후보도 약속,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종목 국가대표선발 비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75, 1776	(각 손해청구) 윤○○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 ⁽¹⁷⁷⁵⁾ , 위키트리 ⁽¹⁷⁷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간스포츠 : 『○○FC, 송○○ 살해 협박자에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8일자 연예면) - 위키트리 : 『“송○○ 죽이고 싶다” 살해 위협에 ○○FC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9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인터넷 게시판에 이중격투기 선수에 대한 협박글을 게시한 신청인의 실명이 공개 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인터넷 일간스포츠/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위키트리/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813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이지경제
조 정 대 상	『[단독] 쉼보레 ○○○점 딜러가 ‘꿀꺽’』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는 딜러의 횡령사건에 신청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818	(정정청구) 김○○ 외 2인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해고직원 월급에 장애인보조금까지 챙긴 톨게이트 사장님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상임위면)
신청인 주장	모톨게이트 영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자신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톨게이트 영업소 부당 이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4일자 정치섹션면)

2014서울조정1906~ 1913	(각 반론·손배청구) 최○○ 對 조선일보 ^(1906·1907) , 프리미엄 조선 ^(1908·1909) , TV조선 ^(1910·1911) , 인터넷 TV조선 ^(1912·1913)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박원순발 서울 ○○대 ‘논란 2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A6면) - 프리미엄 조선 : 『박원순發 낙하산 논란…민노당 최○○ ○○대 교수 임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뉴스인사이드면) - TV조선 : 김광일의 신통방통 프로그램 『‘서울○○대 논란 2탄’』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13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3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시 단일화 대가로 박원순 시장이 신청인을 서울 모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통진당 前 간부 최○○씨 새정치聯 입당해 보니...』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5일자 04면, 프리미엄 조선 10월 25일자 뉴스인사이드면) - TV조선 : 김광일의 신통방통 프로그램 인터뷰 (2014년 10월 31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31일자)
2014서울조정1914~ 1922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조선닷컴 ^(1914·1915, 1916·1917) , 연합뉴스 ^(1918·1919) , 인터넷 한겨레 ^(1921·1922) , (정정청구) 인터넷 한국일보 ⁽¹⁹²⁰⁾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1) 『日 편향 논란 박○○ 교수 저서, 문체부 2006년 ‘우수도서’ 지정』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사회면) (2) 『박○○ 교수 ‘제국의 위안부’ 책 내용 보니... 충격 넘어 경악』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6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제국의 위안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5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일 우익대변 박○○ 교수 책 우수도서 선정 경위 조사』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일편향 논란 박○○ 저서 우수도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정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신청인의 저서가 일본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조선닷컴, 연합뉴스,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취하 (인터넷 한겨레/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반론보도문]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 교수,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위안부 피해자들 ‘제국의 위안부’ 판매 금지 소송』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제국의 위안부’ 저술 박○○ 또 다른 저서, 우수도서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923	(정정청구) 동두천시청 외 1인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단독보도]택시업체 특혜 의혹 오세창 동두천 시장 검찰 조사 내막』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동두천시청 공무원들과 시장이 택시 업계로부터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동두천 시장 택시업체 특혜 및 뇌물수수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972	(반론청구)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對 로이슈
조 정 대 상	『보육협의회 ‘아동 가해 원장 옹호’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규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센터가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편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종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보육협의회 “아동 가해 원장 옹호”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규탄〉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지역면)
2014서울조정1973	(정정청구) 해군본부 對 아시아경제
조 정 대 상	『황기철 총장, 통영함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1일자 종합1면)
신청인 주장	해군본부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재직시 특정업체의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974~1977	(각 정정청구) 이○○ 對 동아일보 ⁽¹⁹⁷⁴⁾ , 동아닷컴 ⁽¹⁹⁷⁵⁾ , 네이버 ⁽¹⁹⁷⁶⁾ , 다음 ⁽¹⁹⁷⁷⁾
조 정 대 상	『국감장에서 거짓말 한 국방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10월 10일자 A4 종합면, 동아닷컴 10월 10일자 정치면, 네이버·다음 10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해상작전 헬기 사업과 관련해 거짓 답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동아일보, 동아닷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3일자 6면) • 동아닷컴 『국방부 국감 거짓 답변 관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3일자 정치면, 네이버·다음 11월 13일자)

2014서울조정2015	(정정청구) 도○○ 對 e머니워크
조 정 대 상	『“감청 영장 집행 문제 없다” 의견 대두…다음카카오 반응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모 메신저업체의 영장 거부 방침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을 이동통신사 관계자의 발언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2115 · 2116	(정정 · 손해청구) 사단법인○○○○선교회 외 1인 對 CBS-TV
조 정 대 상	CBS 교계뉴스 프로그램 (2014년 10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구원파로 분류되고 있으며,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CBS 교계뉴스 프로그램 『○○○○선교회 및 박○○ 목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2014서울조정2117 · 2118	(정정 · 손해청구) 김○○ 외 1인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의 허와 실』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프랜차이즈 세탁편의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손상된 세탁물에 대한 보상책임을 본사에 떠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2119	(손배청구) 이○○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취약계층 독감예방 접종』 제하의 사진 (2014년 10월 23일자 13면)
신청인 주장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동의에 따른 초상권 침해 불성립)

2014서울조정3069, 6685	(각 손해청구) 박○○ 對 디스패치뉴스 ⁽³⁰⁶⁹⁾ , 인터넷 뉴스포토로 ⁽⁶⁶⁸⁵⁾
조 정 대 상	• 디스패치뉴스 : 『외면당한 미스 SEXY 백 “이렇게 핫한데 왜?”』 제하의 사진 (2014년 7월 22일자 zoom) • 인터넷 뉴스포토로 : 『미스섹시백 최고의 뒤편 미인을 찾습니다』 제하의 사진 (2014년 7월 19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특정부위를 확대 촬영, 게재하여 초상권이 침해당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3244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연대 외 1인 對 대한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1) 『인천 인터넷기자단체 대한민국 인물 시상식』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4일자 사회면) (2) 『대한민국 인물 시상 논란시비 경찰 철저히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한민국 ○○대상을 주최한 신청인 단체의 심사위원들이 전과 경력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3401, 3402	(각 손해청구) 이○○ 외 3인 對 MBC-TV ⁽³⁴⁰¹⁾ , iMBC ⁽³⁴⁰²⁾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아들에게 전 재산 증여, 엄마가 도장 찍던 날』 제하의 보도 (MBC-TV 2014년 10월 13일자, iMBC 10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음성 및 초상이 노출되었고, 신청인의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이 그대로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할 정도의 오보는 아니라고 주장)
2014서울조정3559 · 3560, 3581 · 3582	(각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전자신문사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3559 · 3560) , 미디어스 ^(3581 · 3582)
조 정 대 상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전자신문, 추석 앞두고 노조 부지부장에 해고 통보』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7일자 초기화면) • 미디어스 : 『추석명절 하루 전 ‘해고’ 통보 받은 이○○ 전자신문 기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신문사가 추석을 앞두고 노조 부지부장을 해고 통보하는 등 표적징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이미 신청인 입장을 충분히 보도하였다고 주장) • 조정성립 (미디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네이버, 네이트, 다음의 해당 기사도 삭제
이 행 결 과	『추석명절 하루 전 ‘해고’ 통보 받은 이○○ 전자신문 기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스 2014년 11월 19일자 미디어뉴스면)
2014서울조정3737 · 3738, 3745~3754, 3765~3774, 4233~4242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오에스이엔^(3737 · 3738), TV리포트^(3745 · 3746), 인터넷 MBN^(3747 · 3748), 티브이데일리^(3749 · 3750), 인터뷰 365^(3751 · 3752), 텐아시아^(3753 · 3754), 네이버^(3765~3774), 다음^(4233~4242)
조 정 대 상	• 오에스이엔 :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소송서 승소 “억울함 풀게 됐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네이버·다음 9월 29일자) • TV리포트 :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상대 민사소송서 승소 ‘명예회복’』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네이버·다음 9월 29일자) • 인터넷 MBN :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제명처분 소송 승소 ... 표절 의혹 벗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네이버·다음 9월 29일자) • 티브이데일리 :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표절시비 민사소송 승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 인터뷰 365 : 『‘야왕’ 이희명 작가 표절시비 소송서 승소, 명예회복』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연예면) • 텐아시아 : 『드라마 ‘야왕’ 이희명 작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핫이슈면, 네이버·다음 9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고 제작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TV리포트, 인터넷 MBN, 티브이데일리, 인터뷰 365, 텐아시아/사유 : 정정보도 게재) • 취하 (오에스이엔/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오에스이엔 : 『최○ 작가측, “이희명 작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반박』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연예면, 네이버·다음 11월 7일자) • TV리포트 : 『[정정보도] 9월 29일자 ‘야왕’소송 관련 기사의 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연예면, 네이버·다음 11월 12일자) • 인터넷 MBN : 『[정정보도] 9월 29일자 ‘야왕’ 관련 기사 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연예면, 네이버·다음 11월 11일자) • 티브이데일리 : 『[정정보도] 9월 29일자 ‘야왕’ 관련 기사 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연예면) • 인터뷰 365 : 『[정정보도] ‘야왕’ 이희명 작가 표절시비 소송서 승소에 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연예면) • 텐아시아 : 『[정정보도] 9월 29일자 ‘야왕’ 관련 기사 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연예면, 네이버·다음 11월 11일자)

2014서울조정4541, 4542	(각 정정청구) 광명시청 對 한성일보 ⁽⁴⁵⁴¹⁾ , 인터넷 한성일보 ⁽⁴⁵⁴²⁾
조 정 대 상	『광명뉴타운사업추진, 오락가락하는 시행정, 시민들 분노케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한성일보 2014년 10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성일보 10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시청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경기도청에 광명뉴타운 사업추진 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명뉴타운사업추진, 오락가락하는 시 행정, 시민을 분노케하고 있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성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2면, 인터넷 한성일보 11월 20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4543 · 4544	(정정 · 손해청구) 안○○ 對 인터넷 강남신문
조 정 대 상	『뻔뻔한 의사와 변호사...두 번 운 아버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성형수술한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보도임)
2014서울조정6686~ 6703	(각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연합뉴스 ^(6686 · 6687) , 인터넷 TBS ^(6688 · 6689) , e머니투데이 ^(6690 · 6691) , 인터넷 기독교일보 ^(6692 · 6693) , 이데일리 ^(6694 · 6695) , e중앙뉴스 ^(6696 · 6697) , 세계닷컴 ^(6698 · 6699) , 인터넷 뉴스신문고 ^(6700 · 6701) , 아시아경제닷컴 ^(6702 · 6703)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TBS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다이빙벨 유도줄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의식 잃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기독교일보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맡았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 이데일리 : 『“다이빙 벨” 가이드라인 설치 잠수사, 잠수병으로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언딘인더스트리 및 알파잠수종합기술공사 소속 잠수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e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닷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TBS, 인터넷 기독교일보, 이데일리, e중앙뉴스, 세계닷컴, 인터넷 신문고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인터넷 TBS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인터넷 기독교일보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사회면) • 이데일리 :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7일자 사회면) 외 8건
2014서울조정6704~6706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종합건설 對 e머니투데이 ⁽⁶⁷⁰⁴⁾ , 네이버 ⁽⁶⁷⁰⁵⁾ , 네이트 ⁽⁶⁷⁰⁶⁾
조 정 대 상	『한강조망 갖췄다던 오피스텔...수익률 3%대에 안보이네』 제하의 기사 (e머니투데이 2014년 10월 29일자 부동산면, 네이버·네이트 10월 29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시행사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의 한강조망권과 분양수익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보도 본문 중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는 부분 삭제, 신청인 인터뷰 내용 삭제, 옆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사진과 캡션 삭제 및 보도 본문 중 수익률표 각 삭제 • 각 취하 (네이버, 네이트/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수정

2014서울조정6707~ 6712, 7204, 7205, 8888, 8889, 9017, 9018, 9197	(각 추후청구) 이○○ 對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⁶⁷⁰⁷⁾ , 아주뉴스 ⁽⁶⁷⁰⁸⁾ , 뉴시스 ⁽⁶⁷⁰⁹⁾ , 인터넷 연합뉴스TV ⁽⁶⁷¹⁰⁾ , 인터넷 경향신문 ⁽⁶⁷¹¹⁾ , 노컷뉴스 ⁽⁶⁷¹²⁾ , 브레이크뉴스 ⁽⁷²⁰⁴⁾ , 엔와이엔뉴스 ⁽⁷²⁰⁵⁾ , 조선닷컴 ⁽⁸⁸⁸⁸⁾ , 동아닷컴 ⁽⁸⁸⁸⁹⁾ , 전남CBS-R ⁽⁹⁰¹⁷⁾ , 온라인 중앙일보 ⁽⁹⁰¹⁸⁾ , 인터넷 평화방송 ⁽⁹¹⁹⁷⁾
조 정 대 상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지지 안해 낙선돼...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이슈면) • 아주뉴스 : 『“상대후보 도와 낙선”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후보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지방면) • 뉴시스 : 『지방선거 낙선 전 시의원, 전 도의원 폭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광주전남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지지만해 낙선...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네가 지지 안해서 내가 낙선”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노컷뉴스 : 『상대후보 도왔다...맥주병으로 내리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지방면) 외 7건
신청인 주장	도의원에 낙선한 신청인이 전 도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아주뉴스, 인터넷 연합뉴스TV, 노컷뉴스, 동아닷컴, 전남CBS-R,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평화방송/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경향신문, 엔와이엔뉴스, 조선닷컴/내용 : 추후 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취하 (뉴시스/사유 : 후속보도 약속) • 취하 (브레이크뉴스/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이슈면) • 아주뉴스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지방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3일자 사회면) • 인터넷 노컷뉴스 :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8일자 사회면) 외 6건

2014서울조정7203	(정정청구) 황○○ 對 아시아경제
조 정 대 상	『황○○ 총장, 통영함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방위사업청 ○○○○부장 재직시 통영함에 장착할 핵심부품을 규정까지 바뀌가며 특정업체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황○○ 총장, 통영함 비리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1면)
2014서울조정7206	(정정·손배청구) 윤○○ 對 몬스터짐
조 정 대 상	『송○○ 살해협박범, 사과문 공개…○○○FC 입장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인터넷 게시판에 이종격투기 선수에 대한 협박글을 게시한 신청인의 실명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4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및 금액지급
2014서울조정7207	(정정청구) 임○○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1조원대 예산투입 국방사업 ‘형제끼리 주고받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뉴스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방위사업청 전투사업팀장 재직시 사위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전술비행선사업체로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7208	(정정청구) 송○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서울시 지하철 환기구 안전성』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하철 환기구 안전 점검결과 관련하여 타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없이 발췌·편집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7209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한국○○회도 유병언·구원파와 한 몸통”』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회가 유병언 전 회장 및 구원파와 관련있다고 보도하며, 회장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7210·7211, 8890·8891	(각 정정·반론청구) ○○○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 對 NSP통신 ^(7210·7211) , 조세일보 ^(8890·8891)
조 정 대 상	- NSP통신 : 『부산시, ○○○골프앤리조트 대주주 C&S자산관리에 대한 끝도 없는 ‘애정(?)’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뉴스면) - 조세일보 : 『부산시, ○○○비치CC 특허 분양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건설회사의 사업부지나 분양대금 거래계좌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NSP통신 : 『부산시, ○○○골프앤리조트 대주주 C&S 자산관리에 대한 끝도 없는 애정(?) 어디까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1일자 뉴스면) - 조세일보 : 『○○○골프앤리조트 특허 분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7212~7215, 8236~8241, 8325~8330	(각 반론·손배청구) 대한○○○장로회 ○○교회 외 1인 對 매경닷컴 ^(7212·7213) , 교회와신앙 ^(7214·7215) ,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일요신문 ^(8236~8238) , 인터넷 일요신문 ^(8239~8241) , TV조선 ^(8325~8327) , 인터넷 TV조선 ^(8328~8330)
조 정 대 상	- 매경닷컴 : 『사이비목사 부자 엽기성범죄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사회일반면) - 교회와신앙 : 『13세 소년이 대통령께 호소한 엽기사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이단&이슈면) - 일요신문 : 『가족끼리 이럴수가... 이보다 더한 짐승은 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9일자 1면, 22면~23면, 인터넷 일요신문 11월 3자 사회면) - TV조선 : (1)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 『충격 목사부자엽기 성범죄 논란』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30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30일자 홈페이지) (2)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 『K교회목사 엽기성범죄 의혹』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31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31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혼음을 강요하고, 신도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매경닷컴, 교회와신앙/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매경닷컴 : 『“사이비 목사 부자 엽기성범죄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4일자 사회면) • 교회와신앙 : 『“13세 소년이 대통령께 호소한 엽기사건”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5일자 이단&이슈면) • 일요신문 : 『“가족끼리 어찌 이럴수가... 이보다 더한 짐승은 없다”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7일자 3면, 인터넷 일요신문 12월 1일자 사회면) • TV조선 :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 『「충격 목사 부자엽기 성범죄 논란」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6일자, 인터넷 TV조선 11월 26일자 홈페이지)
2014서울조정8225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더코리아포스트
조 정 대 상	『Korea? 2014 annual GDP growth may close at 3.4%』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석유공사의 부채 증가에 대한 보도에서 전혀 무관한 신청인 업체의 영문명을 표기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CORRECTION AND APPOLOGY』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3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8226~8235	(각 정정·손배청구) 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관리위원회 지회 對 이데일리(8226·8227), 인터넷 일간스포츠(8228·8229), 데일리게임(8230·8231), 인터넷 스포츠조선(8232·8233), 스포츠서울닷컴(8234·8235)
조 정 대 상	• 이데일리 : 『○○위 내부 갈등, 성희롱 폭로전으로 비화』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IT·과학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제 역할 못하고 내부 갈등만 ... 게임위 폐지 추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경제면) • 데일리게임 : 『추문에 흔들리는 ○○위 ... 알력싸움에 업계 피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기획면)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또 다시 도마에 오른 ○○위, 성희롱인가, 내부 갈등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엔터테인먼트/게임면) • 스포츠서울닷컴 : 『석연치 못한 성희롱 추문 ○○위, 내부 갈등의 산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관리위원회 내부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무기삼아 기관장과 사무국을 흔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8324	(정정청구) ○○○○○○○○○○재단 對 KBS-2TV
조 정 대 상	해피투게더 프로그램 (2014년 10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이영돈 PD를 살해하기 위해 처단조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해피투게더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종교단체 이영돈PD 살해위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9일자)
2014서울조정8331·8332	(정정·손배청구) 성남시 외 1인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뉴스특급 프로그램 『성남시 VS 이데일리, 행사 주최 두고 공방』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복논란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기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8602~8605	(정정·반론청구) 정○○ 對 한국성결신문 ^(8602·8603) , 인터넷 한국성결신문 ^(8604·8605)
조 정 대 상	『○○○○교회 지방회 탈퇴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8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교회가 재정집행 실사를 피할 목적으로 전남중앙지방회를 탈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서울조정8606	(정정청구) ○○○○학교 對 EBS-TV
조 정 대 상	특집다큐 교육의 길을 묻다 프로그램 (2014년 10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안학교가 허가없이 건물을 증축해 안전설비에 문제가 있으며, 무자격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8607~ 8610, 8883, 8884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아시아경제 ^(8607·8608) , 아시아경제 닷컴 ^(8609·8610) 네이버 ⁽⁸⁸⁸³⁾ , 다음 ⁽⁸⁸⁸⁴⁾
조 정 대 상	『‘甲’ 질 입방아 오른 ○○』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5일자 5면, 아시아경제 닷컴·네이버·다음 2014년 11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서울조정8611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보
조 정 대 상	『‘노조세습-사장연임’ 위한 위험한 밀거래』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7일자 4면)
신청인 주장	KBS 사측과 노동조합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배제한 채,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이 문제삼은 내용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
2014서울조정8612~ 8615	(각 정정·손배청구) 대한민국○○○○회 외 1인 對 시사IN ^(8612·8613) , 시사IN Live ^(8614·8615)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 (1) 『노병은 죽지 않는다 ‘권력’에 기댈 뿐이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8일자 사회면, 시사IN Live 10월 11일자 사회면) (2) 『‘집회 덕후’된 전직 경찰들의 배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8일자 사회면) • 시사IN Live : 『황우여 “○○회는 중북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첨병”』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정권을 등에 업고 특혜성 이권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대표가 독선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한민국○○○○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여기는 시사모면, 시사IN Live 2월 1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8616~8618, 8619~8622, 8623, 8624, 8625~8627, 8628, 8629, 8630 · 8631, 8977~8982, 8984~8987, 8988~9010, 9354	(각 손배청구) 강○○ 對 YTN⁽⁸⁶¹⁶⁾, 인터넷 YTN⁽⁸⁶¹⁷⁾, 뉴스1코리아⁽⁸⁶¹⁸⁾, 뉴시스⁽⁹³⁵⁴⁾ 김○○ 對 KBS-1TV⁽⁸⁶¹⁹⁾, KBS미디어⁽⁸⁶²⁰⁾, MBC-TV⁽⁸⁶²¹⁾, IMBC⁽⁸⁶²²⁾, 채널A⁽⁸⁹⁷⁷⁾, 인터넷 채널A⁽⁸⁹⁷⁸⁾, YTN⁽⁸⁹⁷⁹⁾, 인터넷 YTN⁽⁸⁹⁸⁰⁾, TV조선⁽⁸⁹⁸¹⁾, 인터넷 TV조선⁽⁸⁹⁸²⁾, 인터넷 Y-STAR⁽⁸⁹⁸⁴⁾, 티브이데일리⁽⁸⁹⁸⁵⁾, MBN⁽⁸⁹⁸⁶⁾, 인터넷 MBN⁽⁸⁹⁸⁷⁾ 정○○⁽⁸⁶²³⁾, 소○○⁽⁸⁶²⁴⁾ 對 뉴시스⁽⁸⁶²⁵⁾, 노컷뉴스⁽⁸⁶²⁶⁾, 민중의소리⁽⁸⁶²⁷⁾ 김○○⁽⁸⁶²⁸⁾, 이○○⁽⁸⁶²⁹⁾ 對 민중의소리⁽⁸⁶²⁷⁾ 윤○○ 對 MBN⁽⁸⁶³⁰⁾, 인터넷 MBN⁽⁸⁶³¹⁾ 추○○ 對 뉴스엔⁽⁸⁹⁸⁸⁾, 텐아시아⁽⁸⁹⁸⁹⁾, 티브이데일리⁽⁸⁹⁹⁰⁾, 인터넷 스포츠조선⁽⁸⁹⁹¹⁾, 스타뉴스⁽⁸⁹⁹²⁾, 노컷뉴스^(8993, 8994), 마이데일리⁽⁸⁹⁹⁵⁾, KBS-1TV⁽⁸⁹⁹⁶⁾, KBS미디어⁽⁸⁹⁹⁷⁾, Y-STAR⁽⁸⁹⁹⁸⁾, 인터넷 Y-STAR⁽⁸⁹⁹⁹⁾, MBC-TV⁽⁹⁰⁰⁰⁾, iMBC⁽⁹⁰⁰¹⁾, MBN⁽⁹⁰⁰²⁾, 인터넷 MBN^(9003, 9004), 채널A⁽⁹⁰⁰⁵⁾, 인터넷 채널A⁽⁹⁰⁰⁶⁾, TV조선⁽⁹⁰⁰⁷⁾, 인터넷 TV조선⁽⁹⁰⁰⁸⁾, YTN⁽⁹⁰⁰⁹⁾, 인터넷 YTN⁽⁹⁰¹⁰⁾
조 정 대 상	• YTN^(8616, 8979) : 종합뉴스 프로그램 『친형 · 전 전북부지사 소환...유병언 옥죄기 가속』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일자, 인터넷 YTN 5월 1일자 사회면) • KBS-1TV⁽⁸⁶¹⁹⁾ : 9시뉴스 프로그램 『연기자 전양자 조사...』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0일자, KBS미디어 5월 10일자 사회면) • MBC-TV⁽⁸⁶²¹⁾ : 8시 뉴스 프로그램 『유병언 형' 오후 소환』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0일자, iMBC 5월 10일자 사회면) 외 3건 • 채널A⁽⁸⁹⁷⁷⁾ : 뉴스특급 프로그램 『세모 핵심 탤런트 전양자...』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0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0일자 뉴스면) 외 2건 • TV조선⁽⁸⁹⁸¹⁾ : 주말뉴스 프로그램 『최측근 전양자, 구원파...』 제하의 보도 중 초상 (2014년 5월 10일자, 인터넷 TV조선 5월 10일자 뉴스면) 외 5건 • 뉴스1코리아⁽⁸⁶¹⁸⁾ : 『檢, 유병언 친형 ·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 소환』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11일자 법원 · 검찰면) • 노컷뉴스⁽⁸⁶²⁶⁾ : 『검찰 출두하는 고○○ 세모 대표』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6일자 포토면) 외 2건 • 뉴시스^(8623, 8624, 8625) : 『경호받으며 검찰 출석하는 고○○ 대표』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6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8627, 8628, 8629) :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된 고○○ ○○ 대표』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6일자 포토면) 외 28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측근의 검찰소환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8983	(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 참사] 檢, 유병언 측근 텔런트 전양자씨 소환』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측근의 검찰소환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도과)
2014서울조정8881 · 8882	(정정 · 손배청구) 신○○ 對 더벨
조 정 대 상	『거래 재개된 ○○플랜 정상화 본격 ‘시동’』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허위사실과 불법적 행위로 재직하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8885	(정정청구) 김○○ 對 뉴스천지
조 정 대 상	『인생의 진리 깨닫고 해탈하고자 했던 聖者 ‘석가모니’』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5일자 종교기획면)
신청인 주장	석가모니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8886 · 8887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헬스코리아뉴스
조 정 대 상	『“○○의료원장, 국정감사 끝나자 무자비한 직원보복”』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병원/의사면)
신청인 주장	모 병원장인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의료원장, 국정감사 끝나자 무자비한 직원보복”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6일자 병원/의사면)

2014서울조정9011	(손배청구) 백○○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입점업체에게 못받은 돈 백화점에 달라고 시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백화점 납품업체 시위현장을 보도하면서 이미 퇴사한 신청인의 성명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 성명 및 나이 삭제
2014서울조정9012 · 9013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문화일보 ⁽⁹⁰¹²⁾ , 인터넷 문화일보 ⁽⁹⁰¹³⁾
조 정 대 상	『K-11소총 ‘총체적 부실’ 알고도 量産 강행』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10월 20일자 1면 및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 소총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양산을 강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9014 · 9015	(정정·손배청구) 박○○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ELS 손실구간 다가온 투자자 어떻게 - 주가 추가하락 예상땀 중도환매도 방법』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5일자 A5면)
신청인 주장	특정 증권사의 상품이 주가하락에 따른 중도환매시 현시가대로 정산해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4서울조정9016	(정정청구) 교육공동체 ○○ 對 EBS-TV
조 정 대 상	특집다큐 교육의 길을 묻다 프로그램 『대안교육, 다시 대안을 찾다』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사제간 불미스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9195 · 9196	(정정 · 손해청구) 한국○○○○○○조합 對 마케팅뉴스
조 정 대 상	『그들만의 잔치...고○○ 감사로 전격 처리』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이사장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9342	(손배청구) 윤○○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檢, 이번주 내 유병언 검거작전 돌입할 듯』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5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금수원 내부 상황을 보도하면서 동의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9349	(정정청구) 주식회사 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대통령 말씀 ‘받아쓰고’ 유가족 눈물 ‘외면’한 지상파 뉴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MBC뉴스데스크에서 102일만에 발견된 세월호 실종자 관련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로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통령 말씀 ‘받아쓰고’ 유가족 눈물 ‘외면’한 지상파 뉴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미디어뉴스면)
2014서울조정9350 · 9351	(정정 · 손해청구) 박○○ 對 메디컬투데이
조 정 대 상	『김미희 의원 “○○의료원 사태 국회 차원의 조치 필요”』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의료면)
신청인 주장	○○의료원장인 신청인이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고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김미희 의원 “○○의료원 사태 국회 차원의 조치 필요”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의료면)

2014서울조정9352, 9353	(각 정정청구) 조달청 對 내일신문 ⁽⁹³⁵²⁾ , 인터넷 내일신문 ⁽⁹³⁵³⁾
조 정 대 상	(1) 『조달청, 스포츠토토 잘못된 사업자 ‘고집’』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11월 5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11월 5일자 문화면) (2) 『조달청, 허위제안서 제출한 업체 비호』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11월 5일자 19면, 인터넷 내일신문 11월 5일자 문화면) (3) 『조달청 ‘시간 없다’에서 ‘재판중’으로 말바꿔』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11월 7일자 17면, 인터넷 내일신문 11월 5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조달청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서 허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비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조달청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4년 12월 24일자 19면, 인터넷 내일신문 12월 24일자 문화면)
2014서울조정9355, 9356	(각 손해청구) 배○○ 對 JTBC ⁽⁹³⁵⁵⁾ , 인터넷 JTBC ⁽⁹³⁵⁶⁾
조 정 대 상	뉴스특보 프로그램 『금수원 압수수색영장-유병언 구인장 동시집행』 제하의 보도 중 초상 (JTBC 2014년 5월 21일자, 인터넷 JTBC 5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금수원 압수수색 관련 보도에서 금수원 정문에 서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정당한 실익이 없음)
2014서울조정9357	(손배청구) 서○○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특보 프로그램 『조만간 대국민 담화』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유병언 측근 인사의 검찰 소환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9410 · 9411	(정정·손배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인터넷 맛집 실태』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블로거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허위, 과장된 내용을 포스트잇 할 것을 주문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터넷 맛집 실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채널A 2014년 12월 12일자 게시판)

2014서울조정9412	(손배청구) 염○○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아들은 왜 어머니 집에 불을 질렀나』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초상과 사업장을 동의 없이 촬영,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9413~ 9415, 9962	(각 정정청구) 국방부 외 1인 對 문화일보 ⁽⁹⁴¹³⁾ , 인터넷 문화일보 ⁽⁹⁴¹⁴⁾ , 네이버 ⁽⁹⁴¹⁵⁾ , 다음 ⁽⁹⁹⁶²⁾
조 정 대 상	『방산업체, 軍실무자 대신 무기제안서 써주며 비용 ‘뺑튀기’』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10월 21일자 5면, 인터넷 문화일보·네이버·다음 정치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의 전력업무 관계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9799~ 9802	(각 정정청구) 정○○ 對 시사저널 ⁽⁹⁷⁹⁹⁾ , 인터넷 시사저널 ⁽⁹⁸⁰⁰⁾ , 기자협회보 ⁽⁹⁸⁰¹⁾ , 인터넷 기자협회보 ⁽⁹⁸⁰²⁾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 『4년 동안 난방비 한 푼도 안 낸 집도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7일자 18면, 인터넷 시사저널 10월 1일자 사회면) • 기자협회보 : 『‘난방전사’ 김부선 사건의 재구성』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일자 7면) • 인터넷 기자협회보 : 『‘난방전사’ 김부선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난방비리를 책임지고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시사저널 : 『‘관리소장 관리 소홀 책임지고 사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8일자 사회면) • 기자협회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2면, 인터넷 기자협회보 1월 9일자 오피니언면)

2014서울조정10869·10870	(각 정정청구) 사단법인 대한○○○협회 對 주간조선 ⁽¹⁰⁸⁶⁹⁾ , 인터넷 주간조선 ⁽¹⁰⁸⁷⁰⁾
조 정 대 상	『‘○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4년 11월 10일자 31면, 인터넷 주간조선 11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서울국제○○기자재전시회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5년 1월 4일자 31면, 인터넷 주간조선 1월 4일 사회면)
2014서울조정11150~11153	(각 정정·손배청구) 홍○○ 외 1인 對 JTBC ^(11150·11151) , 인터넷 JTBC ^(11152·11153)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정체모를 무형문화재-검증과정서 잡음 끊이지 않아』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11월 13일자, 인터넷 JTBC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요무형문화재 ○○○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던 신청인을 고인이 된 스승이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정체모를 무형문화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JTBC 2014년 12월 17일자, 인터넷 JTBC 12월 18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154~11169	(각 정정·반론청구) 홍문종 對 한국일보 ^(11154·11155, 11158·11159) , 인터넷 한국일보 ^(11156·11157, 11160·11161) , 미디어스 ^(11162·11163) , 뉴스앤뉴스 ^(11164·11165) , 프레시안 ^(11166·11167) , 팩트TV ^(11168·11169)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대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 홍문종 의원 선거캠프 동원됐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12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대 교직원 홍문종 선거캠프 동원 증언 잇달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18일자 사회면) • 미디어스 : 『홍문종 미방위원장, ○○대 합격자들 총선에 동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사회면) • 뉴스앤뉴스 : 『친박핵심 홍문종, ‘교직원 선거 동문’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정치면) • 프레시안 : 『“홍문종, 대학 교직원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정치면) • 팩트TV : 『홍문종, 이주노동자 착취에 이어 교직원 선거 동원까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총장으로 있는 ○○대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미디어스, 뉴스앤뉴스, 프레시안, 팩트TV/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미디어스 : 『“○○대 교직원 홍문종 의원 선거캠프 동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4일자 사회면) • 뉴스앤뉴스 : 『홍문종 의원 ○○대 교직원 선거캠프 동원 보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정치면) • 프레시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4일자 정치면) • 팩트TV : 『홍문종 의원 교직원 선거 동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1176 · 11177	(각 정정·손배청구) 사단법인 대한○○○○협회 서울지부 對 주간조선 ⁽¹¹¹⁷⁶⁾ , 인터넷주간조선 ⁽¹¹¹⁷⁷⁾
조 정 대 상	『주간조선 ‘○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3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서울○○의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거둔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5년 1월 4일자 31면, 인터넷 주간조선 1월 4일자)
2014서울조정11739 · 11740	(정정·손배청구) 오○○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이상한 병원, 수상한 원장님』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개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환자를 순회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1741~1174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JTBC ^(11741~11743) , 인터넷 JTBC ^(11744~11746)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강남서 무면허 성형수술』 제하의 기사 (JTBC 2014년 11월 21일자, 인터넷 JTBC 1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형외과 원장인 신청인이 무면허 의사를 고용해 수술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현장 프로그램 『〈무면허 성형수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JTBC 2015년 1월 6일자, 인터넷 JTBC 1월 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1747, 12445	(각 정정청구) ○○○○○○○어린이집 對 JTBC ⁽¹¹⁷⁴⁷⁾ , 인터넷 국민일보 ⁽¹²⁴⁴⁵⁾
조 정 대 상	• JTBC : (1) 뉴스룸 프로그램 『벌레먹인 선생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0일자) (2) 뉴스아침 & 프로그램 『벌레 먹고 가혹행위,,, 어린이집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 인터넷 국민일보 :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아이에게 벌레먹인 어린이집 교사』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의 교사가 현장학습 중에 아이에게 벌레를 먹이는 학대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JTBC/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2075 · 12076	(정정·손배청구) 김○○ 對 데일리시사닷컴
조 정 대 상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해임안 다룰 임시총회 소집공고』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회장 해임안을 다룰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터넷기자협회 임시총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0일자 사건/사고면)

2014서울조정12087	(반론청구) 재단법인 서울○○○○○○학교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단독]檢, ○○·○○직업학교 국비지원금 빼돌린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비를 더 타내기 위해 실제 훈련 실시 인원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檢, ○○·○○직업학교 국비지원금 빼돌린 정황 포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3일자)
2014서울조정12332 · 12333, 13192~13195	(정정·손배청구) 광○○ 對 KBS-1TV ^(12332·12333) , 오마이뉴스 ^(13192·13193) , 인터넷 일간스포츠 ^(13194·13195)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수도권 부대에서도 폭행확인』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6일자) • 오마이뉴스 : 『선임병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 동공 파열』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이번엔 김일병 사건, 이마 함몰-안구 파열』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군 복무중인 신청인이 후임병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오마이뉴스, 인터넷 일간스포츠/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KBS-1TV/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후임병 일방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26일자) • 오마이뉴스 : 『선임병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 동공 파열』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이번엔 김일병 사건, 이마 함몰-안구 파열』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경제면)
2014서울조정12334~12336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1인 對 한국인권
조 정 대 상	『인륜도 저버린 ○○ 경찰의 공권력 남용』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사회고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파출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이 관여된 폭행사건을 편향되게 처리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륜도 저버린 ○○ 경찰의 공권력 남용』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고발면)

2014서울조정12446~ 12451, 13883 · 1388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미디어 ^(12446 · 12447) , 인터넷 MBN ^(12448 · 12449) , 인터넷 JTBC ^(12450 · 12451) , JTBC ^(13883 · 13884)
조 정 대 상	• KBS미디어 : 『‘선거 앞두고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일당 기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일당 기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JTBC : 아침& 프로그램 『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허위 사실 유포한 7명 기소』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인터넷 JTBC 11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신청인 등 7명을 “일당”이라고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KBS미디어, 인터넷 MBN) • 조정성립 (JTBC, 인터넷 JTBC/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침& 프로그램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1월 21일자, 인터넷 JTBC 1월 21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2802~ 12805	(각 정정·반론청구) 장애인거주시설 ○○○ 對 동아일보 ^(12802 · 12803) , 동아닷컴 ^(12804 · 12805)
조 정 대 상	『‘서울판 도가니’에 세금 계속 지원할 판』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4년 11월 28일자 메트로면, 동아닷컴 1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및 보조금 횡령 관련 신청인 대응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4일자 뉴스면)
2014서울조정12806 · 12807	(정정·손배청구) 강남경찰서 외 1인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경찰, ‘분신 경비원’ 유족에 거짓 진술 요구... 가정 불화』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경찰서가 분신경비원 유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강남경찰서 분신 경비원 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2809 · 12810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조 정 대 상	『○○○○○○○, 주간사 선정 증권사명 무단도용?』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증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간사 선정입찰자료에 증권사의 이름을 무단 도용해 기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2811, 13637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외 1인 對 몬스터짐 ⁽¹²⁸¹¹⁾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³⁶³⁷⁾
조 정 대 상	- 몬스터짐 : 『○○ FC 석○○ 승리? 의혹만 남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0일자 격투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 『○○FC 이○○, 두차례 낭심 공격에 쓰러져...박○○ “빨리 일어나! XX야” 충격발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헤럴드 POP면) (2) 『박○○, 낭심 맞은 이○○에 욕설...‘일어나 XX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헤럴드 POP면)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개최한 종합격투기 시합에서 특정 선수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종합격투기 이벤트를 개최하는 ○○FC 부대표가 시합 중 급소를 맞고 쓰러진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몬스터짐/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헤럴드경제/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몬스터짐 : 『○○ FC 석○○ 승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격투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박○○ ○○FC 부대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7일자 헤럴드 POP면)
2014서울조정12812 · 12813	(반론 · 손해청구) ○○○○○○의학원 외 1인 對 인터넷 병원신문
조 정 대 상	『○○○○○○○의학원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학원 및 전임원장이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의학원에 무슨 일이’ 관련 기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0일자 병원면)

2014서울조정13330~1333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한변호사협회 對 문화일보 ^(13330~13332) , 인터넷 문화일보 ^(13333~13335)
조 정 대 상	『변협 집행부 ‘親민변’...징계회부 않을 수도』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4년 11월 6일자 10면, 인터넷 문화일보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상임이사회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변협 집행부 ‘친민변’...징계회부 않을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2월 5일 사회면, 인터넷 문화일보 2월 5일 사회면)
2014서울조정13336, 14329	(각 손배청구) 조OO 對 뉴스1코리아 ⁽¹³³³⁷⁾ , e머니투데이 ⁽¹⁴³²⁹⁾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구원파 “檢, 금수원 진입 허용했는데 왜 약속 어기나”』 제하의 기사중 사진 (2014년 6월 8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금수원 신도 검문검색 하는 경찰 ‘수배자는 어디에’』 제하의 사진 (2014년 6월 12일자 포토뉴스면)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중의 이익이 큰 보도로 위법성 조각에 해당)
2014서울조정13337~13340	(각 손배청구) 조OO 對 JTBC ⁽¹³³³⁷⁾ , 인터넷 JTBC ⁽¹³³³⁸⁾ , 연합뉴스 TV ⁽¹³³³⁹⁾ , 인터넷 연합뉴스 TV ⁽¹³³⁴⁰⁾
조 정 대 상	• JTBC : 종합뉴스 프로그램 『구원파 “약속 어겼다” vs 검찰 유병언 비호 중단하라』 제하의 보도 중 사진 (2014년 6월 8일자, 인터넷 JTBC 6월 8일자 뉴스면) • 연합뉴스 TV : 뉴스Y 프로그램 『유병언 아파트 200채 차명보유...추징보전 나서』 제하의 보도 중 사진 (2014년 6월 12일, 인터넷 연합뉴스TV 6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3341 · 13342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마니아리포트
조 정 대 상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김성민의 국내 복귀 타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야구면)
신청인 주장	모 야구선수의 에이전트인 신청인이 해당 선수의 해외학교 기숙사 비용을 체납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김○○의 국내 복귀 타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3일자 야구면)
2014서울조정13343, 13344, 13345	(각 반론청구) 박○○ 외 1인 對 뉴스앤조이 ⁽¹³³⁴³⁾ , KBS미디어 ⁽¹³³⁴⁵⁾ 박○○ 對 KBS미디어 ⁽¹³³⁴⁴⁾
조 정 대 상	• 뉴스앤조이 『‘구원파’ 박○○, 수백억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9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구원파’ 목사, 수백억대 주식사기 혐의 영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건강식품 업체의 실소유주이며 신도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뉴스앤조이 『‘구원파’ 박○○, 수백억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에 관련한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6일자 교계면) • KBS미디어 『박○○ 목사 “수사와 재판 과정서 진실 밝혀질 것”』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2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3634	(반론) 주식회사 ○○○○렌탈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렌트카, 보험들었는데...” 알고보니 호갱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손보업계면)
신청인 주장	렌터카 업체인 신청인이 불법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보도내용중 “제주도 렌터카를 비수기에는 하루 1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를 “제주도 렌터카를 비수기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로 수정

2014서울조정13635, 13636	(각 반론청구) 권○○ 對 서울신문 ⁽¹³⁶³⁵⁾ , 인터넷 서울신문 ⁽¹³⁶³⁶⁾
조 정 대 상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12년 악성 민원에 군위군 ‘몸살’』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4년 10월 23일자 29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신청인을 악성 민원인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서울조정14327, 14328	(각 손해청구) 김○○ 對 TV조선 ⁽¹⁴³²⁷⁾ , 인터넷 TV조선 ⁽¹⁴³²⁸⁾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검·경 ‘금수원 진입작전’ 어떻게 진행되나?』 제하의 보도 중 사진 (TV조선 2014년 6월 10일자, 인터넷 TV조선 6월 10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진압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서울조정14461~14494, 14601~14612, 14805~14834, 14839·14840, 15105~15120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일요신문 ^(14461·14462) , 인터넷 TV조선 ^(14463·14464, 14473·14474, 14817·14818, 14825~14828, 15115·15116) , 인터넷 YTN ^(14465·14466, 14809~14812, 15105~15108) , 뉴시스 ^(14467·14468, 14813·14814) , 연합뉴스 ^(14469·14470, 14829·14830, 15111·15112) , KBS미디어 ^(14471·14472, 14815·14816, 14833·14834) , 조선닷컴 ^(14475·14476, 14607·14608) , 스타투데이 ^(14477·14478) , iMBC ^(14479·14480, 15117·15118) , 인터넷 서울신문 ^(14481·14482) , wow한국경제TV ^(14483·14484) , 이투데이 ^(14485·14486) , 아주뉴스 ^(14487·14488) , 인터넷서울경제 ^(14489·14490) , 인터넷 MBN ^(14491~14494, 14611·14612, 14831·14832, 15109·15110) , 인터넷 메트로 ^(14601·14602) , 인터넷 연합뉴스TV ^(14603~14606, 14823·14824) , 아시아 경제닷컴 ^(14609·14610) , 동아닷컴 ^(14805~14808) , 뉴스1 ^(14819·14820, 15119·15120) , 인터넷 국민일보 ^(14821·14822) , 인터넷 SBS CNBC ^(14839·14840) , SBS 콘텐츠허브 ^(15113·15114)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요신문 : 『[핫스토리]유병언도피 돕는 ‘엄마’들 집중 추적』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TV조선 : 『금수원에서의 이틀, 아무것도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28건 • 인터넷 MBN : 『[SNG] “신엄마”, 유병언 소재 밝히나…형 유병일도 조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4일자 사회면) 외 28건 • 조선닷컴 : 『금수원 재진입했지만 빈손… 오늘 또 수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8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검·경, 금수원압수수색 재개 <현장연결>』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11건 • 아시아경제닷컴 : 『검·경 금수원 수색 재개…‘두 엄마’ 신병확보 할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6건 • 동아닷컴 : 『땅굴탐지기-헬기 투입하고도… 김엄마-신엄마 못잡아』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19건

	• 인터넷 YTN : 『금수원 이틀째 압수 수색...이번에도 ‘헛발질’?』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31건 • 뉴시스 : 『검·경, 신도 개별 신원확인 중...신도들 한때 반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외 21건 • KBS미디어 : 『해매는 검찰...비판 여론 고조』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외 19건 • 연합뉴스 : 『병언 도피 지원 ‘신엄마’ “자수하겠다” 檢에 통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7건 • 인터넷 채널A : 『유병언 최측근 ‘신엄마’ 자수...인천지검으로 이송』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11건 • iMBC : 『유병언 도피 총괄 혐의 ‘신엄마’ 검찰에 자수...친형 검거』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3건 • 인터넷 SBS CNBC : 『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자수”』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3일자 사회면) 외 9건 • SBS 콘텐츠허브 : 『유병언 여비서 구속...친형·‘신엄마’ 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5일자 사회면) 외 1건 • 뉴스1 : 『검경, 금수원 수색 재개...신도 200여명 ‘신원조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전국면) 외 1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의 도피를 주도하고, 금수원 근처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구원파 신도들에게 땅의 매입을 지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각하^(14461~14492, 14821·14822) (사유 : 조정신청기간 도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MBN, 인터넷 메트로, 뉴시스, 뉴스1/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조정성립 (조선닷컴, 인터넷 SBS CNBC/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아시아경제 닷컴, 연합뉴스/사유 : 보도약속) • 취하 (인터넷 연합뉴스 TV/사유 : 정정보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KBS미디어, SBS콘텐츠허브/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YTN/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동아닷컴, 인터넷 TV조선, 인터넷 채널A, iMBC)
이 행 결 과	• 뉴스1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메트로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뉴시스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외 6개 매체

2014서울조정14841~14843	(정정·반론·손배청구) 서초경찰서 외 1인 對 MBN
조 정 대 상	8시 저녁뉴스 프로그램 『[단독]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무리한 병원 압수수색으로 전신마취를 한 상태의 환자수술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4서울조정15101·15102, 15103, 15104	(각 손배청구) 박○○ 對 YTN ⁽¹⁵¹⁰¹⁾ , 인터넷 YTN ⁽¹⁵¹⁰²⁾ 정○○ ⁽¹⁵¹⁰³⁾ , 심○○ ⁽¹⁵¹⁰⁴⁾ 對 MBN
조 정 대 상	• YTN : 24시 뉴스 프로그램 『구원파,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포럼” 개최』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5일자, 인터넷 YTN 6월 15일자 뉴스면) • MBN : 일요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구원파,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포럼』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포럼에 참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YTN, 인터넷 YTN/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유감표명이 담긴 공문을 신청인에게 우편발송 • 조정불성립결정 (MBN)
이 행 결 과	유감표명
2014서울조정15121~15126	(각 정정·추후·손배청구) 정○○ 외 4인 對 MBN ^(15121~15123) , 인터넷 MBN ^(15124~15126)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대학서 남학생 3명 집단 성추행』 제하의 기사 (MBN 2014년 10월 6일자, 인터넷 MBN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 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5127~ 15160	(각 추후·손배청구) 엄○○ 對 YTN^(15127·15128), 인터넷YTN^(15129·15130), 뉴스1코리아^(15131·15132), 노컷뉴스^(15133·15134), 뉴시스^(15135·15136), 동아닷컴^(15137·15138), 매경닷컴^(15139·15140), 세계닷컴^(15141·15142), 아시아투데이닷컴^(15143·15144), 연합뉴스^(15145·15146), 인터넷 경향신문^(15147·15148), 인터넷 서울신문^(15149·15150), 인터넷 한겨레^(15151·15152), 인터넷 헤럴드경제^(15153·15154), 인터넷 한국일보^(15155·15156),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15157·15158), 인터넷 서울경제^(15159·15160)
조 정 대 상	• YTN : 뉴스 프로그램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제하의 보도 (2013년 2월 18일자, 인터넷 YTN 2월 1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귀었나”』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8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아빠랑 사귀었니?”…검사가 피해女에게 ‘2차 가해발언’』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17일자 사회면) • 뉴시스 : 『검찰, 의붓아버지 성폭행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귀었지”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성폭행당한 소녀, 검사 발언에 2차 피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사회면) • 매경닷컴 : 『성폭력 피해 여고생에 담당女검사 막말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너 아빠랑 사귀었지?” 검사가 한다는 말이…』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사회면) 외 1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의붓딸을 성폭행 했다고 보도됐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YTN, 인터넷 YTN, 뉴스1코리아, 노컷뉴스, 뉴시스, 동아닷컴, 매경닷컴, 세계닷컴, 연합뉴스,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한국일보,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 인터넷 서울경제) • 취하 (아시아투데이닷컴/사유 : 자진취하)
2014서울조정15345~ 15347	(손배청구) 대한○○교 장로회 ○○교회 외 1인 對 뉴스미션
조 정 대 상	『사이비목사 부자, 집단혼음 등 엽기성범죄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 담임목사가 가족 및 신도들과 마약을 투여하고 혼음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518 · 15519	(정정·손배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천여명 추가공개』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다시보기 중 신청인 건물 부분 삭제 편집
이 행 결 과	뉴스광장 프로그램 『서울 서초구 건물주 “지방세 체납과 관련 없어”』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31일자)
2014서울조정15969 · 15970	(정정·반론청구) 최○○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기자의 눈] 검찰 ‘사채왕 뒷돈’ 의혹 판사 내사만 6개월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3일자 사회면) (2) 『檢 ‘사채왕 돈’ 받은 판사 관련 제보 신빙성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현직 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4서울조정15971, 15972	(각 정정청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對 한국일보 ⁽¹⁵⁹⁷¹⁾ , 인터넷 한국일보 ⁽¹⁵⁹⁷²⁾
조 정 대 상	『경찰 성급한 보도자료 탓에 누명 쓴 유명 심마니』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12월 17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국산 농약 산양삼 밀반입 사건관련 수사를 잘못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경찰 성급한 보도자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월 23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23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5973~15976, 15979·15980, 16829~16832, 17724~17729	(각 정정·손배청구) 대한예수교○○회 ○○교회 외 1인 對 뉴스앤조이^(15973·15974), 프레시안^(15975·15976), 당당뉴스^(15979·15980), 한국기독일보^(16829·16830), kidok.com^(16831·16832), 오마이뉴스^(17724·17725), 시포커스^(17726·17727), 뉴스천지^(17728·17729)
조 정 대 상	• 뉴스앤조이 : 『○○교회 前 재정장로 의문의 자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1일자 교계면) • 프레시안 : 『○○교회 전 재정장로 의문의 자살...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1일자 뉴스면) 외 3건 • 당당뉴스 : 『○○교회 전 재정장로 의문의 자살...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2일자 교계면) 외 6건 • 한국기독일보 : 『○○교회 수석장로 의문의 자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교계면) 외 4건 • kidok.com : 『○○교회 전 재정장로...투신자살에 교계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교계면) 외 1건 • 오마이뉴스 : 『장로 자살사망... 비자금 논란 휩싸인 ○○교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사회면) • 시포커스 : 『사랑의, ○○교회 갱신위, 일간지에 내부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9일자 교계면) 외 1건 • 뉴스천지 : 『○○교회 김○○ 목사에게 보상 받아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8일자 종교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뉴스천지/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뉴스앤조이, kidok.com, 오마이뉴스) • 각 취하 (프레시안, 당당뉴스, 한국기독일보, 시포커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5981~16008	(각 정정·손배청구) 안○○ 對 KBS-1TV^(15981·15982), YTN^(15983·15984), 연합뉴스TV^(15985·15986), 채널A^(15987·15988), MBC-TV^(15989·15990), iMBC^(15991·15992), SBS콘텐츠허브^(15993·15994), 에너지경제^(15995·15996), 세계닷컴^(15997·15998), 뉴시스^(15999·16000), 동아일보^(16001·16002), 동아닷컴^(16003·16004), 조선일보^(16005·16006), 프리미엄조선^(16007·16008)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국산 농약 산양삼’ 속여 팔던 심마니 일당 적발』 제하의 보도 (2014년 월 일자) • YTN : 뉴스인 프로그램 『중국산 산양삼 팔다 걸린 ‘유명 심마니’』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9일자) • 연합뉴스TV : 뉴스워치 프로그램 『‘국내 최고’ 심마니, 중국산 삼 국산으로 속여 팔아』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9일자)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방송 탄 유명 심마니, 농약 범벅 산양삼을...』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9일자)

	• MBC-TV :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유명 심마니, 농약범벅 중국산 산양삼 국산으로 속여 팔아』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9일자) • SBS 콘텐츠허브 : 『살충제 농약 든 중국산 삼 국산으로 속인 심마니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사회면) • 에너지경제 : 『19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농약 든 중국산 삼이 국산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산업면) • 세계닷컴 : 『‘농약 범벅’ 중국산 산양삼 국산 둔갑 유통』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산업면) • 뉴시스 : 『‘농약 찌든 중국산 산양삼 국산 둔갑’… 경찰, 유명 심마니 등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사회면) • 동아일보 : 『계시 받은 심마니라더니… 중국산 속여 팔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0일자 14면, 동아닷컴 11월 20일자 사회면) • 조선일보 : 『그 심마니가 수상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0일자 A12면, 프리미엄조선 11월 20일자 사건과 스토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국산 농약 산양삼 밀반입 사건관련 수사를 잘못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 취하)
2014서울조정16381 (정정청구) 주식회사 ○○○○여행사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가짜 여행상품 신희부부 올려』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여행사가 가짜 여행상품 판매 사기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가짜 여행상품 신희부부 올려〉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iMBC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6382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외 3인 對 인터넷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1)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시급』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뉴스면) (2) 『○○마을 사업추진 타당성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3일자 뉴스면) (3) 『○○무한돌봄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0일자 뉴스면) (4) 『안성, 학생 50여명의 학교에 26억원 지원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금을 부담해야 하고,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서울조정16905, 16922	(각 정정청구) ○○대학교 병원 對 치의신보 ⁽¹⁶⁹⁰⁵⁾ , 데일리덴탈 ⁽¹⁶⁹²²⁾
조 정 대 상	『환자 몰아주는 의료브로커 활개』 제하의 기사 (치의신보 2014년 11월 17일자 3면, 데일리덴탈 11월 11일자 전체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 치과가 인터넷 카페와 연결되어 양약교정 환자를 유치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 이행방법 : 향후 신청인 관련 기사 작성 금지 약속
2014서울조정17003~ 17006	(각 정정청구) 재단법인 ○○○○연구원 對 경향신문 ⁽¹⁷⁰⁰³⁾ , 인터넷 경향신문 ⁽¹⁷⁰⁰⁴⁾ , 서울신문 ⁽¹⁷⁰⁰⁵⁾ , 인터넷 서울신문 ⁽¹⁷⁰⁰⁶⁾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동아시아연구원 “무급 인턴”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28일자 사회면) - 서울신문 : 『무급 인턴은 또 다른 형태의 임금 착취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9일자 23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29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구원이 국내외 교육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무급인턴제에 대해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동아시아연구원 ‘무급 인턴’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종합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21일자 사회면) - 서울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사회면, 인터넷 서울신문 1월 21일자 사회면)
2014서울조정17489 · 17490	(정정·손배청구) 정○○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美해병 덕에 생긴 국제시장, “정○○ 관람금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설립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기사 중 신청인에게 비판적인 제목과 내용 삭제
이 행 결 과	『[○○위원회 장진호 전투 기념비 예산삭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7730	(반론청구) 하태경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보수강경파 하태경, 야당 486에게 “종북혁명세력 비호안돼” 서한 보내』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9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학생운동권 출신인 신청인의 정치적 전향을 ‘변절’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청인부분 기사수정
2014서울조정17731~1773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모임 외 2인 對 레디앙 ^(17731~17733) , 오마이뉴스 ^(17734~17736)
조 정 대 상	• 오마이뉴스 : 『진보정당 남자들 ‘패권’ 심각...자기들만 모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정치면) • 레디앙 : 『성소수자와 진보정치 10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5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반여성주의 극우파 의견그룹’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오마이뉴스/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레디앙)
이 행 결 과	『“반여성주의적 활동을 하는 그룹”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4년 2월 2일자 정치면)
2014서울조정17737, 17738, 17742, 17743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이데일리 ⁽¹⁷⁷³⁷⁾ , 전자신문 인터넷 ⁽¹⁷⁷³⁸⁾ , 이버즈 ⁽¹⁷⁷⁴²⁾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¹⁷⁷⁴³⁾
조 정 대 상	• 이데일리 : 『기능성 베개, 라○○○-가○○ 원수된 사연』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기업면) • 전자신문 인터넷 : 『홈쇼핑 대박상품 ‘가○○ 베개’...의심스러운 인증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9일자 컨슈머면) • 이버즈 : 『[황의 홈쇼핑 들추기] 홈쇼핑 대박상품 “가○○ 베개” ... 부실 인증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정보가전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 가○○ 견연베개 형사고소 이어 공정위에도 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비인증 제품을 인증 받은 것으로 과장광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이버즈/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이데일리, 전자신문 인터넷/사유 :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게재) • 취하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이데일리 : 『[바로잡습니다] 2014년 12월 11일자 ○○○○-가○○ 관련 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중소기업면) • 전자신문 인터넷 : 『[반론보도] 티○○○, ‘가○○ 베개’ 부실 인증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생활가전면) • 이버즈 : 『[반론보도] 티○○○, ‘가○○ 베개’ 부실 인증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정보가전면)
2014서울조정17744	(반론청구) 대한○○교 장로회 ○○○○교회 對 기독교시민연대뉴스
조 정 대 상	『통합측 ○○노회 사무실서 신종협 회장 양○○ 목사가 난동부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7일자 로컬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서 미비)
2014서울조정17745~ 17750	(각 정정·반론청구)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對 JTBC ^(17745·17746) , 인터넷 JTBC ^(17747·17748) , e머니투데이 ^(17749·17750)
조 정 대 상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지속된 왕따에 주먹 날린 중학생…처벌은 ‘쌍방 징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5일자, 인터넷 JTBC 11월 25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왕따 피해 중학생, 가해 학생과 ‘쌍방 징계’…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교내 폭력사건의 피해 학생을 형평에 어긋나게 징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의 댓글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인터넷 JTBC)
이 행 결 과	• 인터넷 JTBC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5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왕따 피해 중학생, 가해 학생과 ‘쌍방징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지역중재부

< 부 산 >

2014부산조정1, 2	(각 추후청구) 이○○ 외 2인 對 국제신문 ⁽¹⁾ , 인터넷 국제신문 ⁽²⁾
조 정 대 상	『합천군 행정비방 유인물 유포자 검거』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3년 9월 16일자 12면, 인터넷 국제신문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군 행정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합천 행정 비판 유인물 유포자 무혐의 처리』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1월 28일자 12면, 인터넷 국제신문 1월 28일자 사회면)
2014부산조정3	(정정청구) 이○○ 對 뉴시스 울산
조 정 대 상	『울주군 신청사 건립예정지 일원 ‘토지투기장화’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0일자 전국 울산면)
신청인 주장	○○시 전직 고위공무원인 신청인이 마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전후로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울주군 신청사 건립예정지 일원 ‘토지투기장화’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4일자 전국면)
2014부산조정4, 5, 16, 17	(각 반론청구) 한○○ 對 부산일보 ⁽⁴⁾ , 인터넷 부산일보 ⁽⁵⁾ (각 정정청구) 한○○ 對 국제신문 ⁽¹⁶⁾ , 인터넷 국제신문 ⁽¹⁷⁾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학생 폭행 중징계 요구 받은 고교 교감, 이번엔 성추행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8면, 인터넷 부산일보 1월 9일자 사회면) - 국제신문 : 『학생 폭행 물의 교감 시교육청 해임 요구 재단은 가벼운 징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8일자 5면, 인터넷 국제신문 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 고등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신청인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이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한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부산일보 : 『학생 폭행 중징계 요구 받은 고교 교감, 이번엔 성추행 의혹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 12면, 인터넷 부산일보 4월 23일 사회면) - 국제신문 : 『“학생 폭행 물의 교감, 시교육청 해임 요구 재단은 가벼운 징계”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8면, 인터넷 국제신문 4월 30일자 사회면)

2014부산조정6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롯데리아 만우절 이벤트 영상 잇따라... 옴티머스 프라임 가면, 예비군 등 폭소만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게재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부산조정7	(정정청구) ○○○씨 대중중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씨 선산 무단벌채 원상회복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4일 경제면)
신청인 주장	부산시가 ○○정씨 ○○회가 관리하는 화자산에서 ○○회 동의 없이 무단 벌목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약속,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부산조정8~15	(각 추후청구) 노○○ 외 1인 對 인터넷 부산일보 ⁽⁸⁾ , 인터넷 울산매일 ⁽⁹⁾ , 인터넷 울산신문 ⁽¹⁰⁾ , 뉴시스 울산 ⁽¹¹⁾ , 뉴스1울산 ⁽¹²⁾ , 인터넷 울산방송 ⁽¹³⁾ , 인터넷 울산MBC-TV ⁽¹⁴⁾ , KBS-1TV ⁽¹⁵⁾
조 정 대 상	• 인터넷 부산일보 : 『울산 ○○○공원 수익사업 업체 선정 ‘비리 백화점’』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8면) • 인터넷 울산매일 : 『개원 전 ○○공원 수익사업 싸고 비리 1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1일자 5면) • 인터넷 울산신문 : 『○○공원 위탁업체 前 대표·주주 비리 덮기』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사회면) • 뉴시스 울산 : 『울산○○공원 위탁업체 비리 등 12명 입건』 (2013년 7월 31일자), 『르포 영화 뽕 ‘씨받이’ 찍던 울산 보삼마을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사회면) • 뉴스1울산 : 『○○공원 위탁, 금품수수 위장전입 총체적비리』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31일자)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종합장사시설인 울산○○공원의 운영권 위탁 과정에서 금품수수, 위장전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부산일보 : 『울산 하늘공원 금품수수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2일 사회면) • 인터넷 울산매일 : 『검찰, 하늘공원 수익사업 둘러싼 비리사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1일 사회면) • 인터넷 울산신문 : 『[울산하늘공원 위탁업체 전대표 주주비리 딜미]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 사회면) • 뉴시스 울산 : 『‘울산하늘공원 위탁업체 비리 등 12명 입건’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 사회면) • 뉴스1울산 : 『울산 하늘공원 위탁비리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 전국면) 외 3건
2014부산조정18~22, 23·24	(각 반론청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 1인 對 주간기장신문 ^(18, 20) , 인터넷 기장신문 ^(19, 21, 22) (반론·손배청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 1인 對 인터넷 기장신문 ^(23·24)
조 정 대 상	• 주간기장신문 : (1) 『새누리당 기장군수 공천신청자의 기장군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일자 3면) (2) 『오규석 군수·김쌍우 군의원, 한전과 별도 합의서 존재 공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6일자 1면) • 인터넷 기장신문 : (1) 『홍성률, “기장군 765kv, 인적물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6일자 정치면) (2) 『기장군 오규석 군수·김쌍우 군의원, 한전과 별도의 합의서 존재 공방』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6일자 정치면) (3) 『홍성률 후보, “이면합의 사실이면 오규석 기장군수 자격 미달”』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일자 정치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배신감과 갈등을 키우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전과 별도 합의서 존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기장신문 2014년 5월 27일자 2면, 인터넷 기장신문 5월 27일자 사회면)
2014부산조정25	(손배청구) (주)○○ 對 부산KBS-1TV
조 정 대 상	시선360 프로그램 『늘어나는 부산벽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시공한 벽화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부산조정26	(손배청구) 정○○ 對 부산KBS-1TV
조 정 대 상	시선360 프로그램 『늘어나는 부산벽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초상 및 실명 등을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생생투데이 사람과세상 프로그램 『벽화 그리는 사람들』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6일자)
2014부산조정27	(반론청구) (사)○○○○선교회 외 1인 對 인터넷 한국기독교신문
조 정 대 상	『이단 구원파 “○○○ 월드캠프”가 또 몰려온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교회가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단 구원파 ‘○○○ 월드캠프’가 또 몰려온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8일자 교계면)
2014부산조정28~35	(각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국제신문 ^(28·29, 32·33) 인터넷 국제신문 ^(30·31, 34·35)
조 정 대 상	(1) 『‘국제반’ 특목중 운영 물의... 시교육청, ○○학원 특별감사』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5월 3일자 종합 5면, 인터넷 국제신문 5월 3일자 사회면) (2) 『○○학원 이사장 감사·임원 승인 취소 시교육청, 브니엘예고 특별감사』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6월 19일자 사회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6월 19일자 사회면) (3) 『시교육청에 맞선 ○○○고...학생만 피해 중간고사 대체 시정명령 거부』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7월 3일자 사회 8면, 인터넷 국제신문 7월 3일자 사회면) (4) 『○○○○고 사태 장기화 조심...예술반 학부모, 부산예고로 전학 요구』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7월 11일자 사회 6면, 인터넷 국제신문 7월 11일자 사회면) (5) 『[기자수첩] ‘못된 사학’ 제재 못하는 사학법...학생들만 ‘불모’』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7월 14일자 사회 8면, 인터넷 국제신문 7월 14일자 사회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가 국제반, 특목중 운영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부산조정36~39	(추후·손배청구) 유○○ 외 1인 對 울산조은뉴스 ^(36·37) (정정·손배청구) 유○○ 외 1인 對 울산조은뉴스 ^(38·39)
조 정 대 상	(1) 『K일간지 근로기준법위반에 이어 이번엔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2) 『울산 모일간지 대표 사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등으로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최저 임금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신청인이 Y씨를 부당해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부산조정40·41	(정정·손배청구) ○○유치원 연합회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유치원聯, 6·4선거서 특정 교육감후보 지지 문자발송』 제하의 기사 외 2건 (2014년 7월 21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연합회 회장인 신청인이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 연합회가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부산조정42	(정정청구) (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똥 수거하는데도 비리?”... ‘상상초월’』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4일자 지역면) (2) 『분노수거업체 권리금이 10억?』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분노수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분노 처리량 등을 부풀려 부당요금을 받아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부산조정43	(정정청구) 재단법인 ○○○○○○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공원묘원 비석에 웬 ‘노란 딱지’?』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경남울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묘지구묘에 따라 고액의 영구관리비를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2014부산조정44~49, 54~58	(각 추후·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부산일보 ^(44·45, 58·59) , 뉴시스부산 ^(46·47, 54·55) , iKNN ^(48·49, 56·57)
조 정 대 상	- 인터넷 부산일보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아동센터 대표 부부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4일자 사회면) - 뉴시스부산 :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빼돌린 50대 부부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 iKNN : 『보조금 빼돌린 아동센터 대표 등 검거』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부산일보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아동센터 대표 부부 입건]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5일자 사회면) - 뉴시스부산 :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금 빼돌린 50대 부부 입건’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2일자 사회면) - iKNN : 『[보조금 빼돌린 아동센터 대표 등 검거]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2일자 뉴스면)
2014부산조정50~53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국제신문 ^(50·51) , 인터넷 국제신문 ^(52·53)
조 정 대 상	『감천항 시설 무단사용 업체, 고발당해도 ‘배짱영업’』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4년 10월 3일자 사회면, 인터넷 국제신문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바닷모래 세척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감천항 접안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부산조정76·77	(정정·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경상일보
조 정 대 상	『리뷰 : ○○ 의병 활약상 담은, ‘○○○○○○○○○○○○’』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2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작한 뮤지컬 작품이 준비기간이 짧아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리뷰 : 울산 ○○ 활약상 담은,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1일자 문화면)

2014부산조정78·79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자원봉사로 세월호 현장에서 잠수사 일을 했던 신청인이 언딘 마린인더스트리에서 일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4부산조정97·98	(정정·손배청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對 KNN
조 정 대 상	7시 뉴스아이 프로그램 『주택조합 거짓 홍보』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 홍보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후속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7시 뉴스아이 프로그램 『부동산 활황 타고 지역주택조합 급증』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2일자 뉴스면)

〈 대 구 〉

2014대구조정1~4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매일신문 ^(1·2) , 인터넷 매일신문 ^(3·4)
조 정 대 상	『공사업자·직원 부모가 원전 ○○위원』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인터넷 매일신문 2013년 12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원전 ○○위원이었던 신청인이 원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무자격자로 판명돼 ○○위원 자격이 취소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4대구조정5·6	(정정·손배청구) 권○○ 對 대구KBS-1TV
조 정 대 상	시선 오늘을 보다 프로그램 『대구 지역 요양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를 뺀다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선 오늘을 보다 프로그램 『대구 지역 요양원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12일자)
2014대구조정7	(손배청구) 서○○ 對 대구KBS-1TV
조 정 대 상	시선 오늘을 보다 프로그램 『대구 지역 요양원』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요양원에 있는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대구조정12	(정정청구) 재단법인 경북○○○○○ 對 대구MBC-TV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빌려주고 날린 돈 20억』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16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및 생활뉴스대구경북 프로그램 『빌려주고 날린 돈 20억』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기업에 빌려주고 날린 돈이 20억이나 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구조정8~11	(각 정정·손배청구) ○○일보 노동조합 對 매일신문 ^(8·9) , 인터넷 매일신문 ^(10·11)
조 정 대 상	『○○일보 노조 설립』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4년 1월 29일 7면, 인터넷 매일신문 1월 29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의 노조원 중 특정인이 “회사의 대주주가 지위를 악용해 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일보 노조 설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4년 2월 21일자 6면, 인터넷 매일신문 2월 21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13	(정정청구 ○○봉사단 對 인터넷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대구 상인○○○○○○○ 입주민 갈등』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에서 수천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구 ○○○○○○○○○ 입주민 갈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0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14	(정정청구) 최○○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운영자가 구타, 성폭력... 포항 장애인복지시설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장애인복지시설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여성장애인과 같은 숙소에 기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15	(정정청구) 영덕경찰서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변사자 물리는 장례식장』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3일자 대구/경북 10면)
신청인 주장	경찰이 영덕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변사사고 사망자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몰아줘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변사자 특정 장례식장 배정 의혹 경찰과 업자 간 유착, 관련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일자 11면)

2014대구조정16	(정정청구) 조○○ 對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3일자 사회-법원/경찰면)
신청인 주장	김○○ 선수의 주치의인 신청인이 의료기술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제목 수정)
이 행 결 과	『김○○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 책임 일부 패소』로 제목 수정 (2014년 4월 11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17	(손배청구) 전○○ 對 TBC-TV
조 정 대 상	2014 반려동물보고서 프로그램 (2014년 4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18	(정정청구) 고○○ 외 1인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대 임시 이사 체제 학교 정상화의 초석이 되어야』 제하의 사설 (2014년 3월 17일자 27면)
신청인 주장	○○대가 구 재단 측 이사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사회가 거듭 무산되며 선출된 총장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19·20, 21·22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경북일보 ^(19·20) , 인터넷 경북일보 ^(21·22)
조 정 대 상	(1) 『학교폭력위 불공정 시비 논란』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4년 4월 7일자 4면, 인터넷 경북일보 4월 7일자 사회면) (2) 『대구 ○○초교 학교폭력자치위 ‘편파 심의’ 확인』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4년 4월 10일 속보면, 인터넷 경북일보 4월 10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학교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학교폭력위 불공정 시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경북일보 2014년 6월 20일자 4면, 인터넷 경북일보 6월 20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23~30, 32 · 33, 34, 39 · 40, 43, 48	(각 정정·손배청구) 윤○○ 對 올인코리아 ^(23·24) ,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32·33) , 뉴시스 대구경북 ^(39·40) (각 정정청구) 윤○○ 對 대구신문 ⁽²⁵⁾ , 인터넷 대구신문 ⁽²⁶⁾ , 영남일보 ⁽²⁷⁾ , 인터넷 영남일보 ⁽²⁸⁾ , 경북일보 ⁽²⁹⁾ , 인터넷 경북일보 ⁽³⁰⁾ , 국제저널 ⁽³⁴⁾ , 인터넷 매일신문 ⁽⁴³⁾ , 인터넷 대구일보 ⁽⁴⁸⁾
조 정 대 상	• 올인코리아 : 『정의구현사제단 이어 법학 교수도 [망언]』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대구신문 : 『조○○, 윤 교수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대구신문 : 『“탈북자 사형 주장”...○○대 교수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영남일보 : 『대구권 교수 왜 이러나.... 잇단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영남일보 11월 28일자 사회면) • 경북일보 : 『○○대 ○○○ 교수 주장 파문 기사 삭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북일보 11월 28일자 사회면) 외 21건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SNS 대화방에서 탈북자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매일신문, 인터넷 대구일보, 올인코리아/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대구신문, 인터넷 대구신문,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뉴시스 대구경북, 국제저널/사유 : 정정보도, 기사삭제) • 취하 (경북일보, 인터넷 경북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 『“대한민국 전체 탈북자 사형시켜야” 발언 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6일 오피니언면) • 대구신문 : 『윤○○ ○○대 교수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1일 사회면, 인터넷 대구신문 5월 21일자 사회면) • 영남일보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 정치면, 인터넷 영남일보 5월 26일자 정치면) • 뉴시스 대구경북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30일 지역면) • 국제저널 :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9일 사회면)
2014대구조정31	(반론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직원 90%가 신도라는 ‘구원파’는 어떤 종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선교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기독교 복음침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대구조정35	(정정청구) ○○○○대학교 對 타임뉴스
조 정 대 상	(1) 『대구○○대 부실 국면전환 행각...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교육면) (2) 『대구○○대, 학생들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대구○○대의 ○○특화 캠퍼스설립이 실현가능성 없는 사기행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대구조정36, 38	(각 정정청구) 변○○ 對 타임뉴스 ⁽³⁶⁾ , UGN 경북뉴스 ⁽³⁸⁾
조 정 대 상	• 타임뉴스 : (1) 『대구○○대 친구에게 역대 리베이트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2) 『대구○○대 총장 10% 리베이트는 관행 ‘말썽’』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사회면) (3) 『대구○○대 ‘변 총장 물러나라!’ 여론급증』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사회면) • UGN 경북뉴스 : (1) 『끝없는 사학비리... 공사리베이트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1일자 사회면) (2) 『망자가 잡은 산 자의 발목 대구○○대 총장 거액리베이트 수수행적 ‘자격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4일자 사회면) (3) 『총장 자격논란’ 대구○○대 총장 각종 리베이트 수수행적 “말썽”』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구○○대 총장이 각종공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타임뉴스 : 조정성립 (타임뉴스/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UGN 경북뉴스)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대구조정41·42	(정정·손배청구)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 對 뉴시스 대구경북
조 정 대 상	(1) 『축사와 울타리를 같이 하고 있는 ○○○○○○병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지역면) (2) 『분리수거가 전무한 ○○○○○○병원』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지역면) (3) 『○○○○○○○병원 위생상태 불결』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지역면) (4) 『○○○○○○○병원 위생시설관리 엉망 환자들 겹고통』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지역면) (5) 『○○○○○○○병원 의료사고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위생, 시설관리가 엉망이어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44~47	(각 정정청구) 신○○ 對 인터넷 대구일보 ⁽⁴⁴⁾ , 인터넷 경안일보 ⁽⁴⁵⁾ , 씨앤비뉴스 ⁽⁴⁶⁾ , 뉴시스 대구경북 ⁽⁴⁷⁾
조 정 대 상	• 인터넷 대구일보 : 『○○대 임시이사회 재구성 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안일보 : 『○○대 “임시이사 재구성·확대 해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 씨앤비뉴스 : 『○○대, 임시이사회 재구성 요청』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 뉴시스 대구경북 : 『○○대, 교육부에 임시이사 재구성 등 요청』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교비횡령, 부정입학 등으로 비리를 저질러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겼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경안일보, 씨앤비뉴스, 뉴시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대구일보/사유 : 피신청인 사과)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안일보 : 『「○○대 “임시이사 재구성·확대 해달라”」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5일 사회면) • 씨앤비뉴스 : 『「○○대, 임시이사회 재구성 요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 사회면) • 뉴시스 : 불이행

2014대구조정49~52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경안일보 ^(49·50) , 인터넷 경안일보 ^(51·52)
조 정 대 상	『성주지역 대규모 세금포탈 ‘의혹’』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4년 6월 16일자 1면, 인터넷 경안일보 6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일삼아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구조정53		(정정청구) 지○○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대구조폭 의리·배신으로 얹힌 두 모습』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협박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해 보도하여 관련자들로부터 다시 보복의 위험을 받고 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대구조정54, 55		(각 정정청구) 하○○ 對 영남일보 ⁽⁵⁴⁾ , 인터넷 영남일보 ⁽⁵⁵⁾
조 정 대 상	『경로당 운영비 문제로 말다툼... 이웃 살해』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4년 7월 24일자 6면, 인터넷 영남일보 7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편인 신청인이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로당 운영비 문제로 말다툼... 이웃 살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4년 8월 20일자 6면, 인터넷 영남일보 8월 20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56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중부신문
조 정 대 상	『철탑, 댐 건설 필요없고 원전 대안으로 ‘뜯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아닌 자가 마치 신청인 회사 대표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대구조정57·58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대구경북
조 정 대 상	『사기 피소 ○○○고 출신 ‘좌완투수’ 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에이전트사 대표인 신청인이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 야구선수를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구 ○○○고 출신 김○○ 투수 ‘무혐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전국/대구경북면)
2014대구조정59~62	(각 정정·반론청구) ○○○○○○ 건립반대 대책위원회 對 매일신문 ^(59·60) , 인터넷 매일신문 ^(61·62)
조 정 대 상	『○○○○○○○ 건립 지역 예술계 찬반 논쟁』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4년 8월 23일자 15면, 인터넷 매일신문 8월 2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반일감정을 부추기거나 편협한 시각으로 주변부 문제를 거론하며 이우환 미술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대구조정63	(손배청구) 오○○ 외 1인 對 뉴시스 대구경북
조 정 대 상	『대구 치맥 페스티벌 “장마전선에도 이상 無”』 제하의 기사 중 사진 (2014년 7월 17일자 전국/대구경북면)
신청인 주장	치맥 페스티벌을 보도하면서, 행사를 구경하러 간 신청인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손해배상 8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및 기사 중 사진수정
2014대구조정79, 82	(각 정정청구)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對 대구광역일보 ⁽⁷⁹⁾ , 뉴시스 대구경북 ⁽⁸²⁾
조 정 대 상	- 대구광역일보 : 『○○○댐 건설 반대 주민 10명 ‘유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뉴시스 대구경북 : 『○○○댐 건설 반대 주민 10명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대구경북면)
신청인 주장	○○○댐 건설을 반대하는 신청인 단체가 영양군청에 인분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대구광역일보 : 『“○○○댐 건설 반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사회면) - 뉴시스 대구경북 : 『○○○댐 건설 반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6일자 전국/대구경북면)

2014대구조정83·84 (반론·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포항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퇴사하면 자녀입사 논란』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중인 “자녀대체입사제도”가 대기업의 일자리 대물림제도와 유사하고, 노조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 PR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경주, ‘자녀 대체입사제도’ 시행』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7일자)
2014대구조정93 (정정청구) 학교법인 ○○○○대학교 외 1인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텍 김○○ 총장 연임 결정 유보 ‘유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오피니언 기자수첩 섹션)
신청인 주장	○○○○대학교 이사장이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현 총장의 연임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텍 김○○ 총장 연임결정 유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오피니언/기자수첩면)
2014대구조정98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여중 정○○양 꿈, 삼성 응원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장학재단의 꿈 장학생으로 선발된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동의 없이 보도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자진취하)
2014대구조정101, 102 (각 정정청구) 김○○ 외 2인 對 뉴시스 대구경북 ⁽¹⁰¹⁾ , 대구광역일보 ⁽¹⁰²⁾	
조 정 대 상	• 뉴시스 대구경북 : 『공무원들이 빼먹는 한국시리즈 ‘야구표’』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5일자 지역면) • 대구광역일보 : 『배광식 북구청장, 김○○ 경제부시장 “야구표 구매 와”』 (2014년 11월 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한국시리즈 야구경기와 관련, 대구시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입장권을 인맥을 동원해 공짜로 받은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뉴시스 대구경북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대구광역일보/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뉴시스 대구경북 : 『한국시리즈 대구경기, 공무원 티켓 선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5일자 지역면) • 대구광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사회면)

2014대구조정113	(정정청구) 울진군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17억 들인 다리 이용자 둘뿐 군청 간부·군수 선거 운동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울진군이 군수 선거운동을 한 주민과 군청 핵심 간부, 두 사람을 위해 17억을 들여 발농사용 다리를 건설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광 주 〉

2014광주조정1~4	(각 정정청구) ○○○○조합 對 뉴스웨이 ⁽¹⁾ , 통합뉴스 ⁽²⁾ , CJ헬로비전 호남방송 ^(3,4)
조 정 대 상	• 뉴스웨이 : 『국민 건강 ‘위협’...스티커 장사 대한 ○○조합』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0일자 사회면) • 통합뉴스 : 『생산자 올리는 ○○○○조합 소금검사 제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8일자 사회면) • CJ헬로비전 호남방송 : 지역뉴스 프로그램 『‘천일염’ 검사 수수료만 챙겨』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소금의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스웨이, 통합뉴스/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CJ헬로비전 호남방송/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뉴스웨이 : 『[반론보도문] ‘국민 건강 위협...스티커장사 ○○○○조합’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사회일반면) • 통합뉴스 : 『‘생산자 올리는 ○○○○조합 소금검사 제도’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사회일반면)
2014광주조정5	(정정청구) ○○대학교 對 광주KBS-1TV
조 정 대 상	• 뉴스9 프로그램 『교육부 대학 평가안 개정, 지역대학 고사위기』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평가 결과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대학교 대학평가 결과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6일자)
2014광주조정6, 7, 14~17	(정정청구) 박○○ 對 호남매일 ⁽⁶⁾ , 인터넷 호남매일 ⁽⁷⁾ (정정·손배청구) 박○○ 對 호남매일 ^(14·15) , 인터넷 호남매일 ^(16·17)
조 정 대 상	『목포지역 신흥, 내부갈등 파문 확산조짐』 제하의 기사 (호남매일 2014년 2월 4일자 사회면, 인터넷 호남매일 2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 조합장인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14·15, 16·17)(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6, 7)(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호남매일 : 『‘목포지역 신흥, 내부갈등 파문....’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11면, 인터넷 호남매일 4월 18일자 사회면)

2014광주조정8, 9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외 4인 對 나주투데이 ⁽⁸⁾ , 인터넷 나주투데이 ⁽⁹⁾
조 정 대 상	• 나주투데이 : 『지금 나주는 석기시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3면) • 인터넷 나주투데이 : 『지금 나주는 석기시대? 환경 미화원 설날 전후 상가 돌며 떡값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6일자 사회/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나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설날 상가를 돌며 떡값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나주투데이 : 『“지금 나주는 석기시대? 환경 미화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7일자 3면, 인터넷 나주투데이 3월 10일자 사회/경제면)
2014광주조정10~13	(각 정정·손배청구) 염○○ 對 빛가람타임스 ^(10·11) , 인터넷 빛가람타임스 ^(12·13)
조 정 대 상	『“나주호 독 높이기 사업” 비상식적 준공』 제하의 기사 (빛가람타임스 2014년 3월 6일자 1면, 인터넷 빛가람타임스 3월 6일자 시민의 소리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나주호 독높이기 사업과 관련해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시공업체에서 제공한 기념품을 준공 전 입막음용으로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자진취하)
2014광주조정18	(정정청구) 조○○ 對 KDA뉴스
조 정 대 상	(1) 『[속보1]새누리 ○○시당 ○○○장 부정과 비리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8일자 정치면) (2) 『[속보2]새누리 ○○시당 200여 당직자와당원들의 서명운동 전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8일자 사건면) (3) 『[기자수첩]언론압력 ‘막가파식의 행태’에 분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31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 ○○시당 ○○○장인 신청인이 18대 대선 유세 차량을 독단적으로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19, 20	(각 정정청구) ○○○○협동조합 對 무등일보 ⁽¹⁹⁾ , 인터넷 무등일보 ⁽²⁰⁾
조 정 대 상	『“농협마트 주차장 부지 고가매입 논란”』 제하의 기사 (무등일보 2014년 4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무등일보 4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협이 주차장 부지를 고가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농협마트 주차장 부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무등일보 2014년 4월 28일자 7면, 인터넷 무등일보 4월 28일자 사회면)

2014광주조정21, 30~33	(정정청구) 유○○ 對 우리군민신문 ⁽²¹⁾ (각 정정·손배청구) 유○○ 對 우리군민신문 ^(30·31) ,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32·33)
조 정 대 상	• 우리군민신문 : (1) 『유○○ 군수 예비후보 시작부터 ‘불법선거’』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사회3면) (2) 『손○○ 2006년 선거 당시, 유○○ 후보에 거액 건넨 사실 증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6일자 3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5월 26일자 사회행정면)
신청인 주장	1. 군수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불법선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 군수 후보인 신청인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민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취하^(21,31,33) (사유 : 자진취하) • 조정성립^(30,32) (내용: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손○○ 2006년 선거 당시, 유두석 후보에게 거액 건넨 사실 증언]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4년 6월 16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6월 14일자 종합면)
2014광주조정22·23	(정정·손배청구) 박○○ 對 예방진도신문
조 정 대 상	『진도 문화재후보들 건공 짝짓기 스타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0일자 8면)
신청인 주장	국악인인 신청인이 치정에 관련된 싸움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진도 문화재후보들 건공 짝짓기 스타일?」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1면)
2014광주조정24·25	(정정·손배청구) 윤○○ 對 인터넷 광주타임즈
조 정 대 상	• 『게스트하우스 男사장, 면접 보러온 20대男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8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게스트하우스 업주인 신청인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찾아온 남성을 성추행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광주조정26~28	(각 정정청구) 담양군 對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1) 『군 투자유치 1호 ○○○테마파크 경매行』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일자 1면) (2)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캐수룩 ‘복마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8일자 1면) (3) 『메타가로수길 조례 ‘입장료’ 위법 가능성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1. 담양군이 투자 유치한 ○○○테마파크의 자본금이 3억원이며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담양군이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복합노인복지시설에 9억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3. 담양군이 법률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하고 메타세쿼이아길의 입장료를 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29	(정정청구) 순천시 對 순천광장신문
조 정 대 상	『봉화산 둘레길, 거짓 해명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순천시가 봉화산 둘레길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지 않아도 되는 부지를 매입하고,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34·35, 38~51, 74·75	(각 정정·손배청구) 맹○○ 對 파인뉴스 ^(34·35) , 화순투데이 ^(38·39, 50·51) , 남도타임즈 ^(40·41) , 뉴스투데이한국 ^(42·43, 48·49, 74·75) , 무등일보 ^(44·45) , 인터넷 무등일보 ^(46·47)
조 정 대 상	- 파인뉴스 : (1) 『○○○유통(주) 악성민원, 대표 사의로 파문』 (2014년 7월 14일자 탐뉴스면) (2)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7월 15일자 탐뉴스면) (3) 『〈社說〉“미친 황소, 갈 곳은 屠殺場 뿐 이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7일자 칼럼면) - 화순투데이 : (1) 『○○○○○유통(주) 악성민원에 대표자 사의표명 파문』 (2014년 7월 12일자 인물면) (2) 『‘○○○○○유통(주)’ 지속적 음해 인사 사법적 대응키로』 (2014년 8월 14일자 사회면) - 남도타임즈 : 『○○○○○유통(주) 악성민원에 대표자 사의표명 파문』 (2014년 7월 14일자 사회면) - 뉴스투데이 : 『○○○○○유통(주) 악성민원에 대표자 사의표명 파문』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무등일보 : 『소송에 멎든 ‘한약초 메카 화순’』 (2014년 8월 7일자 1면, 인터넷 무등일보 8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지역 국책사업에 대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의 (주)○○○○유통에 대한 민원이 거짓 내용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36, 37	(각 정정청구) (주)○○ 對 장성뉴스 ⁽³⁶⁾ , 인터넷 호남신문 ⁽³⁷⁾
조 정 대 상	- 장성뉴스 : 『郡 ○○강 생태복원사업 부당 행정 “파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사회경제면) - 인터넷 호남신문 : 『장성군 ○○강 생태복원사업 부당 행정 ‘파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7일자 탐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강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공고일 하루 전에 사업주소지를 이전하여 사업에 참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자진취하)
2014광주조정52	(정정청구) (사)○○○○○○○○○○연합회 對 남도일보
조 정 대 상	『○○○○○○○○協 운영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회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애안協 운영 갈등 심화’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2면)
2014광주조정53 · 54	(정정 · 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시민의소리
조 정 대 상	(1) 『김○○ 채용논문 ‘표절 아니다’ 판정』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교육면) (2) 『김○○, 채용논문 표절인가, 판정이 조작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교수채용 관련 논문 표절 판정 결과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55·56	(정정·손배청구) 김○○ 외 3인 對 인터넷 시민의소리
조 정 대 상	(1) 『조선대, ‘김○○ 논문’ 심사과정 조작 ‘인정’』 (2014년 7월 9일자 교육면) (2) 『재판부, 조선대는 김○○ ‘교수 임용절차’ 이행해야』 (2014년 8월 28일자 1면, 지역 소식면) (3) 『조선대 설립정신 훼손, 매듭짓고 가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1면,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교수채용 관련 논문 표절 판정 결과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광주조정59	(추후청구) 장○○ 對 KBC-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특화시장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케이드 상가를 불법 분양한 의혹이 있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광주조정60~64, 68~72	(각 추후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⁶⁰⁾ , 여수MBC-TV ⁽⁶¹⁾ , 인터넷 광남일보 ⁽⁶²⁾ , 인터넷 광주타임즈 ⁽⁶³⁾ , 인터넷 남도일보 ⁽⁶⁴⁾ , 인터넷 전남일보 ⁽⁶⁸⁾ , 인터넷 호남매일 ⁽⁶⁹⁾ , 아침신문 ⁽⁷⁰⁾ , 남도인터넷방송 ⁽⁷¹⁾ , 여수인터넷뉴스 ⁽⁷²⁾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지지 안했다”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광주 전남면) • 여수MBC-TV : 7시뉴스 프로그램 『“경쟁후보 도왔다” 현역도의원 폭행』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2일자) • 인터넷 광남일보 : 『“지방선거서 지지 안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광주타임즈 : 『“지지 안했지” 술병 휘두른 시의원 낙선자』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이슈&쟁점면) • 인터넷 남도일보 :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도의원에 낙선한 신청인이 전 도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스1코리아, 인터넷 남도일보, 인터넷 전남일보/내용 :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여수MBC-TV, 인터넷 광남일보, 인터넷 광주타임즈, 인터넷 호남매일, 남도인터넷방송, 여수인터넷뉴스/사유 : 추후보도) • 취하 (아침신문/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前 ○○시의원 폭행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광주전남면) • 여수MBC-TV : 『맥주병 폭행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0일자 MBC 이브닝 뉴스) • 인터넷 광남일보 : 『○○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전남경찰청, 사건처리 적정여부 감찰』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10면) • 인터넷 광주타임즈 : 『○○ 전직 지방의원들 ‘맥주병 폭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10면) • 인터넷 남도일보 : 『○○ 도의원 출마자 폭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8면, 사회면) • 인터넷 전남일보 : 『지방선거 맥주병 폭행 前 ○○시의원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5면, 사회면) • 인터넷 호남매일 : 『○○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15면, 아침신문 12월 11일자 사회면, 남도인터넷방송 12월 12일자 사회면, 여수인터넷뉴스 12월 11일자 여수뉴스면)
2014광주조정73	(정정청구) ○○○○협동조합 對 뉴스투데이한국
조 정 대 상	『L조합장 경제팀에 “확인서 작성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협 조합장이 직원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사람사는 세상면)
2014광주조정76, 77	(각 정정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전남매일 ⁽⁷⁶⁾ , 인터넷 전남매일 ⁽⁷⁷⁾
조 정 대 상	『비위총장 퇴진요구 학생제적 물의』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4년 11월 4일자 사회면, 인터넷 전남매일 11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총장 퇴진 요구를 주도한 학생을 총장 직권으로 제적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검찰 ○○대 총장 성추행 ‘무혐의’ 처분 총장직권으로 학생 제적 처리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5년 1월 16일자 7면, 인터넷 전남매일 1월 16일자 사회면)
2014광주조정82·83	(정정·손배청구) ○○○노무법인 對 광주KBS-1TV
조 정 대 상	시사현장 맥 프로그램 『노동계의 검은 손 노피아』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무법인 노무사들이 노동청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대 전 >

2014대전조정1, 2	(각 정정청구) 권○○ 對 중도일보 ⁽¹⁾ , 인터넷 중도일보 ⁽²⁾
조 정 대 상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6면, 인터넷 중도일보 1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혐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3~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의료법인 ○○○○○○ ○○○○병원 對 세종매일 ^(3~5) , 인터넷 세종매일 ^(6~8)
조 정 대 상	『‘거래회사 약 아니면 취급안합니다.’ 백의의 천사…환자 질병 빌미로 부당 수익 챙기는 의사들의 부도덕인가?』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3년 12월 27일자 1면, 인터넷 세종매일 12월 26일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거래회사의 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자의 처방전 발급을 거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병원 환자 건강 외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4년 1월 24일자 2면, 인터넷 세종매일 1월 23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9	(추후청구) 한○○ 對 인터넷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대 교수 형사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신청인이 거액 기금손실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10	(정정청구) 정○○ 對 뉴스파고
조 정 대 상	『정○○ 예비후보 현수막 도난 사건 뻘히 드러난 내막』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도지사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현수막을 도난당한 것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대전조정11, 12		(각 정정청구) 가○○ 對 태안미래신문 ⁽¹¹⁾ , 태안미래 ⁽¹²⁾
조 정 대 상	『○○군수 무주공산』 제하의 기사 (태안미래신문 2014년 3월 6일자 사회면, 태안미래 3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군수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새누리당 중앙위 분과부위원장에서 면직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가○○ 후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태안미래신문 2014년 4월 17일자 1면, 태안미래 4월 12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13		(손배청구) 김○○ 對 대전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5월 중순 기온... 벚꽃 개화』 제하의 보도 중 영상 (2014년 3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기상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영상삭제)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대전조정14, 15		(각 정정청구) ○○○○○○조합추진위원회 對 세종nTV ⁽¹⁴⁾ , 인터넷 충청신문 ⁽¹⁵⁾
조 정 대 상	- 세종nTV : 『○○구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관련 주민설명회!』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5일자 대전면) - 인터넷 충청신문 : 『지역주택조합, 서민올리는 사기분양될 것』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뉴스/이슈면)	
신청인 주장	○○○○ 주택조합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전조정16		(손배청구) 임○○ 對 대전KBS-1TV
조 정 대 상	9시 대전뉴스 프로그램 『신청인이 건설사 관계자와 연쟁하고 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건설사 관계자와 연쟁하고 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금액지급	

2014대전조정17·18	(정정·손배청구) 송○○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동구청 고위 공직자 대형 비리 사건 혐의 경찰 촉각』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허가 및 인사와 관련한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전조정19, 20	(각 정정청구) 신○○ 對 중도일보 ⁽¹⁹⁾ , 인터넷 중도일보 ⁽²⁰⁾
조 정 대 상	『여강사 성폭행 의혹 대학 총장 논란』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4년 3월 5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도일보 3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17년 전 미국인 여강사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4년 6월 23일자 지역면, 인터넷 중도일보 6월 23일자 초기화면)
2014대전조정21~23	(반론·손배청구) 이○○ 對 충청투데이 ^(21·22) (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²³⁾
조 정 대 상	『새누리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잡음』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4년 5월 8일자 2A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로 누락시 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새누리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제출 누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4년 6월 23일자 2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6월 23일자 초기화면)
2014대전조정24~53	(각 정정·손배청구) ○○○○○노동조합 對 MBS미니방송 ^(24·25) , 뉴스충청인 ^(26·27) , 뉴스클릭 ^(28·29) , 대전 인터넷신문 ^(30·31) , 인터넷 대전일보 ^(32·33) , 인터넷 대전투데이 ^(34·35) , 타임뉴스 ^(36·37) , 인터넷 중도일보 ^(38·39) , 인터넷 충남일보 ^(40·41) , 인터넷 충청경제일보 ^(42·43) , 인터넷 충청투데이 ^(44·45) , 충청TV ^(46·47) , 세종방송 ^(48·49) , 세종인터넷신문 ^(50·51) , 특급뉴스 ^(52·53)
조 정 대 상	• MBS미니방송 :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건설부문 지지단체 이어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뉴스충청인·인터넷 충남일보·충청TV·세종인터넷신문·특급뉴스 6월 1일자 사회면) • 뉴스클릭 :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단체 줄이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대전인터넷신문·타임뉴스·인터넷 충청경제일보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대전일보 : 『지지세 총집결 막바지 세몰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대전투데이 : 『○○○○○○세종시연합회 유한식 후보 지지 선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도일보 : 『“지지총 결집만이 살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충청투데이 : 『세종시장 후보, 표심얻기 동분서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 세종방송 : 『○○○○ 세종시연합회 유한식 후보 지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MBS 미니방송, 인터넷 대전일보, 인터넷 충청투데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조정성립 (뉴스충청인/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각 취하 (뉴스클릭, 대전인터넷신문, 인터넷 대전투데이, 타임뉴스, 인터넷 중도일보, 인터넷 충남일보, 인터넷 충청경제일보, 충청TV, 세종방송, 세종인터넷신문, 특급뉴스/사유 : 정정보도,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MBS 미니방송 : 『[정정보도문] ○○○○산업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사회면, 뉴스충청인 7월 21일자 사회면) • 뉴스 클릭 : 『[바로잡습니다] 2014년 6월 1일자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8일자 지역면) • 대전 인터넷신문 : 『“○○○○산업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뉴스종합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2014년 7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대전일보 : 『“지지세 총집결 막바지 세몰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사회면) • 타임뉴스 : 『[정정보도문] ○○○○산업노동조합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경제일보 7월 18일자 뉴스면, 세종방송 2014년 7월 15일 정치행정면) • 인터넷 중도일보 : 『[바로잡습니다] 6월 2일자 3면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뉴스면, 특급뉴스 2014년 7월 11일자 뉴스면) • 인터넷 충남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지역뉴스면) • 인터넷충청투데이 : 『“세종시장후보 표심얻기 동분서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사회면) • 충청TV : 『“○○○○산업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속보면)

2014대전조정54, 55	(각 정정보도) ○○○○ 주식회사 對 주간 당진시대 ⁽⁵⁴⁾ ,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⁵⁵⁾
조 정 대 상	『발전소·제철소 인근 주민들 위험』 제하의 기사 (당진시대 2014년 7월 7일자 4면,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7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충남지역 건강영향 조사 결과 ○○제철 주변의 주민건강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발전소·제철소 인근 주민들 위험』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 당진시대 2014년 8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8월 18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56·57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1) 『‘진짜 사나이’ 속인 가짜 도시락…저가 수입 식자재 국산 둔갑』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2) 『구멍 뚫린 예비군 도시락 원산지도 모르고 먹는다』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저가 수입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도시락을 납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전조정58~61	(정정·반론청구) 설○○ 對 충청신문 ^(58·59) , 인터넷 충청신문 ^(60·61)
조 정 대 상	(1) 『학교 악기입찰에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신문 8월 1일자 사회면) (2) 『한통속 회사가 절반 독식』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신문 8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악기사가 대전 시내 학교 악기 입찰 중 절반가량을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학교 악기입찰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신문 2014년 9월 22일자 2면, 인터넷 충청신문 9월 20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70~73	(각 정정·손배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對 세종포스트 ^(70·71) , 인터넷 세종포스트 ^(72·73)
조 정 대 상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비리, 세종시에서도…』 제하의 기사 (세종포스트 2014년 10월 24일자 4면, 인터넷 세종포스트 10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리베이트 상납 의혹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비리, 세종시에서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1면, 인터넷 세종포스트 12월 1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78~81	(각 정정·손배청구) ○○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對 중도일보 ^(78·79) , 인터넷 중도일보 ^(80·81)
조 정 대 상	- 중도일보 : 『○○○○유공자회 세종지회장, 보조금 횡령 등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일자 2면) - 인터넷 중도일보 : 『○○○ 행사 용역업체 선정 잡음』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3일자 종합뉴스면)
신청인 주장	○○○ 행사 용역업체 선정관련 잡음을 일으킨 업체대표가 신청인 학과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행사 용역업체 선정 잡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4년 12월 11일자 2면, 인터넷 중도일보 12월 11일자 종합뉴스면)
2014대전조정82, 83	(각 정정청구) 황○○ 외 1인 對 충남일보 ⁽⁸²⁾ , 인터넷 충남일보 ⁽⁸³⁾
조 정 대 상	『○○○○유공자회 세종지회장, 보조금 횡령 등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1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1일자 종합뉴스면) 『○○○○유공자회 세종지회 폐쇄』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6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6일자 종합뉴스면) 『○○○○유공자회 세종지회장 비리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8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8일자 종합뉴스면) 『○○○○유공자회 세종지회장 ‘(사)○○○’ 후원금 세탁 ‘의혹’』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13일자 종합뉴스면) 『○○○회 세종지회, 백여곳 넘는 단체 후원금 어디에 쓰나』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4년 10월 15일자 1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15일자 종합뉴스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유공자회 세종지회장인 신청인이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를 범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종결처리 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대전조정84	(정정청구) 주식회사 ○○교통 對 예산신문
조 정 대 상	『달리는 시한폭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버스회사가 다른 지역회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차량부품을 자주 교체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교통, 낮은 임금 속 차량 불법개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5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87, 88	(정정청구) ○○교통 주식회사 對 세종매일 ⁽⁸⁷⁾ , 인터넷 세종매일 ⁽⁸⁸⁾
조 정 대 상	『○○교통(주) 보조금 부풀려 허위 문서 제출 ‘공문서 위조’』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4년 11월 25일자 1면, 인터넷 세종매일 11월 25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운수회사가 임금협상 문건을 조작해 보조금을 과다 신청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5년 1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세종매일 1월 23일자 사회면)
2014대전조정89·90	(정정·손배청구) 최○○ 對 NEWS충남일보
조 정 대 상	『청주 동남지구택지개발 원주민 ‘분통’』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출자금을 빼돌려 조합장에서 제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 경 기 〉

2014경기조정1~4	(각 정정·반론청구) 이○○ 對 OBS경인TV ^(1·2) , 인터넷 OBS경인TV ^(3·4)
조 정 대 상	『이○○, 공공기관 ‘공짜’(?)사용 ‘물의’』 제하의 보도 (OBS경인TV 2013년 12월 19일자, 인터넷 OBS경인TV 12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5·6	(반론·손배청구) 신○○ 對 기독교 포털뉴스
조 정 대 상	『자칭 하나님설’ 신○○, 사기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9일자 바른 신앙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자칭 하나님설’을 주장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되지 않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신○○ 목사 사기혐의 피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2일자 바른 신앙면)
2014경기조정7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인천지역 일부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낭비 우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낭비 우려’ 관련기사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9면)
2014경기조정8	(손배청구) 임○○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1) 『○○시립교향악단 이대로는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0일자 오피니언면) (2)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일자 오피니언면) (3) 『○○시립교향악단 이견 정말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오피니언면) (4) 『○○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성남시의 입장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9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임명된 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4경기조정9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조직의 치부 드러냈다고 조직의 쓴맛 보여주려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특정교사의 공식적인 업무출장을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보복성 처분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경기조정10~17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인천 ^(10·11) , 인터넷 경기신문 ^(12·13) , 인터넷 경기매일 ^(14·15) , 인터넷 수도권일보 ^(16·17)
조 정 대 상	• 뉴시스 인천 : 『불법부착물 업체 ‘로비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인천면) • 인터넷 경기신문 : (1) 『불법부착물 업체 ‘로비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뉴스면) (2) 『부천 불법부착물 방지사업 업체 로비 의혹 포착』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뉴스면) (3) 『업체서 ‘전방위 로비’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한 의혹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기신문 2014년 2월 6일자 지역면, 뉴시스 인천 2월 6일자 인천면)
2014경기조정18, 19	(각 정정청구) (사)○○○○○○협회 對 경인일보 ⁽¹⁸⁾ , 인터넷 경인일보 ⁽¹⁹⁾
조 정 대 상	『동물보호단체가 수렵권 장사』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1월 20일자 1면, 인터넷 경인일보 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동물 보호는 뒷전인 채 ‘유해조수 대리포획 허가권’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협회 ‘대리포획 허가권 의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2월 14일자 2면, 인터넷 경인일보 2월 14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20, 21	(각 손해청구) 김○○ 對 광명지역신문 ⁽²⁰⁾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²¹⁾
조 정 대 상	『지금까지 시장, 국회의원은 뭘 했나?』 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 2014년 2월 11일자 1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2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까지 동원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22, 23	(각 반론청구) 박○○ 對 반월신문 ⁽²²⁾ , 인터넷 반월신문 ⁽²³⁾
조 정 대 상	- 반월신문 : 『안산○○○○센터 어린이집 P원장 교사에 ‘당비 대납… 민주당 가입’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23면, 인터넷 반월신문 1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반월신문 : 『안산○○○○센터 어린이집 P원장 “민주당 가입 권유… 사실이다” 인정 “가입신청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말 못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교사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24·25, 26·27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협회 對 현대일보 ^(24·25) , 인터넷 현대일보 ^(26·27)
조 정 대 상	『인천 ○○동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4년 2월 18일자 1면, 인터넷 현대일보 2월 18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골재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을 설치 후 추가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 서구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4년 3월 13일자 2면, 인터넷 현대일보 3월 13일자 종합면)

2014경기조정28, 29	(각 반론청구) ○○대학교 對 경기신문 ⁽²⁸⁾ , 인터넷 경기신문 ⁽²⁹⁾
조 정 대 상	(1) 『○○대, 병원 빙자 ‘땅장사’ 의혹』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10일자,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0일자 사회면) (2) 『○○대 병원부지 매각 ‘학교 맘대로’』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11일자,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1일자 사회면) (3) 『○○대, ‘합법적 땅장사’ 의혹』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12일자,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2일자 사회면) (4) 『○○대, 병원 건립계획 학내불만 덮고 이미지 개선 ‘2중포석’』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2월 17일자, 인터넷 경기신문 2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용인시 국제캠퍼스 내 대규모 병원 건립을 발표한 이후 사실상 6년째 사업을 방치하고 있으며, ‘땅 장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병원 건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4년 3월 12일자 2면, 인터넷 경기신문 3월 11일자 뉴스 종합면)
2014경기조정30	(반론청구) ○○○○○○○○생활센터 對 뉴시스 경기남부
조 정 대 상	『용인시, 시청 앞 농성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의회』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일정한 예산집행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용인시, 시청 앞 농성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의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6일자 경기남부면)
2014경기조정31 · 32	(정정 · 손해청구) (주)○○건설 외 1인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단독)서산 ○○○○○ CC 매각 파문...750여억 회원권, 피해입나』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2일자 사회면) (2) 『“750억 내놔!” 서산 ○○○○ 회원, 비대위 구성...25일 항의방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4일자 사회면) (3) 『(포토)서산 ○○○○ CC 비대위, “○○·○○건설은 사기꾼들”』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4) 『(포토)“내 피같은 돈, 다시 가져와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5) 『(포토)“○○ 회장은 처먹은 돈 즉각 토해내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과거에 소유했던 ○○○○ CC 서산골프장에 대해 입회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용인시, 시청 앞 농성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의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6일자 경기남부면)

2014경기조정33~36, 108, 132, 133, 257, 350, 351	(각 정정·손배청구) 광명시 외 2인 對 광명지역신문 ^(33·34)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35·36) (각 정정청구) 광명시 對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¹⁰⁸⁾ , 현대일보 ⁽¹³²⁾ , 인터넷 현대일보 ⁽¹³³⁾ , 온나라타임즈 ⁽²⁵⁷⁾ , 광명지역신문 ⁽³⁵⁰⁾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³⁵¹⁾
조 정 대 상	• 광명지역신문^(33·34) : 『“돈 받고 여론조사했다” 녹취록 나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1면) • 광명지역신문⁽³⁵⁰⁾ : 『시장이 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다른 말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35·36) : 『양 시장 지지율 높이려고 언론사 사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광명지역신문⁽³⁵¹⁾ : 『뉴타운 엇갈리는 해명, 경기도와 광명시 중 누가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3일자) ·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 『여전한 불법건축물들, 왜?... ‘몇백만원씩 건넸다. 나만 그랬겠나?’』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사회면) • 현대일보 : 『광명 도덕산 캠핑장 부실시공』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8일자 1면, 인터넷 현대일보 8월 18일자 사회면) • 온나라타임즈 : 『광명뉴타운사업추진, 오락가락하는 시 행정, 시민을 분노케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1일자 사회면) • 온나라타임즈 : 『한평택 광명 16구역 뉴타운사업추진 비대위원장 단식투쟁』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광명시와 소속 공무원 2인이 광명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를 사주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 신청인이 최근에 개장한 광명 도덕산 캠핑장 바닥재가 다량 유출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4. 신청인 시청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경기도청에 광명뉴타운 사업추진 요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5. 광명시장이 광명뉴타운 반대 주민들과의 면담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광명지역신문⁽³⁵⁰⁾, 인터넷 광명지역신문⁽³⁵¹⁾/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조정성립 (인터넷 광명시민신문/내용 : 반론보도) • 취하 (현대일보, 인터넷 현대일보/사유 : 자진취하) • 취하 (온나라타임즈/사유 : 정정보도) • 조정불성립결정 (광명지역신문^(33·34), 인터넷 광명지역신문^(35·36))
이 행 결 과	•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 『“광명시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6일자 사회면) • 온나라 타임즈 : 『광명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9일자 지역뉴스면) • 광명지역신문 : 『“광명시 뉴타운 주민과의 대화, 광명시장 발언”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 2014년 12월 22일자 지방자치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2월 22일자 지방자치면)

2014경기조정37~5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동두천경찰서 외 1인 對 현대일보 ^(37~39) , 인터넷 현대일보 ^(40~42)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43~45) , 경기도민일보 ^(46~48) ,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49~51) , 아시아뉴스통신 ^(52~54)
조 정 대 상	• 현대일보 : 『동두천署, 인사 싸고 ‘불만의 소리’』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4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현대일보 : 『동두천署, 경찰서 출입 언론사 출입 제한 시끌』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 『보안 이유 언론사 기자들 출입 통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2일자 사회면) • 경기도민일보 : 『‘거꾸로 가는’ 동두천경찰서』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3월 13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동두천경찰서장, 비판 언론사 압력 행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동두천 경찰서가 서장의 독단적인 지시로 소속 경관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렸으며, 보안을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55~58, 2014경기조정148, 149	(각 반론청구) 오산시 對 물향기신문 ^(55, 57, 148) , 인터넷 물향기신문 ^(56, 58, 149)
조 정 대 상	• 물향기신문 : (1) 『청렴도시 오산이라면서 이래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7일자 7면, 인터넷 물향기신문 2월 22일자 인물·칼럼면) (2) 『오산시·○○쇼핑 ○○빌리지 투자협약, 지역 유통업체 몰락 위기감』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1면) (3) 『○○ ○○빌리지 협약, 졸속 추진 속속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7일자 2면) (4) 『관련선거 주범 광상욱 시장 소환, 구속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정치면) • 인터넷 물향기신문 : (1) 『선거 앞둔 시장 예상 후보들 출판기념회 봇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8일자 정치·행정·의회면) (2) 『검찰은 오산 관련선거 주범 광상욱 시장을 즉각 소환, 구속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정치·행정·의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시장의 부도덕한 출판기념회를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쇼핑과 맺은 ○○빌리지 투자협약건에 대해 복합쇼핑몰을 명품아울렛으로 둔갑시켜 시민들을 우롱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3. 오산시장이 6·4지방선거기간에 사조직을 통해 관련선거를 주도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물향기신문⁽¹⁴⁸⁾, 인터넷 물향기신문⁽¹⁴⁹⁾ /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물향기신문^(55,57), 인터넷 물향기신문^(56,58) /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물향기신문 : 『오산시, “관련선거·광 시장의 사조직 ○○회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 3면, 인터넷 물향기 신문 10월 23일 정치·행정·의회면) • 인터넷 물향기신문 : 『○○빌리지 협약 등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4일자 인물/칼럼면)

2014경기조정59·60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내외신문	
조 정 대 상	『충북 ○○군 ○○읍 ○○리 (주)○○○○○ 내화물 재활용공장 친환경위배 단속 절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친환경 재활용업체인 신청인이 파쇄한 내화물을 야적하고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등 오히려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친환경 위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주)○○○○○ 내화물 재활용공장 친환경위배 단속절실』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뉴스_보도자료면)
2014경기조정61 (반론청구) ○○○○○○○상점가상인회 對 인터넷 시사인천	
조 정 대 상	『○○○○○○○○, 상설 야시장 설치로 ‘시골’』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 상설 야시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야시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8일자 지역_부평구면)
2014경기조정62 (정정청구) 수원시의회 對 뉴스365	
조 정 대 상	(1)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눈먼 돈’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0일자 사회면) (2)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눈먼 돈’ 꼬리무는 의혹”②』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원시의회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업무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6일자 사회/지역자치면)
2014경기조정63 (손배청구) 최○○ 對 PBS 평택방송	
조 정 대 상	『오산시, 음주운전 파문 최○○ 오산시의회 의장 3차례 걸쳐 허위진술 벌금 200만원 선고』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수원지법이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시 시의장인 신청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에 낙인을 찍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경기조정64	(정정청구) 광주시 對 수도권일보
조 정 대 상	『광주시 토착세력 비호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경기도 광주시가 특정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토착세력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65	(정정청구) 조○○ 對 인터넷 탄천뉴스
조 정 대 상	『후보자 검증 제대로 이뤄질까?』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성남시의원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위장전입과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위장 전입, 이권개입 사실 없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9일자 정치면)
2014경기조정66~70	(각 정정청구) 윤○○ 對 여성종합뉴스 ^(66·67) , 아시아뉴스통신 ⁽⁶⁸⁾ , OBS경인TV ⁽⁶⁹⁾ , 인터넷 OBS경인TV ⁽⁷⁰⁾
조 정 대 상	• 여성종합뉴스 : 『탈북자단체 “○○대 윤○○ 교수 규탄”』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14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대, 윤○○ 교수 탈북자 발언 관련 진상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7일 사회면) • OBS경인TV : 뉴스프로그램 『○○대, 윤○○ 교수 탈북자 발언 논란』 제하의 보도 (2013년 11월 27일, 인터넷 OBS경인TV 11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SNS 대화방에서 탈북자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71, 72	(각 정정청구) ○○○○○○○○시설관리공단 對 시사인천 ⁽⁷¹⁾ , 인터넷 시사인천 ⁽⁷²⁾
조 정 대 상	(1) 『홍미영 구청장 팬클럽 회원 다수, 구 산하기관에 취업』 제하의 기사 (시사인천 2014년 2월 25일자 정치면, 인터넷 시사인천 2월 25일자 사회면) (2) 『홍미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또 특혜?』 제하의 기사 (시사인천 2014년 3월 18일자 정치면, 인터넷 시사인천 3월 18일자 사회면) (3) 『홍미영 구청장 팬클럽, 공단 취업 특혜의혹 여전』 제하의 기사 (시사인천 2014년 4월 15일자 정치면, 인터넷 시사인천 4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직원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부평구청장 팬클럽인 “미영사모” 회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73~76		(각 정정·반론청구) ○○○○산업 주식회사 對 경인일보 ^(73·74) , 인터넷 경인일보 ^(75·76)
조 정 대 상	『철강공장 굉음...못 살겠다』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4월 29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인일보 4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철강공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장주변에서 굉음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 70여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경인일보 : 『반론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5월 22일자 21면) - 인터넷 경인일보 : 『“철강공장 굉음... 못살겠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2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77~80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산업 對 기호일보 ^(77·78) , 인터넷 기호일보 ^(79·80)
조 정 대 상	『인천 ○○○○ 캠핑장 인기 좋네 위탁사업자 사용료 두배나 인상』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4년 4월 28일자 8면, 인터넷기호일보 4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 ○○○○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캠핑장 사용료를 두 배 이상 올리는 꿈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기조정81, 82		(각 정정청구) (사)○○○○○협회 ○○지부 對 안산시민신문 ⁽⁸¹⁾ , 인터넷 안산시민신문 ⁽⁸²⁾
조 정 대 상	(1) 『○○○○다문화국제○○영화제, 시민우롱! 철저한 조사필요』 제하의 기사 (안산 시민신문 2014년 10월 31일자 <안산의 눈>면, 인터넷 안산시민신문 10월 31일자 사회면) (2) 『포장만 요란한 행사는 치워라』 제하의 기사 (안산시민신문 2014년 10월 31일자 사회면, 인터넷 안산시민신문 10월 31일자 사회환경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주최한 ○○○○○국제영화제가 주먹구구식 행사진행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83, 89, 438		(각 정정청구) ○○○○선교회 외 1인 對 한국교회공보 ⁽⁸³⁾ , 기독교포털뉴스 ^(89, 438)
조 정 대 상	- 한국교회공보 『구원파 유병언 관계 진실을 밝힌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오피니언면) - 기독교포털뉴스 『‘세월호’ 선원들, 이상행동의 뿌리』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4일자 바른신앙면) - 기독교포털뉴스 『전주지검, 구원파 박옥수 씨에 구속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선교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기독교복음 침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한국교회공보 : 보도 본문 중 신청인 부분 기사 수정 • 기독교포털뉴스 : 『‘세월호’ 선원들, 이상행동의 뿌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5일 바른신앙면) • 기독교포털뉴스 : 『‘전주지검, 구원파 박○○ 씨에 구속영장 청구’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84~87	(각 정정·반론청구) 위○○ 對 화성신문 ^(84·85) , 인터넷 화성신문 ^(86·87)
조 정 대 상	『주민 갈등 예상되는 지역에 기름 부은 화성시』 제하의 기사 (화성신문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인터넷 화성신문 4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화성 ○○○○○○○○ 개발업자인 신청인이 인근 공장과 입주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주택 개발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공장과 입주민의 마찰 및 영업권 침해’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화성신문 2014년 6월 5일자 2면, 인터넷 화성신문 5월 27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88	(정정청구) 신○○ 對 e뉴스wave
조 정 대 상	(1) 『신○○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뉴스면) (2) 『(새)신○○ 후보, 사찰서 ‘고기타령’ 해명에 자질론 확산』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1일자 뉴스면) (3) 『(새)신○○ 예비후보 교통사고는 안전불감증(?)』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인 신청인이 모 사찰의 석가탄신일 봉축법회에 참석하여 고기타령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신○○ 후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90·91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도신문
조 정 대 상	『경찰관 부인 건물임대 사기』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의 부인이 어학원을 설립하고 관련 건물을 임대한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는데 신청인이 관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 내용 : 반론보도) • 취하 (손배청구/ 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경찰관 부인 수억 사기 캐나다 도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종합면)

2014경기조정92 · 93	(정정 · 손배청구) 이○○ 對 기독교포털뉴스
조 정 대 상	『○○○○○ 출판사 전 대표, 7억 7천만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홈페이지 뉴스면)
신청인 주장	유명 선교단체의 간부인 신청인이 선교단체의 공금이나 성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경기조정94~97	(각 정정 · 반론청구) 농촌진흥청 對 중부일보 ^(94 · 95) , 인터넷 중부일보 ^(96 · 97)
조 정 대 상	『부적정 예산 집행 농진청, 향후 2년간 대학들 감사 안한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4년 5월 13일자 15면, 인터넷 중부일보 5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농촌진흥청이 대학교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2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98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광명일보
조 정 대 상	『타면자건(唾面自乾)과 일희일비(一喜一悲)』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 시의원인 신청인이 SNS(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이 특정 의원을 지칭한다고 왜곡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99 · 100	(정정청구) ○○○○○○○○○○○ 주식회사 외 1인 對 인터넷 김포신문
조 정 대 상	『대규모 비자금 조성 소문 어디까지 진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 산업단지 보상과정에서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챙기는 등의 혐의로 경찰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규모 비자금 경찰 내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5일자 뉴스면)
2014경기조정101	(손배청구) 이○○ 對 우리성남
조 정 대 상	『알제리전 참패 같았던 민관위 15R』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 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인 신청인이 ‘○○구 학부모 그룹 대표단’을 부추겨 억지를 부리고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102, 103, 114	(각 정정청구) 수원시 對 수원일보 ⁽¹⁰²⁾ , 인터넷 수원일보 ^(103, 114)
조 정 대 상	- 수원일보 : 『입북동 의혹 해명 하랬더니... 수원시, 본지 광고 중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1일자 종합1면, 인터넷 수원일보 7월 11일자 정치면) - 인터넷 수원일보 : 『염시장, 토지매입 후 다음날 개발계획 직접발표』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 수원시가 수원일보와 정기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수원시가 주최한 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들이 농성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104~107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경인일보 ^(104·105) , 인터넷 경인일보 ^(106·107)
조 정 대 상	『다문화아동 가슴에 ‘대못질’ 선생님』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7월 4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7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수차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109·110	(추후·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마약 음성 판정 도와준 경찰관 영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마약투약 혐의자 머리카락을 바꿔치기 하여 음성 판정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추후청구/ 내용 : 추후보도)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이 행 결 과	『○○췌 박모 마약팀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11·112	(정정·반론청구) 강○○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남학생 보는데... “치마길이 검사 해보자”』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9일자 사회면) 『수원 A고 교사 과도한 생활지도 사실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교 교사인 신청인이 과도한 생활지도를 실시해 학부모들이 반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4경기조정113	(정정청구) 오○○ 對 인터넷 경양일보
조 정 대 상	『경기북부 교육자 및 교장 부동산 투기 앞장』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보도됐으나, 교육청 조사결과 적법한 거래임이 확인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4경기조정115~118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경인일보 ^(115·116) , 인터넷 경인일보 ^(117·118)
조 정 대 상	『맨 앞줄에 덩그러니 ... 왕따 방치한 교사』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을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왕따 방치한 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29일자 2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9일자 정정·반론보도면)
2014경기조정119, 120	(각 정정청구) ○○○의료원 외 1인 對 중부일보 ⁽¹¹⁹⁾ , 인터넷 중부일보 ⁽¹²⁰⁾
조 정 대 상	『비리 백화점 ○○○의료원』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4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중부일보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료원의 원장이 지인을 노숙자로 위장시켜 수술비를 감면해주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의료원 비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4년 10월 6일자 2면, 인터넷 중부일보 10월 6일자 정치면)
2014경기조정121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부끄러운 경찰... 절도범을 두고 관할권 다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타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절도범을 인계받고도 관할권 문제로 인수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122~125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김포신문 ^(122·123) , 인터넷 김포신문 ^(124·125)
조 정 대 상	『조○○ 후보 두 얼굴, 똑바로 볼 때다』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4년 5월 22일자 23면, 인터넷 김포신문 5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신청인이 여야의 선거운동 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행사장에 참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6. 4 지방선거 도의원 조○○ 후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4년 9월 18일자 2면, 인터넷 김포신문 9월 18일자 사설칼럼면)
2014경기조정126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종교탄압 중단하라” 구원파 집회… 시민 냉담』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7일자)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집회 현장 관련 보도에서 집회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집회시위보도로 위법성 조각)
2014경기조정127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시사인천
조 정 대 상	『거리로 나선 구원파 “검찰, 종교·인권탄압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집회 현장 관련 보도에서 집회에 참여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집회시위보도로 위법성 조각)
2014경기조정128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신청인 회사는 OEM 제조업체일 뿐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4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29	(정정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교총, ○○대 덕망 있고 올바른 총장 선출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교총, ○○대 덕망있고 올바른 총장 선출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9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30, 131	(각 반론청구) 사단법인 ○○○○새마을회 對 경인일보 ⁽¹³⁰⁾ , 인터넷 경인일보 ⁽¹³¹⁾
조 정 대 상	『○○○○ 새마을회장 선거 내홍』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21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1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132, 133	(각 정정청구) 광명시 對 현대일보 ⁽¹³²⁾ , 인터넷 현대일보 ⁽¹³³⁾
조 정 대 상	『광명 ○○산 캠핑장 부실시공』 제하의 기사 (현대일보 2014년 8월 18일자 1면, 인터넷 현대일보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최근에 개장한 광명 ○○산 캠핑장 바닥재가 다량 유출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134	(반론청구) 정○○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비리 영양사 비호 안될 말』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원 P초교 행정실장인 신청인이 비리직원을 비호하며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비리 영양사 비호 안될 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35	(정정청구) ○○○청소년재단 對 투데이성남
조 정 대 상	『어느 비정규직의 죽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의 비정규직 실손 보험 가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기조정136~141	(각 정정·손배청구) ○○○○○어머니연합회 외 1인 對 경인데일리 ^(136·137) , 경인저널 ^(138·139) , 경기경제신문 ^(140·141)
조 정 대 상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제하의 기사 (경인데일리 2014년 7월 21일자 사회면, 경인저널·경기경제신문 7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원○○○○어머니연합회의 신청인이 공금을 유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데일리 2014년 9월 26일자 사회면, 경인저널·경기경제신문 7월 21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142, 143	(각 정정청구) ○○ ○○군청 기자단 對 경인투데이뉴스 ⁽¹⁴²⁾ , 인터넷 경인투데이 뉴스 ⁽¹⁴³⁾
조 정 대 상	『인천시 ○○군청 기자실, 신규출입기자 회원명부 손괴 수사익뢰』 제하의 기사 (경인투데이뉴스 2014년 8월 6일자 사건/사고면, 인터넷 경인투데이뉴스 8월 7일자 인천면)
신청인 주장	○○군청에 출입하는 2개 기자단 중 하나인 신청인 기자단이 상대편 기자단의 명단을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군청 출입기자단 명단 손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투데이뉴스 2014년 10월 5일자 일반뉴스면, 인터넷 경인투데이뉴스 10월 5일자 인천면)
2014경기조정144~147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경인일보 ^(144·145) , 인터넷 경인일보 ^(146·147)
조 정 대 상	(1) 『대학 구내식당 계약사기 ‘수억원 먹튀’』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20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0일자 사회면) (2) 『○○대 교내식당 위탁에 또 위탁 물의』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4년 8월 21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인일보 8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직영 운영 계약을 위반하고 책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학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10월 10일자 알림면)

2014경기조정150	(반론청구) 사단법인 ○○○○○○ 총연합회 對 인터넷 교육과 보육신문
조 정 대 상	『연구회: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 간담회 잇달아 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보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2015년도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 간담회에 불참하는 등 보육에 대한 업무보다 내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연구회: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 간담회 잇달아 가져”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7일자 보육면)
2014경기조정151~154	(각 정정청구) 김○○ 對 한국기자연대 ⁽¹⁵¹⁾ , 연예스포츠포츠방송 ⁽¹⁵²⁾ , 기호일보 ⁽¹⁵³⁾ , 인터넷 기호일보 ⁽¹⁵⁴⁾
조 정 대 상	- 한국기자연대 : 『대한민국인물시상 명예훼손 자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사회면, 연예스포츠포츠방송 8월 21일자 사회면) - 기호일보 : 『인천지검간부와 친분 내세워 수사 막으려다 고발당한 기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무실이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건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검찰 간부와 친분을 내세워 자신의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155~166	(각 정정·손배청구) 성○○ 외 1인 對 기호일보 ^(155·156) , 인터넷 기호일보 ^(157·158) , 수도권일보 ^(159·160) , 인터넷 수도권일보 ^(161·162) , 경기신문 ^(163·164) , 인터넷 경기신문 ^(165·166)
조 정 대 상	- 기호일보 : 『“장고 끝에 무모한 인사 씹쓸” 유시장 정기인사 비난 여론』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3면, 인터넷 기호일보 8월 22일자 종합면) - 수도권일보 : 『인천시, 환경공단 감사 ‘마녀사냥식’』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1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9월 1일자 종합면) - 경기신문 : 『인천시 감사관 논란 속 ‘퇴장’』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일자 5면, 인터넷 경기신문 9월 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산하기관 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는 등 불법 감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기호일보, 인터넷 기호일보/내용 : 반론보도) - 각 조정성립 (수도권일보, 인터넷 수도권일보,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내용 : 반론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기호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4일자 3면,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4일자 알림면) • 수도권일보 : 『‘인천시 전 감사관, 환경공단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2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1월 26일자 종합면) • 경기신문 : 『‘인천시 전 감사관, 환경공단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7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11월 26일자 인천면)
2014경기조정167	(정정청구) ○○대학교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대 교수 슈퍼甲질...대학원생 인건비 수천만원 가로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횡령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기조정168~172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일간경기 ^(168·169) , 인터넷 전국매일 ^(170·171)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인천일보 ⁽¹⁷²⁾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간경기 : 『‘○○○○○○’ 특정업체와 수익계약 등 특혜 의혹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사회면, 인터넷 전국매일 10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인천일보 : 『‘○○○○○○’ 대형사업 시기상조』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익계약을 통해 인천 유시티(U-City)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인천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인터넷 일간경기, 인터넷 전국매일/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일간경기 : 『[정정보도] ANF ‘○○○○○○’ 특혜의혹과 무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전국매일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인천면) • 인터넷 인천일보 : 『‘○○○○○○’ 특혜 의심’ 보도된 특정업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7일자 정치면)
2014경기조정233~236, 352, 353	(각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동구청 對 현대일보 ⁽²³³⁾ , 인터넷 현대일보 ⁽²³⁴⁾ , 인천일보 ⁽²³⁵⁾ , 인터넷 인천일보 ⁽²³⁶⁾ , 현대일보 ⁽³⁵²⁾ , 인터넷 현대일보 ⁽³⁵³⁾
조 정 대 상	• 현대일보 : 『동구, 홍보예산 멋대로 집행』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4일자 종합면, 인터넷 현대일보 10월 14일자 사회면) • 현대일보 : 『장석현구청장 공직선거법 추가 위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일자 1면, 인터넷 현대일보 11월 1일자 종합면) • 인천일보 : 『동구 집무실 호화 리모델링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인천 동구청이 출입기자 회원사들을 위주로 광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인천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추가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현대일보 ⁽²³³⁾ , 인터넷 현대일보 ⁽²³⁴⁾ , 인천일보, 인터넷 인천일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현대일보 ⁽³⁵²⁾ , 인터넷 현대일보 ⁽³⁵³⁾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현대일보 : 『‘동구 홍보예산’관련규정에 의해 집행』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2면, 인터넷 현대일보 11월 21일자 종합면) • 인천일보 : 『‘인천시 동구청장 취임식 비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9일자 2면, 인터넷 인천일보 12월 9일자 사회면) • 현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2면, 인터넷 현대일보 12월 12일자 종합면)
2014경기조정235, 236	(각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동구청 對 인천일보 ⁽²³⁵⁾ , 인터넷 인천일보 ⁽³³⁶⁾
조 정 대 상	『동구 집무실 호화 리모델링 논란』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4년 10월 20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 동구청이 인천 지역 10개 군·구 지자체장 취임식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시 동구청장 취임식 비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4년 12월 9일자 사회면, 인터넷 인천일보 12월 9일자 사회면)
2014경기조정300·301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여성종합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참사-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자원봉사로 세월호 현장에서 잠수사 일을 했던 신청인이 언딘 마린인더스트리에서 일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4경기조정306·307	(반론·손배청구) ○○○○○○○○○교회 외 1인 對 뉴스앤넷
조 정 대 상	『사이비목사 허모씨 부자 엽기성 범죄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혼음을 강요하고, 신도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이비 목사 허모 씨 부자 엽기 성범죄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7일자 교계면)

2014경기조정308	(정정청구) 변희재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독특한 연예뉴스 프로그램 『[단독]김미화 인터뷰 변희재 상대 소송에서 승소』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방송인 김미화씨의 인터뷰를 인용,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독특한 연예뉴스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게재 (2014년 12월 3일자)
2014경기조정330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전국매일
조 정 대 상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도의원에 낙선한 신청인이 전 도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331, 332	(각 손해청구) 김○○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독특한 연예뉴스 프로그램 『탈런트 전양자의 검찰...』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전양자씨의 검찰출두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334~336	(각 정정청구) 추○○ 對 아시아뉴스통신 ⁽³³⁴⁾ , OBS경인TV ⁽³³⁵⁾ , 인터넷 OBS경인TV ⁽³³⁶⁾
조 정 대 상	• 아시아뉴스 통신 : 『전양자, 인천지검 출두...』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0일자 사회면) • OBS경인TV : 독특한 연예뉴스 프로그램 『탈런트 전양자의 검찰...』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10일자, 인터넷 OBS경인TV 2014년 5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양자씨의 검찰출두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아시아뉴스통신/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70만원, 부제소) • 취하 (OBS경인TV/사유 : 자진취하)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OBS경인TV)

2014경기조정412~415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연수신문 ^(412·413) ,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414·415)
조 정 대 상	『대한노인회 ○○○ 노인지회장 벌금 100만원 도덕성 사퇴 논란』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4년 11월 18일자 1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11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한노인회 ○○○ 지회장인 신청인이 횡령혐의로 2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417~420	(각 정정·손배청구) 마○○ 對 연수신문 ^(417·418) ,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419·420)
조 정 대 상	『M회장 올해 4월까지 공식 회계보고 안해 물의』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4년 11월 25일 1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11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로당 회장인 신청인이 공식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기조정439~441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부평 소재 피부과, 불법 성형시술 피해자 속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신청인 주장	병원 원장인 신청인이 비전문 의료인을 고용해 환자를 시술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기조정516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인터넷 시대일보
조 정 대 상	『보조금은 눈먼 돈? 사후관리 시급』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자금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강 원 >

2014강원조정1·2	(정정·손배청구) ○○○○지역아동센터 對 춘천KBS-1TV
조 정 대 상	뉴스 9 프로그램 『아동센터서 수개월째 폭행 당해』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아동이 2년 동안 또래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강원조정3·4	(정정·손배청구) 정○○ 對 G1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G1뉴스820, G1뉴스라인 프로그램 『어린이집 보육일지 ‘불법매매’』 제하의 보도 (G1뉴스820 프로그램 2014년 3월 25일, G1뉴스라인 프로그램 2014년 3월 26일)
신청인 주장	원주의 한 어린이집이 실습교사들에게 현금을 받고 보육일지를 써주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어린이집이 자료화면으로 방송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강원조정7·8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세월호 참사〉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감압 중 쓰러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자원봉사로 세월호 현장에서 잠수사 일을 했던 신청인이 언딘 마린인더스트리에서 일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다이빙벨 가이드라인 설치 민간잠수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사회면)
2014강원조정9·10	(정정·손배청구) ○○대학교 외 3인 對 원주MBC-TV
조 정 대 상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대 ‘징계’ ‘고소’ 갈등 고조』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개최한 비공개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를 무단 촬영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 총 복 〉

2014충북조정1·2		(정정·손배청구) (주)○○ 對 충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폐기물매립장, 끝나지 않은 싸움』 제하의 보도 (2013년 1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충북조정3~6		(각 정정·손배청구) 음성군 對 충북일보 ^(3·4) , 인터넷 충북일보 ^(5·6)
조 정 대 상		(1) 「음성 태생산단 조성 ‘산넘어 산’」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1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2) 「음성군·군의원들, 절차상 하자도 파악 못했다」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5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3) 「투융자심사 난관...수정 불가피」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5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4) 「“4천억 채무보증 형평성에 어긋나”」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5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5) 「郡 행정력 낭비, 주민만 망들었다」 (충북일보 2013년 12월 15일자 5면, 인터넷 충북일보 12월 15일자 사회면) 외 14건
신청인 주장		음성군이 태생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충북조정7~10		(각 정정·손배청구) ○○○교 외 1인 對 충청리뷰 ^(7·8) , 충북인뉴스 ^(9·10)
조 정 대 상		• 충청리뷰 : 『시공사 선정도, 운영도 사무국장 맘대로』 (2014년 1월 24일자 사회면) • 충청리뷰 : 『○○향교 A 사무국장의 수상한 ‘내부거래’』 (2014년 2월 14일자 사회면) • 충북인뉴스 : 『양심고백 ‘○○향교 A국장에게 돈 받았다’』 (2014년 2월 20일자) 제하의 기사 외 8건
신청인 주장		○○향교가 연수원 건립 시 시공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충북조정11	(정정청구) 박○○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의정뒷전, 이슈화 급급’ 박○○ 충북도의원 자질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3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유감표명,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의정 뒷전, 이슈화 급급” 충북도의원 자질 논란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8일자 충북·세종면)
2014충북조정12, 13	(각 정정청구) 윤○○ 對 동양일보 ⁽¹²⁾ , 인터넷 동양일보 ⁽¹³⁾
조 정 대 상	『“탈북자 사형 주장”...○○대 교수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3년 11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동양일보 11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SNS 대화방에서 탈북자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탈북자 사형 주장” 대구대 교수 발언,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인터넷 동양일보 2014년 5월 12일자 사회면)
2014충북조정14~18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충청매일 ^(14~16) (정정·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충청매일 ^(17·18)
조 정 대 상	(1) 『충북 새누리 기초·광역 비례대표 공천 난장판』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5월 2일자 1면, 인터넷 충청매일 5월 1일자 사회면) (2) 『새누리 비례대표 공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5월 7일자 15면, 인터넷 충청매일 5월 6일자 사회면) (3) 『새누리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잡음』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5월 7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매일 5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총북조정19~31	(각 반론청구) 김○○ 對 연합뉴스 ⁽¹⁹⁾ , 뉴시스 ⁽²⁰⁾ , 국제뉴스 ⁽²¹⁾ , 동양일보 ⁽²²⁾ , 인터넷 동양일보 ⁽²³⁾ , 중부매일 ⁽²⁴⁾ , 인터넷 중부매일 ⁽²⁵⁾ , 충북일보 ⁽²⁶⁾ , 인터넷 충북일보 ⁽²⁷⁾ , 충청매일 ⁽²⁸⁾ , 인터넷 충청매일 ⁽²⁹⁾ , 충청신문 ⁽³⁰⁾ , 인터넷 충청신문 ⁽³¹⁾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최명현 제천시장 후보 허위기사 쓴 기자 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회면) • 뉴시스 : 『제천시장 후보 간 몸싸움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회면) • 국제뉴스 : 『제천시장 후보자간 ‘몸싸움’은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사회면) • 동양일보 : 『최명현 제천시장 후보, 허위기사 쓴 기자 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7일자, 인터넷 동양일보 5월 27일자) • 중부매일 : 『‘토론회後 몸싸움’ 헛소문에 결국…』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28일자 사회면) • 충북일보 : 『괴소문 확산에 유권자들 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북일보 5월 28일자 사회면) • 충청매일 : 『최명현·홍성주 제천시장 후보 “몸싸움 소문 사실무근” 해명』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매일 5월 28일자 사회면) • 충청신문 : 『“제천시장 후보 간 몸싸움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신문 5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천시장후보 간에 몸싸움이 없었다는 기사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뉴시스, 동양일보, 인터넷 동양일보, 중부매일, 인터넷 중부매일, 충북일보, 인터넷 충북일보,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매일, 충청신문, 인터넷 충청신문/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취하 (국제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총북조정32	(반론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유명 다단계 화장품 구원파와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교회가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다단계 A화장품 대한예수교침례회랑 관계없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2일자 사회종합면)

2014충북조정33·34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외 1인 對 동양일보
조 정 대 상	『전직 군의원 ‘남의 땅 지분 요구’ 소송』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4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남의 땅에 대한 지분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약정서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였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6일자 2면)
2014충북조정35~38	(각 정정·반론청구) 윤○○ 對 충청매일 ^(35·36) , 인터넷 충청매일 ^(37·38)
조 정 대 상	『민간단체 소속 코디네이터 충북도 직원 사칭 금품요구』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6월 27일자, 인터넷 충청매일 6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도청직원을 사칭하며 금품 및 접대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민간단체 소속 코디네이터 충북도 직원 사칭 금품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4년 7월 16일자 2면, 인터넷 충청매일 7월 16일자 사회면)
2014충북조정39·40	(정정·손배청구) 전국○○○○ 노동조합 對 한국인뉴스
조 정 대 상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단체 이어져』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전국○○○○노조 유한식 후보 지지선언 관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4일자 사회면)
2014충북조정41, 42	(각 정정청구) 한○○ 對 충청매일 ⁽⁴¹⁾ , 인터넷 충청매일 ⁽⁴²⁾
조 정 대 상	• 충청매일 : 『○○군의회 ‘법리검토 무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1일자 6면) • 인터넷 충청매일 : (1) 『○○판 민선5기 특위 파장』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2) 『○○군의회 ‘법리검토 무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군 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제출한 태생산단에 대한 조사 청원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충북조정43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충청일보
조 정 대 상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신청인 회사는 OEM 제조업체일 뿐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키크는 약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일반사회면)
2014충북조정53	(추후청구) 이○○ 對 인터넷 충청일보
조 정 대 상	『“지지 안해 낙선돼”...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 ‘폭행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광역의회 의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전 여수시의원 맥주병 폭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사회 일반면)

< 전 북 >

2014전북조정1, 2	(각 추후청구) 이○○ 외 1인 對 전북도민일보 ⁽¹⁾ ,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²⁾
조 정 대 상	『○○새마을금고 간부 업무상배임 기소』 제하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2013년 5월 21일자 사회면,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5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새마을금고 간부인 신청인들이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사실이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새마을금고 간부 업무상배임 기소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3일자 사회면)
2014전북조정3·4	(정정·손배청구) ○○재활원 외 1인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장애인학대 재활원장 유죄』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활원과 원장이 장애인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조정의 실익이 없음)
2014전북조정5	(정정청구) ○○○○○협의회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자치단체장 입지자 ‘식사대접’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회원들이 자치단체장 입지자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전북조정6·7	(정정·손배청구) 한○○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동물복지 생산비 높아 외면』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6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동물복지 생산비 높아 외면』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시로 인한 축산물 안전에 대해 보도하면서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양계 농가를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동물복지 생산비 높아 외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1일자)

2014전북조정8	(손배청구) 박○○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14 ‘닥공’ 신화를 이어간다! 전북현대모터스 출정식』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프로축구 출정식에 참석한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한 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전북조정9 · 10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술 취해 난동 부린 스님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사 승려인 신청인이 같은 사찰 승려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전북조정11~14	(각 정정 · 손배청구) 김○○ 對 일일전북신문 ^(11·12) , 인터넷 일일전북신문 ^(13·14)
조 정 대 상	『경찰, 단속된 업주와 결탁해 동종업체 죽이기 앞잡이 노릇』 제하의 기사 (일일전북신문 2014년 4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일전북신문 4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업주와 결탁해 경쟁업체를 고의적으로 단속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전북조정15 · 16 · 17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주) 對 전라일보
조 정 대 상	(1) 『순창 ‘모지역신문 편파보도’ 도 넘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7일자 11면) (2) 『우시장 신축이 살인행위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5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축협 우시장 이전과 관련해 여론을 호도하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청구/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취하 (정정 ·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순창 ‘모지역신문 편파보도’ 도 넘어」 관련 반론보도문 (2014년 5월 16일 11면)

2014전북조정20	(정정청구) ○○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1)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아파트 관리…대형업체 독식』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8일자, 4월 8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한아파트에 두 관리사무소』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9일자, 4월 9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3)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리·감독 사각지대…아파트』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1일자, 4월 11일자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대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전북조정18, 19	(각 반론청구) 양○○ 對 전북중앙신문 ⁽¹⁸⁾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¹⁹⁾
조 정 대 상	『전주지역 원예농협 지점장 80대 고객 욕설 폭행의혹』 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신문 2014년 4월 25일자 4면,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4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원예농협 지점장인 신청인이 지점을 방문한 80대 고객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주 원예농협 지점장 고객 욕설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신문 2014년 6월 3일자 4면,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6월 3일자 사회면)
2014전북조정21·22	(정정·손배청구) 정○○ 對 주간전북오늘
조 정 대 상	『정○○, 여우의 춤바람을 멈춰라』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의원인 형을 배경으로 지방선거 등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전북조정23	(정정청구) 권○○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택시 보험비 사기』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택시회사 사장인 신청인이 교통사고를 낸 기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수년간 돈을 뜯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8시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택시사기-속보』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2014전북조정24·25, 27·28	(각 정정·손배청구) 송○○ 외 25인 ^(24·25) , 김○○ 외 40인 ^(27·28)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의 이면에 완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의 이면에 덕진경찰서 경찰관들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각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 취하 (각 손배청구/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택시업주·전북 경찰 연루 의혹 ‘사실 무근’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1일자 사회면)
2014전북조정26	(정정청구) (주)○○○ 對 e-진안
조 정 대 상	『부귀 봉암 ○○○ 골프장, 동네길 막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골프장 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동네길을 무단으로 막았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아니라 다른 영농법인이 사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골프장, 동네길 막아’ 관련 독자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1면)
2014전북조정29~3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순창신문 ^(29·30) , 인터넷 순창신문 ^(31·32)
조 정 대 상	『○○면 소재 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대두론, 진실은?』 제하의 기사 (순창신문 2014년 9월 3일자 사회면, 인터넷 순창신문 9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군 노인요양병원을 군수지시와는 상반되게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 노인전문요양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순창신문 2014년 10월 1일자 8면, 인터넷 순창신문 10월 1일자 사회면)
2014전북조정33	(정정청구) 이○ 對 새만금일보
조 정 대 상	『순창군 지역 L모씨 공무원에게 압력 행사 ‘파장’』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30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순창군 공무원에게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내년에는 더욱 더 다양한 테마 준비해 찾아올 터』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16면)

2014전북조정34~39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전북중앙신문 ^(34·35) , 전북연합신문 ^(36·37) , 군산시민신문 ^(38·39)
조 정 대 상	• 전북중앙신문 : 『모 단체 대표 후원금 횡령 시끌』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9면) • 전북연합신문 : 『단체 대표 공금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8면) • 군산시민신문 : 『시민들을 위한 모 단체 공금횡령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정관을 변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PR보도 약속)
2014전북조정40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군산시 하수관로 BTL, 거짓공사만 수백곳』 제하의 보도 (2014년 9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군산시 하수관로 공사의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거짓보고를 하여 공사비를 부풀렸고, 또한 일부 구간은 고의적으로 축소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을 편취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군산 하수관 공사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5일자)
2014전북조정41·42	(정정·손배청구) 황○○ 외 2인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뇌물수수’ 순창군수 수사 급물살』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24일자, 10월 25일자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신청인 주장	순창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군수 부인이 공공기관에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군수 비서실장이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서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 동의후 보도)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제목 : 조합장 임플란트비 대납 혐의자 기소』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4일자)

2014전북조정43		(정정청구) 김○○ 對 열린 순창
조 정 대 상	『○○농협 조합장 ‘골프채·임플란트’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농협 조합장인 신청인이 순창군수로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프채량 임플란트 비용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골프채는 친분에 의해 빌린 것이며 임플란트 비용은 모 회사로부터 댓가성 없이 받은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농협 조합장’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1면)	
2014전북조정44~46		(각 정정청구) ○○○○개발(주) 對 전북일보 ⁽⁴⁴⁾ , 새전북신문 ⁽⁴⁵⁾ , 뉴스1코리아 ⁽⁴⁶⁾
조 정 대 상	• 전북일보 : 『“동의없이 설계 변경하고 추가 공사비 부담하라니” 군산 ○○○○ 조합원 반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4일자 4면) • 새전북신문 : 『서민 명드는 지역주민조합사업』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4일자 4면) • 뉴스1코리아 : 『군산 지곡 ○○○○ 1차 입주민, 추가 분담금 요구에 ‘반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4일자)	
신청인 주장	군산 ○○단지 재개발조합의 시행업무대행사인 신청인 회사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전북조정47·48		(정정청구) ○○대학교 병원 對 오늘뉴스
조 정 대 상	(1) 『○○대병원 ‘비리물고’ 연이어 터져...경찰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2일자) (2) 『전북경찰, ○○대병원주차장 비리수사...혐의입증주력』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 병원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으며, 병원 주차장 용역 관련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전북조정49~51	(각 반론청구) 박○○ 對 뉴시스 ⁽⁴⁹⁾ , 뉴스1코리아 ⁽⁵⁰⁾ , 전민일보 ⁽⁵¹⁾
조 정 대 상	• 뉴시스 : 『檢, 신도에게 5000원짜리 주식 팔아 250억원 챙긴 목사 영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1) 『檢, ‘신도 상대 수백억 사기’ 박○○ 목사에 영장청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8일자 사회면) (2) 『법원, ‘신도 상대 수백억 사기’ 박○○ 목사 영장 기각』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사회면) • 전민일보 : (1) 『신도 속여 수백억 챙긴 목사 ‘구속영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 (2) 『신도 돈 가로챈 목사 구속영장 기각』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모 식품업체 주식을 시세보다 높게 사도록 해 거래를 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뉴시스 : 『‘○○○○선교회 박○○ 목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전국섹션 전복면) • 뉴스1코리아 : 『‘○○○○선교회 박○○ 목사 “재판 과정서 진실 밝혀질 것”』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전국면) • 전민일보 : 『‘○○○○선교회 박○○ 목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5일자 4면)

〈 경 남 〉

2014경남조정1·2		(정정·반론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권력은 비판 두려워하기보다 민심 두려워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현 시장이 서로 특정 매체의 광고 배제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남조정3~8		(각 추후청구) 이○○ 외 2인 對 경남도민일보 ⁽³⁾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⁴⁾ , 경남매일 ⁽⁵⁾ , 인터넷 경남매일 ⁽⁶⁾ , 경남일보 ⁽⁷⁾ , 인터넷 경남일보 ⁽⁸⁾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합천군 행정비방 유인물 유포 혐의 3명 붙잡아』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9월 17일자 지역면) - 경남매일 : 『합천군수 비판 전단지 배포 3명 체포』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매일 9월 17일자 사회면) - 경남일보 : 『합천군 비방물 유포자 잡혀』 제하의 기사 (2013년 9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일보 9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군 행정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경남일보, 인터넷 경남일보/내용 : 추후보도) - 취하 간주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경남매일 : 『「합천군수 비판 전단지 배포 3명 체포」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7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2월 7일자 사회면) - 경남일보 : 『「합천군 비방물 유포자 잡혀」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7일자 4면, 인터넷 경남일보 2월 7일자 사회면) - 경남도민일보 : 『합천군 행정 비방 유인물 유포자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7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월 7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9~12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경남도민일보 ^(9·10)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1·12)
조 정 대 상		『하동 ○○○○ 상인 식품위생감시원 불법행위 수사촉구 서명 전개』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3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1월 12일자 사회면) 『○○○○ 상인들 감시원 불법행위 해촉 요구에도 군 행정은 묵살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1월 14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식품위생감시원인 신청인이 지위를 남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13·14	(추후·손배청구) 이○○ 對 하동저널
조 정 대 상	『줄줄 새는 세금 도둑 판처』 제하의 기사 (2013년 5월 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으로 타 건설현장의 관급물품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추후청구/ 내용 :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취하 (손배청구/ 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4일자 1면)
2014경남조정15~19	(정정청구) 조○○ 對 경남인뉴스 ⁽¹⁵⁾ , 인터넷 경남신문 ⁽¹⁶⁾ , 아시아뉴스통신경남 ⁽¹⁷⁾ , 인터넷 농민신문 ⁽¹⁸⁾ , 노컷뉴스 ⁽¹⁹⁾
조 정 대 상	- 경남인뉴스 : 『병든 돼지 불법도축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신문 : 『병든 돼지 대량 유통한 업체 대표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경남경찰, 병든 돼지 불법 도축·판매한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농민신문 : 『불법 도축한 돼지 혈값에 사 식당에 판 가공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병들거나 죽기 직전 돼지고기 섞어 팔아』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도축한 병든 돼지를 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경남인뉴스, 인터넷 경남신문, 아시아뉴스통신경남, 노컷뉴스/사유 : 추후보도) - 취하 (인터넷 농민신문/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경남인뉴스 : 『[병든 돼지 불법도축 업자 구속]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신문 : 『무허가 도축 돼지 유통 축산물가공업자 항소심서도 무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7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경남 : 『불법 도축 돼지고기 유통 혐의 축산 가공업자 무죄 선고』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3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병든 돼지 불법도축, ‘식당·마트’ 판매? ‘무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0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20·21 (정정·손배청구) 유○○ 對 TYN	
조 정 대 상	(1) 『유○○ 의원, T농수산...불법·비리 온상(?)』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1일자 오피니언면) (2) 『김동진 여동생, 유○○ 딸 채용 특혜 논란, 특권층 가족, 우선 채용...현대판 ‘음서제’』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9일자 오피니언면) (3) 『태영농수산...77호선 국도 관통 ‘충격’』, 유○○ 시의원, 재산 증식 수단 이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9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됐고, 해당 회사를 관통하는 국도 예상 설계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으며, 신청인 딸의 채용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2014경남조정22~25 (각 정정청구) 창원시 對 경남매일 ^(22, 24) , 인터넷 경남매일 ^(23, 25)	
조 정 대 상	(1) 『경남도가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해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동읍 무성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2월 14일자 1면, 인터넷 경남매일 2월 13일자 뉴스면) (2) 『창원시장 비서실 유지 문제있다』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2월 17일자 18면, 인터넷 경남매일 2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창원시가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서실을 계속 운영해 전 시장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22, 23)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24, 25)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경남매일 : 『「창원시는 왜 이러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2면, 인터넷 경남매일 3월 6일자 종합면) • 인터넷 경남매일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2014경남조정26 (정정청구) 사단법인 ○○○○○○○○생활센터 對 창원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문학도 장애인 “자립하고 싶어요”』 제하의 보도 (2014년 2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자립센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내쫓는 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27~34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개발 외 1인 對 거제타임즈 ^(27·28) , 뉴스앤거제 ^(29·30) , 뉴시스 ^(31·32) , 모닝뉴스 ^(33·34)
조 정 대 상	- 거제타임즈 : 『[사건]호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13억원 못받아 검찰에 고소장 접수 ‘말썽’』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 뉴스앤거제 : 『[사건]호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13억 못받아』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개발면) - 뉴시스 : 『거제 호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13억원 못받아』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경남면) - 모닝뉴스 : 『[거제]호텔은 리모델링 공사대금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8일자 사회사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들이 호텔을 건설한 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피신청인은 원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고소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시점에서 신청인측이 입증서류(무혐의 처분서, 무죄 판결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추후보도 하도록 한다.
2014경남조정35~38	(각 정정·손배청구)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對 인터넷 창원일보 ^(35·36) , KNS뉴스통신 경남서부 ^(37·38)
조 정 대 상	- 인터넷 창원일보 : 『거제시, ○○ ○○아파트 재건축 주민 고통 외면하나?』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6일자 경남서부면) - KNS뉴스통신 : 『거제시, ○○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 안전시설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0일자 경남서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진행하는 재건축 현장의 소음 및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창원일보 : 『거제 ○○ ○○아파트 재건축 현장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7일자 사회면) - KNS뉴스통신 : 『거제 ○○ ○○아파트 재건축 현장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8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39·40		(정정·손배청구) 김○○ 對 거제시민뉴스
조 정 대 상	『○○문예회관 K관장, 관용차 ‘자가용’처럼 사용 ‘물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41·42		(정정·손배청구) 유○○ 對 거제타임즈
조 정 대 상	『‘막차타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13일자 사람들면)	
신청인 주장	거제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신청인이 고단수 선거꾼과 부화뇌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43~46, 57·58		(각 정정·반론청구) 법무법인○○○○○사무소 對 경남신문 ^(43·44) , 인터넷 경남신문 ^(45·46) , MBC경남(진주)-R ^(57·58)
조 정 대 상	- 경남신문 : 『진주아파트 등기 외지 법무사가 싹쓸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일자 8면, 인터넷 경남신문 4월 2일자 지역면) - MBC경남(진주)-R : 오늘의 경남 프로그램 중 신청인 관련 보도 (2014년 4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 신청인 회사가 진주지역 아파트 등기업무를 독식하여 막대한 수임료 등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신청인 회사가 법무사들의 직역이라 할 수 있는 등기업무를 침범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MBC경남(진주)-R/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남신문 : 『「진주 아파트 등기 외지 법무사가 싹쓸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4일자 8면, 인터넷 경남신문 5월 14일자 사회면) - MBC경남(진주)-R : 오늘의 경남 프로그램 『진주 평거동 소재 아파트의 외지법무사 부동산 수임 관련』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6일자)	

2014경남조정47~54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KNS뉴스통신 ^(47·48) , 진주KBS-1TV ^(49·50) , 경남신문 ^(51·52) , 인터넷 경남신문 ^(53·54)
조 정 대 상	• KNS뉴스통신 : 『일간뉴스경남 “홍준표.박완수 초박빙” 보도 ‘선거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8일자 사회일반면) • 진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선관위, 언론사 2곳 선거법 위반 혐의 확인』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9일자) • 경남신문 : 『여론조사기관·도내 언론사 각 2곳 ‘도지사 후보적합도’ 선거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신문 : 『여론조사기관·도내 언론사 각 2곳 선거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KNS뉴스통신/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각 조정불성립결정 (진주KBS-1TV,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4경남조정55, 56	(정정청구) 진주시 對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⁵⁵⁾ , 경남도민신문 ⁽⁵⁶⁾
조 정 대 상	『진주실내종합체육관 대형차량 주차장 변모』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014년 4월 14일자 지역기자면, 경남도민신문 4월 15일자 1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관리하는 진주실내종합체육관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59·60	(정정·손배청구) ○○○○○○○(주) 對 주간함양
조 정 대 상	『외지삼 명품 함양삼 둔갑 파장』 제하의 기사 (2013년 12월 30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삼주가 함양 산양삼이 아닌 외지 산양삼으로 만들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61·62	(정정·반론청구) 정○○ 對 경남MBC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민원인 올리는 행정』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유했던 땅과 관련해 김해시청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결정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4경남조정63, 64		(각 정정청구) 배○○ 對 경남매일 ⁽⁶³⁾ , 인터넷 경남매일 ⁽⁶⁴⁾
조 정 대 상	『억울한 민생현장 경찰 뒷짐』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5월 27일자 5면, 인터넷 경남매일 5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용역직원을 고용해 신청인의 땅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억울한 민생현장 경찰 뒷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6월 20일자 5면, 인터넷 경남매일 6월 19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65~68		(각 정정·손배청구) ○○○○농협협동조합 對 합천신문 ^(65·66) , 인터넷 합천신문 ^(67·68)
조 정 대 상	『○○○○농협 업체 간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합천신문 2014년 4월 18일자 1면, 인터넷 합천신문 4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의도적으로 불법이자 청구 등 금융 횡포를 부리며 한 농산업체를 비호하고, 읍의 위치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를 압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69		(정정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드는 구원파』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선교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기독교복음침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4경남조정70, 71		(각 정정청구) ○○○○○공사 對 경남매일 ⁽⁷⁰⁾ , 인터넷 경남매일 ⁽⁷¹⁾
조 정 대 상	『○○○공 직권남용 도 넘어』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6월 13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상레저를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공 직권남용 도 넘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4년 6월 30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6월 29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72~87, 90~97, 104~111	(각 정정·손배청구) 권○○ 외 1인 對 경남도민일보 ^(72·73, 76·77, 80·81, 84·85, 90·91, 94·95, 104·105, 108·109)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74·75, 78·79, 82·83, 86·87, 92·93, 96·97, 106·107, 110·111)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1) 『도내 일간지 A회장 2억원 업무상 횡령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6월 18일자 종합면) (2) 『“민원해결해 주겠다” 돈 받은 혐의로 또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6월 18일자 종합면) (3) 『진주경찰서, 일간지A회장 연류사건 축소 수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3일자 1면, 3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계속 나에게 책임 미루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폭로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2일자 사회면) 외 26건
신청인 주장	1. 언론사 대표인 신청인이 업무상 횡령을 한 의혹이 있으며, ○○병원 부도 과정에서 2억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특정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군부대 이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3. 신청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의 조사를 축소했다고 보도하면서 참고인 신분의 신청인이 마치 피고소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 신청인이 과거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문사 건물 임대료를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5.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사건이 협박공갈·문서위조·변호사법 위반·횡령 등 5건이나 된다고 보도했으나 전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88, 89	(각 정정청구) 송○○ 對 경남도민일보 ⁽⁸⁸⁾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⁸⁹⁾
조 정 대 상	(1) 『스승의날 선물 요구한 대학교수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4년 5월 16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5월 16일자 사회면) (2) 『진주○○대 교수 스승의날 고가 선물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4년 5월 19일자 8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5월 19일자 사회면) (3) 『진주○○대 선물 물의 교수 조사』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4년 5월 20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5월 20일자 4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강요하여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98~103	(각 정정·추후·손배청구) 권○○ 對 경남연합일보 ^(98~100) ,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101~103)
조 정 대 상	『진주지역 계조직 2억원 사기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4년 4월 24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4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계조직의 직원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진주지역 계조직 2억원 사기 ‘물의」 관련, 정정 및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4년 7월 31일자 5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7월 31일자 사회면)
2014경남조정112, 113	(각 정정청구) 강○○ 對 경남일보 ⁽¹¹²⁾ , 인터넷 경남일보 ⁽¹¹³⁾
조 정 대 상	『○○사-관광농원 양보 없는 토지분쟁』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30일자 종합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라는 사찰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4경남조정114~117, 124~127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일간뉴스경남 ^(114·115, 124·125) ,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16·117, 126·127)
조 정 대 상	(1) 『“승단부정심사 장본인이...자리 안맞다”』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7월 30일자 사회 4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7월 29일자 사회면) (2) 『경남○○○협 기심의장 사퇴 촉구』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9월 17일자 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경남○○○협회 전문분과 기술심의회 의장인 신청인이 승단 부정심사를 했던 사람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이 ○○○ ○○심사 채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일간뉴스경남 ^(114·116) ,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15·117) /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일간뉴스경남 ^(124·126) ,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25·127))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9월 1일자 4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9월 1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2014경남조정118~121, 128~131	(정정청구)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對 일간뉴스경남 ^(118, 120, 129, 130) , 인터넷 일간뉴스 경남 ^(119, 121, 129, 131)
조 정 대 상	(1) 『모 언론사 개설 ‘학교’ 명칭 사용 제동』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8월 13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8월 12일자 종합면) (2) 『본지 권○○ 회장, 왜곡 보도에 ‘뿔났다’』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7월 16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8월 12일자 종합면) (3) 『진주 축제 속 천수고 나대지 건강행사 말썽』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9월 29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9월 28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4) 『건강박람회 무대 공연 중단, 주류판매 잇따라』, 『건강박람회 빙자 주류 판매·공연 소음 원성 잇따라』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10월 6일자 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0월 5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언론사가 부당하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 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 신청인 언론사가 피신청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3. 신청인이 진주건강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장소의 안전, 편의시설 설치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4. 신청인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박람회에서 주류가 판매되는 등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122, 123	(정정청구) 주식회사 ○○○○○ 마을 對 일간뉴스경남 ⁽¹²²⁾ , 인터넷 일간뉴스 경남 ⁽¹²³⁾
조 정 대 상	(1) 『장마, 산청 수련시설 토사유출 심각』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6월 24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6월 23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2) 『○○○마을 조사 검찰송치 단계』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6월 25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6월 24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3) 『산청군, ○○○마을 위법행위 ‘뒷집’』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7월 8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7월 7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4) 『○○ ○○○마을 ‘산지훼손’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7월 21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7월 21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5) 『검찰 ○○○마을 보강수사 재지휘』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8월 5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8월 4일자 홈페이지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청소년수련원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경남조정132~135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일간뉴스경남 ^(132·133) ,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34·135)
조 정 대 상	『故 권○○ 선생 명예훼손 기사 좌시 않겠다』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4년 10월 14일자 1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0월 13일자 여론 해석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촉구인故 권○○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4경남조정136~139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36·137) , 뉴시스 ^(138·139)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한국○○○○협회 ○○지부, 내부 갈등으로 ‘시골’』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홈페이지 뉴스 지역면) - 뉴시스 : (1) 『한국○○○○협회 ○○시집행부 고소·고발 ‘난타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2일자 전국면) (2) 『○○○○시지부 “전직 지부장 공금횡령·장애인 약취” 고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4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지부장으로 있던 한국○○○○협회 ○○지부의 공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약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4경남조정140, 141	(각 정정청구) 창원시 對 경남도민일보 ⁽¹⁴⁰⁾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¹⁴¹⁾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1) 『긴급재난 속 무리한 운행 요구가 화를 불렀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1면) (2) 『창원시, 버스업체에 ‘우회 운행’ 말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5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1) 『‘추락 침몰’ ○○번 시내버스, 멈출 수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행정면), (2) 『창원시, 버스업체에 ‘우회 운행 해서라도…’』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창원시가 진동 지역 시내버스 사고와 관련해 우회운행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경남조정142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타임즈
조 정 대 상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치 추진에 시민들 ‘가우뚱’』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거제시가 옥상옥의 관변조직을 꾸리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치 추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2014경남조정143~146	(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통영뉴스 ^(143·144) , 인터넷 통영방송 ^(145·146)
조 정 대 상	『전 지역기자, ‘공갈 금품수수 혐의’ 고발 뒤늦게 알려져』 제하의 기사 (통영뉴스 2014년 11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통영뉴스 11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관광업체로부터 차용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 제 주 〉

2014제주조정1~20, 23·24	(각 정정·손배청구) 석○○ 對 제민일보 ^(1·2) , 인터넷 제민일보 ^(3·4) , 인터넷 제주매일 ^(5·6)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7·8) , 제주의 소리 ^(9·10) , 제주투데이 ^(11·12) , 시사제주 ^(13·14) , 헤드라인 제주 ^(15·16) , 제이누리 ^(17·18) , 뉴스제주 ^(19·20) , 연합뉴스 ^(21·22)
조 정 대 상	• 제민일보 : 『비위로 도배한 제주 ○○간부— 독보적인 문제아』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8일자 2면) • 인터넷 제민일보 : 『“구멍가게” 보다 못한 제주테크노파크』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제주매일 : 『“제주○○일부 직원, 여직원 술자리 동석시켜”』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21일자) •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제주○○여직원 술시중. 대리보고서 작성까지”』 제하의 기사 외 2건 (2013년 11월 21일자 등) • 제주의 소리 : 『“찾은 욕설, 술시중..., 제주○○간부 누구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7일자 등) 외 12건
신청인 주장	전 제주○○○○○ 센터장인 신청인으로 인해 소속 직원 20여명이 사직했으며, 신청인이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요구하고 출장 보고서를 부하직원에게 작성케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제민일보, 인터넷 제민일보/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제주매일/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주의 소리/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원 - 동의후 보도) • 각 취하 (제주투데이, 시사제주, 헤드라인 제주, 제이누리, 뉴스제주/사유 : 정정보도 게재 약속)
이 행 결 과	• 제민일보 : 『정정보도 제주○○ 모 간부 ‘술시중 강요’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2면) • 인터넷 제주매일 : 『[정정보도] 제주○○ 모 센터장 ‘여직원 술자리 시중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4월 30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도민일보·제주투데이·시사제주·헤드라인 제주·뉴스제주 2014년 4월 29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민일보·제이누리 4월 30일자 사회면, 제주의 소리 2014년 5월 2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파크 술시중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30일자 사회면)

2014제주조정25	(정정청구) 강○○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뉴스 930 프로그램 『“풍력개발 이권 사업으로 전락하나?”』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육상풍력발전지구 사업과 관련해 신청인이 사업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4제주조정26, 27	(각 정정청구) 제주지방경찰청 對 인터넷 한라일보 ⁽²⁶⁾ , 한라일보 ⁽²⁷⁾
조 정 대 상	『현직 검사장 성범죄, 무얼 남겼나』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4년 8월 25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8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청이 전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4제주조정28	(정정청구) 고○○ 對 한라일보
조 정 대 상	『○○공무원 인사청탁 “배달사고” 결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